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349-10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도 채 부연구원
민 경 찬 연구원
박 지 숙 연구원

총 목 차

◇ 제1부.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 제2부.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 강원도	85
□ 충청북도	119
□ 충청남도	193
□ 전라북도	235
□ 경상북도	295
□ 경상남도	345
□ 제주도	379

- 제1부 -

전국 농어촌서비스기준(핵심 항목)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정 도 채 부 연구 위 원
민 경 찬 연 구 원
박 지 속 연 구 원

차 례

제1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9
-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13

제2장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16
-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19
-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24

제3장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49
-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53
-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61

부록 1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65

부록 2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68

부록 3 2017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70

참고문헌 82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14
--	----

제2장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17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19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21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21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25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26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27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7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28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29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30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	30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31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2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32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33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4
<표 2-18>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35

<표 2-19>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6
<표 2-20>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37
<표 2-21>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7
<표 2-22> 대중교통 이행실태	39
<표 2-23> 대중교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39
<표 2-24>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41
<표 2-25>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41
<표 2-26>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42
<표 2-27>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44
<표 2-28>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45
<표 2-29>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45
<표 2-30> 방범용 CCTV 설치 이행실태	46
<표 2-31> 방범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47
<표 2-32> 소방 출동 이행실태	48

제3장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51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53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56
<표 3-4> 2016-2017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59

제 1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및 현황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막대한 정부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정책 추진으로 인해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개선되지 못했고, 주민의 삶의 질은 낙후성을 면치 못해왔음(김광선 외, 2011).
 - 농어촌 여건 변화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농어촌 지역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까닭에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엄진영 외, 2015).
 - 이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자, 보다 객관적인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였던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도입, 운용 방안을 설계(김광선 외, 2016)

- 200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및 운용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초안을 마련함(8개 부문 31개 항목).
- 영국, 독일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운용하였던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의 성과 등을 검토함.

참고: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¹

- 1985년 발생한 광우병이 영국을 휩쓸면서 영국의 농촌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쇠퇴라는 문제 심화
- 이후 영국 정부는 광우병 이외에도 다차원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 문제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
- 농촌의 양극화, 사회적 배제, 지역서비스 공급 부족, 일자리 부족, 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모든 부처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
- 그 결과 영국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 일환으로 2000년 「농촌백서」(Our Countryside: the future)를 발간하고 농촌 발전의 비전 제시
- 특히 「농촌백서」에 명기된 사항으로, 농촌발전의 비전과 관련하여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하나로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s Standard)을 공표함.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점차 간소화됨. 즉 2000년 처음 발표된 것은 14개 부문 35개 기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11개 부문 35개 기준, 그리고 2006년에는 8개 부문 13개 항목으로 간소화됨 - ① 교육 및 아동 서비스, ② 광대역 통신망(학교), ③ 사회적 돌봄, ④ 우체국 서비스, ⑤ 보건, ⑥ 인터넷 접속, ⑦ 긴급서비스(구급 · 소방 · 경찰), ⑧ 교통.
- 영국은 2007년부터는 중앙정부차원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중단하고, 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 그 이유는 첫째, 국가 최소 수준 측면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임. 둘째, 농어촌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 간 상이한 여건과 차별성으로 인해 전 국가적으로 공통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더 이상 운용하는데 한계가 따랐기 때문임.

- 도시·농촌 지역 거주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과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항목과 수준’을 의미
 - 2010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2011년 1월부터 제도 시행

참고: 현행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²

- 제3조 제6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정의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의미
- 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
- 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음.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1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위한 자문기구와 전문지원기관을 설치·운영
 -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정부부처, 전문가, 농어촌 주민이 참석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였으며, 제도 운용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및 협의 기능 담당
 - 2012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지원기관의 고유 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2 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조.

2.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현황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수정에 의한 개정과 제도 개편을 각 1회 실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2년 도입 초기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제정되었으나, 2013년 ‘안전’ 부문과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도입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계획 7대 부문과 연계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7개 부문 17개 항목의 ‘핵심 항목’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매년 항목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와 함께, 농어촌서비스기준 연관 업무를 발굴하여 수행
 - 201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원화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핵심 항목’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고, ‘선택 항목’은 각 지자체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2017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표 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현황

개편 이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① 기본계획 분석 ② 2011년 시행계획 분석 ③ 시도계획(충남), 시·군계획(화천군·장흥군) 심층분석 (4) 사례지역 심층조사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201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② 농어촌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총괄팀'의 별도 자료집 발간
2013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① 문화 부문 심층연구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①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②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2014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3)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① 개편안의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 구성 (4)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개편 이후	국가 관리 '핵심 항목'	지자체 자율 '선택 항목'
2015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2)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6 ~ 2017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 (2)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수정 및 목표치 확정,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분석

-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함.
 -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에서 제시하였던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담당자, 전문가, 농어촌주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가 참석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개최함.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자료 구득이 어려운 항목(주택, 경찰순찰)의 개편 방안을 비롯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함.

제 2 장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1. 핵심 항목 주요 내용

-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으로,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함.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핵심 항목 세부항목별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의 서비스기준을 명시하여 현재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함. 또한 개별 시·군의 달성 정도도 함께 점검함.
- 중기 목표치는 제3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19) 동안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나타냄. 아래 <표 2-1>은 핵심 항목의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치와 중기 목표치를 나타냄.

- 2014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제3차 기본계획 5년 동안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기준치(baseline)로 삼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개별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측정 방법이 변경됨. 예를 들면, 교육 부문의 초·중학교의 항목의 경우, 2014년에는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5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유무를 점검함. 또한 정주생활기반 난방 항목의 기존 세부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여부였으나, 2015년부터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로 변경함.

〈표 2-1〉 핵심 항목 및 목표치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14년(%)	'19년 목표(%)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71.0	80
2. 교육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21.1	40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14년(%)	'19년 목표(%)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88.3	95
	8)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62.9	82
	9)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65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77.3	90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 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 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79.4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45.4	55

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통계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됨.
- 핵심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기준별 점검 방법 및 수단이 필요함. 점검 방법은 아래 <표 2-2>와 같이 설정하며,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함.

<표 2-2>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일반 병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스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행정조사
	2) 응급 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물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left(\frac{\text{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text{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text{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text{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right) \times 10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공식통계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공식통계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자료
지자체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행정조사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사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사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사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사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출동	(사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사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총 29개의 통계자료가 필요하며 공식통계로 구득 가능한 통계는 9개, 중앙행정기관 협조자료는 14개, 지자체 행정조사가 필요한 통계는 총 6개 항목임(<표 2-3> 참고).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단위: 개

7개 부문	서비스 기준	세부 기준	통계 확충 범위	구득 가능 통계	통계 보완		기타
					중앙행정기관 협조	지자체 행정조사	
보건·복지	4	4	8	5	1	2	-
교육	2	3	4	0	3	1	-
정주생활기반	5	7	8	2	5	1	-
경제활동·일자리	1	1	1	0	0	1	-
문화·여가	1	3	3	1	2	0	-
환경·경관	1	1	1	1	0	0	-
안전	3	3	4	0	3	1	-
계	17	22	29	9	14	6	-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의 기준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인 2016년으로 설정하지만 아직 공표되지 못한 통계는 2015년도 통계를, 가장 최근의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2017년도 통계를 사용함. 덧붙여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최근 연도의 통계는 2015년이므로 이를 사용하도록 함. 이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음.

〈표 2-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보건 복지	진료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1차 진료 현황	2017	○ (공식통계)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2017	○ (지자체조사)
	응급서비스	각 응급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7	○ (소방청협조)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보건 복지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현황, 급여자 현황)	2016	○ (공식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현황)	2016	○ (공식통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수혜자 현황	2017	○ (지자체조사)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6	○ (공식통계)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보육통계)어린이집 미설치 읍면 현황)	2016	○ (공식통계)
교육	초·중학교	시·군별 초/중학교 현황	2017	○ (교육부협조)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2017	○ (교육부협조)
	평생교육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2016	○ (교육부협조)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수	2017	○ (지자체조사)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	X (통계청협조)
	상수도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5	○ (공식통계)
	난방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6	○ (한국도시가스협회 협조)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	2017	○ (산업통상자원부협 조)
	대중교통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은행 횡수별 마을 수	2015	○ (공식통계)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2016	○ (해양수산부협조)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2017	○ (지자체조사)
	광대역 통합망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2017	○ (과학기술정보통신 부협조)

부문	관련항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여부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i)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iii)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2017	○ (지자체조사)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6	○ (공식통계)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2016	○ (문화체육관광부협 조)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6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환경· 경관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현황	2015	○ (공식통계)
안전	방범설비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7	○ (지자체조사)
	경찰순찰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	X (경찰청협조)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또는 실적 현황	-	X (경찰청협조)
소방출동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7	○ (소방청협조)	

3.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 보건복지 부문

3.1.1.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한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진료 서비스 항목은 각 시·군 내에서 주요 과목의 1차 진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시·군별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을 조사하였으며, 5개 과목에 대한 1차 진료가 모두 가능해야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였음.
 - 본 항목의 점검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 공개된 과목별 병의원 주소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전국의 138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중요과목의 1차 진료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은 99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71.7%로 조사됨.
 - 작년보다 1개 군(함평군)의 이행실태가 개선되었지만 4개 군(연천군, 영월군, 화순군, 진도군)에서 일부 과목(산부인과, 정형외과)의 진료가 불가능해짐.
 - 군 지역 중에는 44곳(53.7%), 도농복합시 중에는 55곳(98.2%)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모든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함.

〈표 2-5〉 중요과목 1차 진료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44 / 82	53.7	-
도농복합시	55 / 56	98.2	-
전체 농어촌 시·군	99 / 138	71.7	-

-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하고 있음.
 - 내과병의원은 2개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고, 한방병의원과 치과병의원은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 입지해 있음.
 - 정형외과는 10개 군 지역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정형외과가 없는 군은 별도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

- 작년에 비해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는 시·군이 줄어들어 농어촌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작년보다 세 곳이 증가한 37개의 시·군(26.8%)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특히,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은 70개(50.7%)에 달함.
 - 보완책으로 34개의 시·군(24.6%)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시·군 내 산부인과가 없으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22곳이 있지만,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으며 관련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48개임.

〈표 2-6〉 중요과목별 이행실태

단위: 개, %

구분	내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정형외과	산부인과	분만 가능
진료 가능 시·군 수	136 / 138	138 / 138	138 / 138	128 / 138	101 / 138	68 / 138
달성률	98.6	100.0	100.0	92.8	73.2	49.3

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무는 공식통계가 없어 행정조사를 통해 조사함.

3.1.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97% 이상으로 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응급서비스 항목은 시·군 단위별로 (도착소요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응급출동 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소방청에서 협조 받은 ‘소방서별 119구급대 소요시간’ 데이터를 통해 전체 138개 시·군 중 소방서가 위치한 117개 시·군에 대한 응급서비스 점검·평가가 가능하였음³.
- 농어촌 117개 시·군의 2017년 총 응급서비스 출동 건수는 약 68.8만 건으로 그 중 67.9만 건에 해당하는 98.6%가 3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됨.
 - 지역별로는 군 지역 97.8%, 도농복합시 98.9%로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가 조금 높게 나타남.

3 작년 대비 3개 군 지역(단양군, 고흥군, 청도군)의 소방서 자료가 추가로 집계되었음.

〈표 2-7〉 응급서비스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9.7	93.1	97.8	-
도농복합시	99.7	94.4	98.9	-
전체 농어촌 시·군	99.7	93.1	98.6	-

○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97%를 달성한 시·군은 117개 시·군 중 104개 (88.9%) 시·군으로 파악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61개 중 49개(80.3%)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도농복합시는 56개 중 55개(98.2%) 지역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표 2-8〉 응급서비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49 / 61	80.3	-
도농복합시	55 / 56	98.2	-
전체 농어촌 시·군	104 / 117	88.9	-

3.1.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노인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총 인원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위 식을 산출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수혜자’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의 정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이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를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간주함.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시설)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이 있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 분석 결과 138개 시·군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작년보다 약 3만 명 증가한 약 42.5만 명이며 이 중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2.5만 명 증가한 약 30.2만 명으로 나타나 이행실태는 71.1%로 소폭 상승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는 2015년 21.6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재가노인종합서비스 이용자는 3.6만 명에서 3.9만 명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는 2.3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함.
 - 지역별로는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가 71.1%로 동일한 수준임.

〈표 2-9〉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20.7	46.0	71.1	-
도농복합시	94.6	59.7	71.1	-
전체 농어촌 시·군	120.7	46.0	71.1	-

-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80%를 넘은 시·군은 19개(13.8%)로 작년 대비 5.8%p 증가함.

〈표 2-10〉 도움이 필요한 노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4 / 82	17.1	-
도농복합시	5 / 56	8.9	-
전체 농어촌 시·군	19 / 138	13.8	-

3.1.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한다.

- 영유아 항목은 읍·면 단위별로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6년 기준 1,403개 읍·면 가운데 만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 거주하는 읍·면의 수는 총 1,395개로 이 중 읍·면내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971개임.
 - 본 기준의 이행실태는 약 69.6%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64.1%,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7.5%로 도농복합시의 보육시설 여건이 군 지역보다 양호함.

〈표 2-11〉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12.5	64.1	-
도농복합시	100.0	28.6	77.5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2.5	69.6	-

- 영유아 항목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80%를 달성한 시·군은 총 63개 시·군(45.7%)으로, 전년도 달성 시·군 비율(41.3%)에 비해 소폭 상승함.

〈표 2-12〉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32 / 82	39.0	-
도농복합시	31 / 56	55.4	-
전체 농어촌 시·군	63 / 138	45.7	-

3.2. 교육 부문

3.2.1. 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초등학교·중학교 항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학교가 운영되어야 함.
 - 2015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부터는 해당 읍·면 지역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1개 이상 운영되고 있을 때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 전체 1,403개 읍·면 중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둘 다 1개교 이상 모두 유지되고 있는 곳은 985개 읍·면으로 이행실태는 70.2%임.
- 참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둘 중 하나라도 있는 읍·면의 수는 1,377개 (98.1%)로 집계됨.
 -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69.7%,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71.0%로 지역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음.

〈표 2-13〉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27.3	69.7	-
도농복합시	100.0	33.3	71.0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7.3	70.2	-

-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에 해당하는 100%를 달성한 지역은 20개 시·군으로, 전체 시·군의 14.5%가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13.4%, 도농복합시의 16.1%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표 2-14〉 농어촌 학교(초·중학교) 육성 지원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1 / 82	13.4	-
도농복합시	9 / 56	16.1	-
전체 농어촌 시·군	20 / 138	14.5	-

○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초·중학생들의 통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수단 서비스 제공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07개 학교 중 2,309개 학교(59.1%)에서 각종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은 65.6%의 초·중학교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51.7%가 통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표 2-15〉 농어촌 초·중학교 통학수단 제공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12.5	65.6	-
도농복합시	100.0	0.0	51.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0.0	59.1	-

3.2.2. 평생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 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항목은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로는 비형식 시설⁴이 적합하여 위 기준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읍·면별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을 조사함.

- 전국 농어촌 지역 1,403개 읍·면 중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수는 265개 지역으로 이행실태는 18.9%로 조사됨.
 - 군 지역은 139개 읍·면(16.8%)에서 도농복합시는 126개 읍·면(21.9%)에서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⁵.

〈표 2-16〉 평생교육시설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66.7	0.0	16.8	-
도농복합시	71.4	0.0	21.9	-
전체 농어촌 시·군	71.4	0.0	18.9	-

- 4 평생교육시설은 준형식과 비형식으로 구분됨. 준형식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및 대학교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학교 시설을 의미하며, 비형식 평생교육 시설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외의 시설을 의미함.
- 5 상기 수치는 비형식시설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한 것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별도 조사한 결과, 주민자치센터에서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이행실태는 84.3%로 높게 나타남.

-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40%를 달성한 시·군은 138개의 시·군 중 20개(14.5%)로 조사됨.
 - 읍·면 내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은 8곳으로 작년(11곳)에 비해 소폭 감소함.

〈표 2-17〉 평생교육시설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8 / 82	9.8	-
도농복합시	12 / 56	21.4	-
전체 농어촌 시·군	20 / 138	14.5	-

3.3. 정주생활기반 부문

3.3.1.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주택 항목은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시·군별 총 가구 수) × 100의 기준을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통계청의 2015년 주택총조사 방식 변경(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변경)으로 통계자료 구득이 불가능함.

3.3.2. 상수도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2%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분의 상수도 항목은 (시·군별 면 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수 / 시·군별 면 지역 주민등록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5년 기준 전체 농어촌 면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01만 명이고, 이 중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는 357만 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71.3%로 집계됨.
 - 군 지역의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65.1%, 도농복합시의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6.7%로 도농복합시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작년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행실태가 2.0%p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항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2-18〉 상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18.9	65.1	-
도농복합시	100.0	31.2	76.7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18.9	71.3	-

- 138개 농어촌 시·군 중 중기 목표치인 82%를 달성한 곳은 39개 시·군으로 전체 시·군의 28.3%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군 지역 16곳(19.5%), 도농복합시 23곳(41.1%)이 중기 목표치인 82%를 만족함.

〈표 2-19〉 상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6 / 82	19.5	-
도농복합시	23 / 56	41.1	-
전체 농어촌 시·군	39 / 138	28.3	-

3.3.3.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65% 이상으로 한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난방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지역 전체 가구 수) × 100으로 측정함⁶.
- 읍 지역이 없는 3개 시·군을 제외한 총 135개 농어촌 시·군의 읍 지역 전체 가구 수는 약 197만 가구이고 이 중 도시가스가 보급된 가구 수는 약 118만 가구로 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60.0%임.
 - 지역별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군 지역은 49.0%, 도농복합시는 69.4%의 이행실태를 보임.

⁶ 난방 항목은 읍 지역만을 기준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함. 따라서 읍 지역이 없는 웅진군, 계룡시, 거제시는 이행실태 점검에서 제외함.

〈표 2-20〉 도시가스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6.9	0.0	49.0	-
도농복합시	110.0	0.0	69.4	-
전체 농어촌 시·군	110.0	0.0	60.0	-

- 서비스기준 목표치(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를 달성한 지역은 33개 시·군으로 24.4%를 차지함.
- 군 지역 9곳(11.1%), 도농복합시 24곳(44.4%)이 중기목표치를 달성함.

〈표 2-21〉 도시가스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9 / 81	11.1	-
도농복합시	24 / 54	44.4	-
전체 농어촌 시·군	33 / 135	24.4	-

- 농어촌 지역의 난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공급하여 난방비를 저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완지표로서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마을 가구 수를 파악함.
-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 / (읍·면 지역 총 가구 수 - 읍·면 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 × 100을 적용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함.

-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 중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을 받는 가구 비율은 0.19%에 그치고 있음.
 - 2017년 기준 총 5,056호에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이 이루어짐. 현재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가 약 271만 세대임을 감안했을 때, 극히 적은 수치에 불과함.
 - 아직까지 소형 LPG저장탱크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예산 투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3.3.4.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 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항목의 이행실태는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를 활용하여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로 점검함.
 -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여부와 도서 지역 여객선 운항 관련 기준은 보완 세부기준으로 별도로 점검함.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기준, 농어촌 지역의 총 행정리 수는 36,527개임. 이 중 32,360개 행정리(88.6%)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86.5%, 도농복합시는 91.3% 나타남.

〈표 2-22〉 대중교통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8.8	41.6	86.5	-
도농복합시	100.0	21.1	91.3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21.1	88.6	-

- 중기 목표치인 100%를 달성한 시·군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룡시가 유일함. 대중교통 항목의 이행실태는 높게 나타났지만, 같은 시·군내에도 대중교통 취약지가 다수 존재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실시함.

〈표 2-23〉 대중교통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0 / 82	0.0	-
도농복합시	1 / 56	1.8	-
전체 농어촌 시·군	1 / 138	0.7	-

- 지자체 행정조사 결과, 138개 시·군 중 121개 시·군(87.7%)이 다양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이 82곳 중 74곳(90.2%), 도농복합시가 56곳 중 47곳(83.9%)으로 도농복합시에 비해 군 지역에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하고 있음.

7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세 사업을 제외한 지자체 자체 공영·순환버스, 콜택시 비용 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등을 의미함.

- 또 다른 보완지표인 도서 지역의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조사·점검함.
 - 행정기관(읍·면사무소)이 위치해 있는 본도가 포함되어 있는 도서 지역은 138개 시·군 중 군이 7곳, 도농복합시가 3곳으로 총 10개 시·군이며, 본도의 수는 총 34개임.
 - 34개의 본도 중 1일 1회 이상 왕복 여객선이 운항되는 곳은 34개로 본 기준의 이행실태는 작년과 동일하게 100%로 나타남.

3.3.5. 광대역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90% 이상으로 한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 광대역통합망 항목의 이행실태는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된 행정리 수 / 구축 대상 행정리 수) × 100으로 점검함.
- 2017년 기준 광대역통합망 구축 대상 행정리 총 36,104개 중 34,802개 행정리(96.4%)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되어 있음. 중기 목표치인 90%를 상회하고 있음⁸.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96.5%, 도농복합시는 96.3%로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음.

⁸ 참고로 설치 대상 세대 수를 기준으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을 살펴보면, 전체 386만 세대 중 96.9%에 해당하는 374만 세대에 광대역통합망이 구축됨.

〈표 2-24〉 광대역통합망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66.5	96.5	-
도농복합시	100.0	71.1	96.3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66.5	96.4	-

- 중기 목표치인 90%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118개 시·군(85.5%)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70개(85.4%), 도농복합시는 48개(85.7%)가 중기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표 2-25〉 광대역통합망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0 / 82	85.4	-
도농복합시	48 / 56	85.7	-
전체 농어촌 시·군	118 / 138	85.5	-

3.4.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이행실태

3.4.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 내에서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이를 위해 지자체별 1) 창업보육 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지원 센터 유무 2)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3) 창업 및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 인력(전담 인력) 유무 4)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연간 운영 횟수를 조사하였음.
 -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에서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간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함.
- 조사 결과, 전체 138개 시·군 중 104개의 시·군(75.4%)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은 56개, 도농복합시는 48개의 시·군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음⁹.

〈표 2-26〉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56 / 82	68.3	-
도농복합시	48 / 56	85.7	-
전체 농어촌 시·군	104 / 138	75.4	-

9 그러나 시·군 간 프로그램 실시 횟수에서 큰 편차가 있음. 예를 들어 연간 20회 이상의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25개(24.0%)인 반면, 5회 이하로 실시한 시·군은 44개(42.3%)임.

3.5. 문화·여가 부문

3.5.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은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함.
- 이를 위해 시·군별 1)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공연 프로그램 현황 3)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프로그램 자료를 조사함.¹⁰
 - 각 시·군별로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설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문화예술회관)과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지방문화원)이 있는지 살펴봄.
- 본 항목의 이행실태는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의 지난 1년 간 공연 및 전시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월 1회 이상인지를 검토함.
 - 문화예술회관과 지방문화원 설치·운영 현황,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참고 자료로 제시함.
- 점검 결과, 용진군을 제외한 137개 농어촌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이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한

¹⁰ 부처 협조자료 중 지방문화원의 문화 프로그램 횟수는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를 활용함. 지역문화행사에는 제향, 세시풍속, 연례행사, 축제, 공모전, 공연, 경시대회, 전시회 등을 포함함.

시·군은 126개 시·군으로 이행실태는 91.3%임¹¹.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89.0%, 도농복합시는 94.6%로 나타남.

〈표 2-27〉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공연 프로그램 개최 이행실태

단위: 개, %

지역구분	서비스기준 조건 충족 지역		비고
	조건 충족 시·군 수	조건 충족 시·군 비율	
군	73 / 82	89.0	-
도농복합시	53 / 56	94.6	-
전체 농어촌 시·군	126 / 138	91.3	-

3.6. 환경·경관 부문

3.6.1.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85% 이상으로 한다.

- 환경·경관 부문 하수도 항목의 이행실태는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총인구 수) × 100으로 점검함.
- 공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점검한 결과, 2015년 기준 전체 농어촌 시·군의 인구 수 약 2,054만 명 중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인구는 1,680만 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82.0%로 집계됨.

11 참고로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공연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과 지방문화원에서의 문화프로그램 월 1회 이상 관람 가능 여부 둘 다 만족하는 시·군은 56개로 이행실태는 40.6%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66.4%, 도농복합시는 86.4%로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표 2-28〉 하수도 보급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95.4	1.4	66.4	-
도농복합시	98.0	58.7	86.4	-
전체 농어촌 시·군	98.0	1.4	82.0	-

- 중기 목표치인 85%를 달성한 시·군은 38개 시·군(27.5%)에 불과함. 이중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군 지역은 7개(8.5%)에 불과하여 군 지역의 하수도 보급이 시급함.

〈표 2-29〉 하수도 보급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 / 82	8.5	-
도농복합시	31 / 56	55.4	-
전체 농어촌 시·군	38 / 138	27.5	-

3.7. 안전 부문

3.7.1.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CCTV 설치율을 60% 이상으로 한다.

- 안전 부문 방법설비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 수/ 총 행정리 수) × 100을 통해 점검함.
 -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구득한 행정리별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활용해 이행실태를 점검함.
- 2017년 기준, 농어촌 지역 총 36,756개 행정리 중 18,131개 행정리에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49.3%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군 지역의 이행실태는 53.5%,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는 44.1%로 나타나 도농복합시보다 군 지역에서 다소 높은 수치로 나타남.

〈표 2-30〉 방법용 CCTV 설치 이행실태

단위: %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100.0	4.4	53.5	-
도농복합시	100.0	12.0	44.1	-
전체 농어촌 시·군	100.0	4.4	49.3	-

- 중기 목표치인 60%를 달성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은 44개 시·군으로 전체 31.9%의 시·군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 군 지역은 37.8%, 도농복합시는 23.2%의 지역이 중기 목표치를 달성함.

〈표 2-31〉 방범용 CCTV 설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단위: 개, %

지역구분	중기 목표치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31 / 82	37.8	-
도농복합시	13 / 56	23.2	-
전체 농어촌 시·군	44 / 138	31.9	-

3.7.2. 경찰 순찰(경찰청 자료 미제공)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경찰청 자료 미제공

3.7.3.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 소방 출동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은 (도착 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출동 건 수) × 100으로 점검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5분 대응론¹²⁾’에 입각하여 ‘소방 출동’ 항목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138개 시·군에서 총 20,566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했

¹² 화재 발생에 대한 대응 이론은 ‘5분 대응론’과 ‘8분 대응론’이 있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한 직후 골든타임(5분 또는 8분)이 지나면 전소(全燒) 단계에 이르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기에 그 이전에 화재 진압이 가능해야 함을 의미함.

으며,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한 건은 5,064건(24.6%)이 해당함.

- 군 지역과 도농복합시의 이행실태가 24.6%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2-32〉 소방 출동 이행실태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이행실태	비고
군	54.5	2.8	24.6	-
도농복합시	51.6	5.9	24.6	-
전체 농어촌 시·군	54.5	2.8	24.6	-

- 소방 출동 항목의 서비스기준 중기 목표치인 55%를 달성하고 있는 농어촌 시·군은 없었음.

제 3 장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평가

1. 항목별 이행실태 평가

- 보건·복지 부문은 진료서비스 항목의 달성률이 낮아짐.
 - 통계 자료 분석 결과, 일부 군 지역의 산부인과 수가 줄어들면서 진료서비스 항목의 달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와 같이 취약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포함하여 산부인과의 없는 농어촌 시·군이 증가하고 있음.
 -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항목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던 작년과 달리 유지 또는 소폭 증가하였음.

- 교육 부문은 전체적으로 달성률이 감소함.
 - 전국 농어촌 읍·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둘 다 유지하고 있는 읍·면 비율은 70.2%로 전년 대비 1.6%p 감소함.
 - 학생들을 위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초·중학교 비율은 약 59%로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비율은 매년 감소하여 현재 18.9%로 집계됨.
- 정주생활기반 분야의 기준 달성률은 전반적으로 향상됨.
 - 상수도, 난방, 광대역통합망 항목 모두에서 기준 달성률이 전년에 이어 소폭 향상되었음.
 - 대중교통 항목은 5년마다 공표되는 통계를 사용하여 전년 대비 달성률 변화를 직접 점검하긴 어려우며, 2010년 통계와 비교할 때, 달성률은 소폭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부문은 기준 달성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문화·여가 부문은 소폭 감소함.
 -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하수도 항목(환경·경관 부문)은 매년 꾸준히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률이 향상됨.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문화·여가 부문)은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폭 감소함.
- 안전 부문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하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 방법설비 항목은 기준 달성률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무적인 반면, 소방 출동 항목은 소폭 감소하여 현상 유지에 그침.
 - 경찰 순찰 항목은 작년에 이어 관련 자료를 경찰청에서 제공하지 않아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못함.
- 위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2016년 대비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비교하여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총 17개 항목 중 향상된 항목 수는 8개, 유지 1개, 하락한 것은 6개, 그리고 비교가 불가능 것은 2개로 나타남.
 - 목표 달성률의 향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15개 기준 항목 중 목표 달성률이 향상된 항목의 비중은 53.3%이며, 하락된 항목의 비중은 40.0%임.

〈표 3-1〉 핵심 항목 이행실태의 변화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2016	2017	15-16 증감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80	73.9	71.7	\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98.6	98.6	-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70.1	71.1	/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69.2	69.6	/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71.8	70.2	\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19.7	18.9	\
3.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	-	X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69.3	71.3	/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57.0	60.0	/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90.4	88.6	\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92.8	96.4	/
4. 경제 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67.4	75.4	/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92.0	91.3	\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81.0	82.0	/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43.2	49.3	/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	-	X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25.2	24.6	\

주: 1) 각 세부기준에 대하여 향상된 경우 /, 변동이 없는 경우 -, 하락한 경우 \,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 X로 나타냄.

- 기준 항목별로 2019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시·군의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임.
 - 진료서비스, 초·중학교, 평생교육, 문화·여가의 4개 기준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농어촌 시·군의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 문화·여가 부문과 일부 항목(응급서비스, 광대역통합망)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기 목표를 기 달성한 지역이 많지 않음.
 - 이행실태가 지속적으로 향상된 항목(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일지라도 중기 목표치를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아직 소수에 불과함.

- 전년 대비 군 지역의 이행실태가 다소 개선되었음.
 - 군 지역의 경우 진료서비스와 초·중학교의 2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 달성 지역이 감소한 반면, 도농복합시는 평생교육, 창업 및 취업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3개 항목에서 중기 목표 기 달성 지역의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농복합시에 비해 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군 지역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군 지역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표 3-2〉 핵심 항목 목표달성 시·군 현황

부문	핵심 항목	군(82개)		도농복합시(56개)		전체 농어촌 시·군(138개)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47	44	55	55	102	99
	2) 응급서비스*	42	49	55	55	97	104
	3) 노인	9	14	2	5	11	19
	4) 영유아	26	32	31	31	57	63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12	11	9	9	21	20
	6) 평생교육	7	8	14	12	21	20
3. 정주생활기반	7) 주택	-	-	-	-	-	-
	8) 상수도	16	16	16	23	32	39
	9) 난방*	9	9	22	24	31	33
	10) 대중교통	0	0	1	1	1	1
	11) 광대역통합망	59	70	41	48	100	118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43	56	50	48	93	104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73	73	54	53	127	126
6. 환경·경관	14) 하수도	6	7	30	31	36	38
7. 안전	15) 방범설비	21	31	8	13	29	44
	16) 경찰순찰	-	-	-	-	-	-
	17) 소방 출동	0	0	0	0	0	0

주 1)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임.

2) 응급서비스의 경우 소방서가 입지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짐(2016년 114개, 2017년 117개 시·군 대상).

3) 난방 항목은 읍지역이 없는 3개 시·군(웅진군, 계룡시, 거제시)을 제외한 13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음.

4) 주택, 경찰순찰 항목은 데이터 부재로 점검 불가능

2. 지역별 이행실태 평가

○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은 대부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부산시 기장군은 노인과 초·중학교, 광대역통합망,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대구시 달성군은 방법설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울산시 울진군은 방법설비와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은 전체 15개 항목 중 11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경기도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13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보다 높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타 지역에 비해 이행실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중기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함.
- 강원도는 총 9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상수도, 난방 등 총 9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전체 평균보다 저조하며, 특히 정주생활기반 부문(난방, 상수도)과 안전 부문(소방출동)의 이행실태가 크게 저조함.
 - 반면, 노인, 영유아, 교육 부문에서 타 시·군 보다 높은 이행실태를 보임.
- 충청북도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2개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영유아, 초·중학교, 상수도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상수도 항목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임.
- 충청남도는 총 7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고 있음.
- 노인 항목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이행실태를 보이며, 평생교육, 상수도, 난방, 하수도 등도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전라북도는 총 7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영유아, 평생교육, 문화 프로그램 항목에서 9개 도 중에 가장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임.
 - 반면, 상수도, 방범설비, 통학수단 제공 학교 비율은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에는 총 11개 기준항목이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진료서비스, 하수도 항목이 9개 도 중에 가장 낮으며, 보건복지와 안전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이행실태가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 경상북도는 방범설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이행 실태를 보이고 있음.
 - 경상북도는 9개 도 중에서 이행실태가 가장 저조하며, 특히 경제활동, 평생교육, 소방출동 등에서 매우 낮은 이행 실태를 보임.

- 경상남도에는 총 8개 기준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경상남도는 교육 부문의 이행 실태가 저조하며 특히, 방범설비, 초·중학교 항목의 이행 실태가 9개 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타 도에 비해 하수도 항목과 소방출동 항목의 이행 실태는 양호한 편임.

- 제주도는 정주생활기반과 안전 부문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항목에서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낮은 목표 달성률을 보이고 있음.

〈표 3-3〉 지역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

구분/ 종기 목표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진료 서비스 80%	응급 서비스 97%	노인 80%	영유아 80%	초·중학교/ (통학수단제공학교) 100%	평생 교육 40%	주택 95%	상수도 82%	난방/ (LPG저장탱크) 65%	대중 교통 100%	관대역 통합망 90%	
부산(기장)	100.0	99.1	65.5	100.0	60.0 (28.6)	40.0	-	100.0	86.9 (0.3)	96.4	95.0	
대구(달성)	100.0	99.6	89.4	100.0	100.0 (23.4)	22.2	-	100.0	95.8 (0.7)	93.3	100.0	
인천(강화옹진)	0.0	98.3	74.4	75.0	65.0 (78.0)	5.0	-	42.7	63.6 (0.5)	92.0	91.5	
울산(울진)	100.0	98.9	76.7	83.3	83.3 (19.6)	33.3	-	78.7	96.9 (0.0)	96.6	99.1	
경기도	93.3	98.9	73.5	94.2	76.6 (45.1)	35.5	-	81.9	80.0 (0.2)	92.3	99.9	
강원도	60.0	97.8	81.5	84.1	78.2 (100.0)	21.8	-	62.5	21.0 (0.2)	87.3	93.1	
충청북도	90.9	99.0	71.8	68.6	60.8 (66.0)	22.5	-	62.5	60.4 (0.2)	92.5	96.5	
충청남도	86.7	99.5	66.8	77.0	70.2 (56.2)	18.0	-	63.2	55.2 (0.2)	93.4	92.4	
전라북도	61.5	98.7	70.0	58.5	73.0 (85.5)	14.5	-	83.3	41.3 (0.2)	93.5	98.7	
전라남도	57.1	97.5	68.0	65.1	74.7 (55.1)	15.3	-	68.3	42.0 (0.2)	88.9	97.8	
경상북도	60.9	98.3	70.9	60.9	65.5 (50.5)	14.7	-	67.2	56.0 (0.2)	82.1	94.0	
경상남도	77.8	98.4	68.4	58.7	60.7 (49.0)	15.3	-	71.7	57.9 (0.1)	81.2	97.3	
제주도	100.0	99.1	74.1	83.3	100.0 (21.7)	41.7	-	100.0	0.0 (0.2)	36.0	75.6	
전체 농어촌 시·군	71.7	98.6	71.1	69.6	70.2 (59.1)	18.9	-	71.3	60.0 (0.2)	88.6	96.4	

〈표 3-3〉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계속)

구분	4. 경제활동일자리		5. 문화여가		6. 환경경관		7. 안전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100%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100%		하수도 85%	방범설비 60%	경찰 순찰 100%	소방 출동 55%	
부산(기장)	100.0		0.0		91.0	99.4	-		35.0
대구(달성)	100.0		100.0		82.5	23.4	-		33.3
인천(강화옹진)	50.0		50.0		43.4	38.3	-		17.7
울산(울진)	100.0		100.0		95.4	49.0	-		22.3
경기도	100.0		86.7		88.2	50.3	-		10.4
강원도	66.7		100.0		84.6	41.1	-		20.5
충청북도	90.9		100.0		82.3	56.7	-		28.3
충청남도	80.0		100.0		74.2	47.0	-		32.4
전라북도	76.9		69.2		78.0	69.1	-		30.1
전라남도	71.4		95.2		71.7	42.5	-		23.4
경상북도	52.2		87.0		72.5	50.6	-		16.0
경상남도	77.8		100.0		88.6	37.0	-		43.9
제주도	100.0		100.0		91.4	48.8	-		24.2
전체 농어촌 시·군	75.4		91.3		82.0	49.3	-		24.6

주: 음영 표시는 전체 농어촌 시·군에 비해 이행실태가 낮은 항목임.

- 2016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비교가 가능한 총 15개 기준항목 중 2017년에 9개 도 전 지역에서 모두 이행실태가 향상된 기준항목은 3개 항목임.
 - 기초 생활 인프라와 관련된 난방, 광대역통합망, 하수도 항목의 경우 9개 도 모두에서 이행실태가 향상되었음.
 - 이 외에도 노인, 상수도, 문화 프로그램, 방범설비 등의 항목은 대부분의 도에서 이행실태가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

- 초·중학교, 평생교육 등 교육 부문과 경제활동 부문, 대중교통, 소방출동 항목은 다수의 도에서 전년 대비 이행수준이 감소함.
 - 소방 출동 항목은 7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졌으며, 대중교통 항목과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항목은 6개 도 지역에서 달성률이 감소하였음.
 - 교육부문을 4~5개 도에서 전년 대비 목표 달성률이 낮아짐.

- 전라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에서는 5~7개 항목의 이행 수준이 전년에 비해 낮아짐.
 - 전라북도는 소방출동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이행실태가 유지 또는 향상되었음.
 - 충청남도과 전라남도는 가장 많은 7개 항목의 이행실태가 감소하여 이행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표 3-4〉 2016-2017년 시·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비교

부문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100.0	93.3	66.7	60.0	90.9	90.9	86.7	86.7	61.5	61.5	61.9	57.1	60.9	60.9	77.8	77.8	100.0	100.0
	2) 응급 서비스	98.9	98.9	97.8	97.8	98.7	99.0	99.6	99.5	98.3	98.7	97.6	97.5	98.4	98.3	98.5	98.4	99.2	99.1
	3) 노인	71.9	73.5	76.8	81.5	72.4	71.8	68.9	66.8	67.6	70.0	66.7	68.0	70.2	70.9	67.4	68.4	74.2	74.1
	4) 영유아	92.1	94.2	79.7	84.1	68.6	68.6	77.6	77.0	58.5	58.5	65.9	65.1	60.8	60.9	57.1	58.7	100.0	83.3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75.2	76.6	78.2	78.2	61.8	60.8	70.8	70.2	73.0	73.0	75.5	74.7	71.4	65.5	63.3	60.7	100.0	100.0
	6) 평생교육	41.1	35.5	23.5	21.8	19.6	22.5	21.1	18.0	13.2	14.5	14.8	15.3	14.7	14.7	15.8	15.3	33.3	41.7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	-	-	-	-	-	-	-	-	-	-	-	-	-	-	-	-	-
	8) 상수도	80.5	81.9	59.5	62.5	63.7	62.5	60.4	63.2	80.5	83.3	63.9	68.3	64.3	67.2	69.9	71.7	100.0	100.0
	9) 난방	78.6	80.0	18.6	21.0	58.1	60.4	50.8	55.2	40.3	41.3	38.7	42.0	52.0	56.0	51.4	57.9	0.0	0.0
	10) 대중교통	95.8	92.3	88.7	87.3	89.7	92.5	92.7	93.4	93.2	93.5	89.6	88.9	85.2	82.1	88.0	81.2	93.0	36.0
	11) 광대역 통합망	99.9	99.9	92.9	93.1	95.2	96.5	91.2	92.4	86.3	98.7	90.9	97.8	92.1	94.0	97.1	97.3	75.6	75.6

부문	항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지원 컨설팅 교육	100.0	100.0	86.7	66.7	100.0	90.9	93.3	80.0	76.9	76.9	85.7	71.4	65.2	52.2	100.0	77.8	100.0	100.0
5. 문화· 여가	13) 문화 시설 및 프로 그램	93.3	8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9.2	69.2	95.2	95.2	91.3	87.0	94.4	100.0	100.0	100.0
6. 환경· 경관	14) 하수도	87.4	88.2	84.1	84.6	81.8	82.3	72.4	74.2	76.6	78.0	70.5	71.7	72.1	72.5	87.9	88.6	91.1	91.4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 설비	51.3	50.3	26.9	41.1	50.6	56.7	44.5	47.0	63.0	69.1	29.6	42.5	46.2	50.6	31.0	37.0	48.8	48.8
	16) 경찰 순찰	-	-	-	-	-	-	-	-	-	-	-	-	-	-	-	-	-	-
	17) 소방 활동	11.7	10.4	20.7	20.5	30.0	28.3	38.2	32.4	32.5	30.1	24.4	23.4	13.8	16.0	42.4	43.9	28.9	24.2

주: 음영 표시는 전년 대비 감소한 항목임.

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개선 방향

3.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수정·보완

- 통계자료의 미비 등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핵심 항목 개편 필요
 - 정주생활기반 부문 주택 항목은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 95% 이상 달성’을 중기 목표로 설정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해왔으나, 해당 조사가 2015년부터 표본조사 형태의 주거실태 조사로 바뀌면서, 시·군별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대체할 수 있는 통계조사도 없는 실정임.
 - 이에 현행 핵심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주거실태 및 주거서비스 관련 대체 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안전 부문 경찰순찰 항목은 ‘범죄 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이며, 중기 목표치는 100%를 설정하였으나, 담당 부처인 경찰청에서는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하여 순찰 지점에 대한 전국 단위 통계를 구축하지 않는다고 밝힘.
 - * 범죄취약지역 마을 : 전년도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가 발생한 마을(행정리)
 - 따라서 현재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 여부를 점검하는 핵심 항목을 순찰 지점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통계 등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핵심 항목 중기 목표치의 수정 필요
 - 안전 부문 소방출동 항목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이며, 중기 목표는 55%로 정함.
 - 그러나 농어촌 시·군의 경우 소방차 대기장소와 마을 간 평균 출동거리가 도시 지역에 비해 긴 까닭에 농어촌 지역에서 화재 발생 지역에 소방

차가 5분 내에 도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평균 출동거리('14) : 서울 1.6km / 전남 4.8 km

* 5분 이내 출동률('12~'14) : 특별·광역시 24.5% / 도 8.06%

- 현행 핵심 항목은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반적인 화재의 최성기인 5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해진 것임. 하지만, 최근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내화구조 확산에 따라 화재 최성기를 8분으로 설정하여 대응 지침을 구상하는 사례도 나타남(중앙소방본부, 2015)¹³.
 - 담당부처에서도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책 목표 대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소방관서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방차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소방출동 항목에 대하여 목표치 수정, 이행실태 점검 기준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핵심 항목의 개편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한 통계 구축 여부를 판단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 및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함.

참고: 농어촌서비스기준 변경 절차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6호(시행 2015.12.29.)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의 부칙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규정함.

13 미국 『화재안전협회(NFPA) 1710』, 일본 『소방력 정비지침』에서는 화재 최성기 시점을 8분으로 규정

3.2. 정책 연계 방안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주민의 정주여건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부문을 아우르고 있으나, 담당 부처의 관심과 협조가 저조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이행실태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
 - 항목 목표 설정이나 이행 실태 점검·평가를 위한 자료 협조 등에 있어 부처 간 비협조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 및 부문별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삶의 질 시행 계획 중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하여, 담당부처에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률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점검 결과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개별 정책 및 사업의 내용과 사업량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방안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내에서도 지역 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낙후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부족한 생활서비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농촌 지역개발 사업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 항목별로 제시된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어촌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집중 투자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달성을 위해 지자체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부록 1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 모든 조사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보건 복지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능하다.	시·군내 물리치료실 현황 * 보건(지)소 및 일반 병의원 내 물리치료실 포함(단, 물리치료사 상근하는 곳에 한함)	()개소	()실과 성명: Tel:	년 월	(5)개소
			시·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여 / 부		년 월	여
			시·군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수	()개소 분만 가능	년 월	(1)개소 분만 가능	
보건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 대상) 수혜자 현황	()명	()실과 성명: Tel:	년 월	(403)명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교육	평생 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 지역 제외)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비형식 기관과 관련됨	()개 읍면	()살과 성명: Tel:	년 월	()개 읍면 (10)개 읍면
정주 생활 기반	대중 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시·군별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 (예: 지자체 자체 공영순환버스, 콜택시 비용 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등) *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사업 제외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 - -	()살과 성명: Tel:	년 월	(5)개 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 공영버스 - 콜택시 비용 지원 - 마중택시 운영 - 키폴 조직 지원 - 미니버스 운영 등등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란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경제 활동 .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	사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군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실과 성명: Tel:	년 월	무
			사군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유
			사군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전문인력) 고용 여부	여 / 부 ()명			여 (2)명
안전	방범 장비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사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연 ()회	()실과 성명: Tel:	년 월	연 (7)회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행정리) 수 (동지역 제외)	()개 행정리			(225)개 행정리
			사군 내 전체 방범용 CCTV 개수 (동지역 제외)	총 ()개			총 (320)개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관계부처 협조자료 목록

부문	관련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보건복지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구조 전문인력이 구급차에 동승	출동 시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인력의 동승 여부 표시 자료(건 별)	소방청
			신고 접수 후 30분내 응급현장 도착	소방서별 119 구급대 소요시간(건 별)	소방청
교육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 육성	읍면별 초등/중학교 현황	교육부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읍면별 각 초등/중학교의 통학수단 제공 현황	교육부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비형식 평생교육 시설 운영 읍면 비율 40% 이상	비형식 평생교육시설 현황(주소록)	교육부
정주생활기반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기초지자체 원수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	기초지자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 관리 현황	환경부
			읍지역 도시가스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70% 이상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보급률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LPG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 추진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부문	관련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	구축 기관
문화여가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에 1일 1회 이상 왕복선 운행	도서지역(시·군)별 본도(읍·면)현황 및 여객선 운행 현황	해양수산부
	광대역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IPTV 시청을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률 90% 이상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개최(관람 가능)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프로그램 개최(관람 가능)	시·군별 지방문화원의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 프로그램 수(월별) 시·군별 문화회관(문화예술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분기별)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안전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신고 접수 후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 비율을 55% 이상으로 함	화재출동시간 현황 (읍·면동 단위)	소방청

2017 전국 농어촌 시·군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수생활기반				평대역 통합만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도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운영 여부	형질도착시간 30분 이내 건수비율(%) 97% 이상 (소양서 없는 시·군은 -표시)	영유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음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총음면수중 평생교육 시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기구수중 취자주거 기구수 비율(%) 95% 이상	면지역주민 등록인구중 담수인구 비율(%) 82% 이상	읍면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읍부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LPG 저장탱크 공극 기구 비율(%)	도로15분내 장두상, 버스 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100% 이상	평대역 통합만 구축률(%) 90% 이상	
부산	1	22	0	5	28.6	40.0	-	100.0	86.9	0.29	96.4	0	95.0
대구	1	39	0	2	23.4	22.2	-	100.0	95.8	0.69	93.3	1	100.0
강화군	0	6	0	0	61.5	7.7	-	51.2	63.6	0.70	94.6	0	93.5
웅진군	0	3	0	1	99.3	0.0	-	24.5	-	0.00	85.3	1	86.7
울주군	1	21	0	0	83.3	33.3	-	78.7	96.9	0.00	96.6	1	99.1
평택시	1	101	0	7	77.8	22.2	-	94.7	93.4	0.39	95.7	1	100.0
남양주시	1	59	0	14	100.0	44.4	-	100.0	86.4	0.18	97.6	1	100.0
용인시	1	127	0	6	100.0	71.4	-	92.1	76.9	0.00	94.8	1	100.0
파주시	1	3	0	3	69.2	37.0	-	93.8	70.5	0.18	97.1	0	100.0
이천시	1	43	0	2	80.0	50.0	-	83.6	74.9	0.00	90.5	1	100.0
안성시	1	19	0	2	41.7	25.0	-	80.6	96.3	0.92	81.5	1	100.0
김포시	1	47	0	4	100.0	28.6	-	82.0	79.0	0.00	94.8	1	100.0
화성시	1	78	0	6	78.6	35.7	-	94.8	80.3	0.13	93.2	1	100.0
광주시	1	32	1	4	71.4	42.9	-	50.0	81.4	0.00	96.0	1	100.0
양주시	1	19	0	1	60.0	60.0	-	94.2	72.5	0.00	97.0	1	100.0
포천시	1	17	0	4	75.0	38.1	-	63.2	69.3	0.10	88.8	1	100.0
여주시	1	22	0	0	88.9	74.2	-	63.1	34.9	0.51	83.2	1	100.0
양천군	0	7	0	0	60.0	20.0	-	93.8	64.2	0.00	93.6	1	100.0
가평군	1	17	0	0	83.3	66.7	-	69.6	50.1	0.00	94.4	1	100.0
양평군	1	6	0	1	83.3	33.3	-	55.2	53.8	0.00	92.9	1	98.8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도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기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동용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양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총면수중 비행시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취자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지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포시)	읍부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PC 저장형크 공단 가구 비율 (%)	도보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비율(%) 100% 이상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충천시	1	58	0	5	98.3	80.8	60.0	100.0	20.0	33.3	60.0	100.0	1	100.0
완주시	1	64	0	6	98.9	77.6	100.0	77.8	100.0	33.3	100.0	100.0	1	91.7
강릉시	1	50	0	7	98.8	80.1	87.5	50.0	100.0	25.0	100.0	100.0	1	94.5
삼척시	1	15	0	3	98.5	94.6	75.0	75.0	100.0	0.0	100.0	100.0	1	100.0
홍천군	1	11	0	0	95.2	55.2	80.0	90.0	100.0	20.0	100.0	100.0	1	80.1
횡성군	1	13	0	0	97.5	88.7	88.9	100.0	100.0	33.3	100.0	100.0	1	66.5
영월군	0	7	0	1	97.3	95.9	44.4	88.9	100.0	11.1	100.0	100.0	1	91.5
평창군	0	9	1	0	94.7	67.0	100.0	100.0	100.0	25.0	100.0	100.0	0	98.9
장선군	0	5	1	0	97.1	82.0	100.0	100.0	100.0	11.1	100.0	100.0	1	100.0
철원군	1	11	0	0	98.5	59.7	83.3	36.4	100.0	18.2	100.0	100.0	0	100.0
화천군	0	3	0	0	-	81.3	100.0	80.0	100.0	20.0	100.0	100.0	1	100.0
양구군	1	3	0	0	-	81.9	100.0	100.0	100.0	20.0	100.0	100.0	1	100.0
인제군	1	7	0	0	93.1	120.7	100.0	100.0	100.0	33.3	100.0	100.0	1	83.3
고성군	0	7	1	0	98.5	81.8	100.0	66.7	100.0	50.0	100.0	100.0	0	100.0
양양군	0	4	1	0	95.9	118.4	66.7	66.7	100.0	16.7	100.0	100.0	1	100.0
충주시	1	69	0	6	98.7	63.4	69.2	61.5	73.3	23.1	100.0	100.0	1	94.9
제천시	1	39	0	3	98.6	78.4	75.0	87.5	55.6	25.0	100.0	100.0	1	94.6
청주시	1	139	0	13	99.6	74.6	100.0	69.2	60.0	30.8	100.0	100.0	1	100.0
보은군	1	17	0	0	98.3	66.3	27.3	36.4	81.0	18.2	100.0	100.0	1	100.4
옥천군	1	23	0	0	98.9	62.9	44.4	44.4	63.2	11.1	100.0	100.0	1	97.3
영동군	1	13	1	1	98.3	73.6	63.6	72.7	58.3	18.2	100.0	100.0	1	87.4
진천군	1	8	0	1	99.3	72.4	85.7	57.1	81.0	28.6	100.0	100.0	1	99.3
괴산군	1	7	0	0	97.7	71.2	54.5	54.5	68.2	9.1	100.0	100.0	1	96.4
음성군	1	31	0	0	98.6	74.6	100.0	77.8	68.8	44.4	100.0	100.0	1	98.4
단양군	0	6	1	0	96.9	74.1	62.5	50.0	55.0	12.5	100.0	100.0	1	85.8
증평군	1	6	0	0	99.1	63.0	100.0	50.0	57.1	50.0	100.0	100.0	1	98.0

충청남도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도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기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포시)	영양아 3명 이상 음연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연수 비율(%) 80% 이상	총연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연수 비율(%) 100% 이상	총연면수중 비형식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연수 비율(%) 40% 이상	총기구수중 취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포시)	읍부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PG 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 (%) 100% 이상	도내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비율(%) 100% 이상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천안시	1	89	0	174	99.7	67.6	83.3	55.3	25.0	44.0	68.9	0.82	95.9	1	100.7
공주시	1	33	0	3	99.2	65.4	100.0	80.0	74.1	30.0	-	0.0	94.3	1	89.2	
보령시	1	24	0	1	99.6	66.4	72.7	63.6	53.1	9.1	-	48.9	0.0	94.0	1	96.6
아산시	1	59	0	3	99.7	64.5	90.9	90.9	44.2	45.5	-	87.5	0.24	96.0	1	101.1
서산시	1	33	1	2	99.5	73.6	100.0	100.0	54.8	10.0	-	77.6	0.00	91.6	1	77.8
논산시	1	29	0	1	99.6	59.7	92.3	53.8	67.6	7.7	-	45.9	11.5	94.1	1	96.9
계룡시	1	5	1	0	99.1	60.0	100.0	66.7	0.0	33.3	-	95.4	0.00	100.0	0	100.0
당진시	1	49	0	2	99.5	65.9	81.8	81.8	48.6	18.2	-	66.7	84.9	94.6	1	73.5
금산군	1	19	0	1	99.6	62.5	80.0	60.0	64.0	30.0	-	59.0	59.7	86.7	1	88.4
부여군	1	23	0	0	99.7	73.4	56.3	62.5	75.0	12.5	-	56.9	32.4	95.2	1	100.0
서천군	1	9	1	0	99.5	70.7	53.8	53.8	59.3	7.7	-	56.3	48.2	92.4	1	100.0
청양군	0	13	0	0	99.6	61.8	60.0	60.0	68.4	10.0	-	27.5	0.0	92.9	1	100.0
홍성군	1	12	1	1	99.7	76.2	81.8	72.7	35.3	18.2	-	71.0	48.6	90.0	1	91.1
예산군	1	19	0	0	99.6	63.2	66.7	83.3	57.1	8.3	-	30.9	50.2	90.9	1	79.9
태안군	0	22	1	0	98.2	63.4	62.5	87.5	53.1	25.0	-	73.1	35.9	94.7	1	80.0
군산시	1	75	0	4	99.3	71.6	90.9	72.7	73.5	27.3	-	86.8	1.8	94.9	1	97.6
익산시	1	79	1	5	99.6	73.7	66.7	66.7	85.7	0.0	-	95.0	0.0	96.4	1	98.6
정읍시	1	52	0	3	99.1	63.7	53.3	73.3	85.7	13.3	-	95.3	0.0	95.3	1	97.7
남원시	1	34	0	2	97.5	71.0	62.5	62.5	100.0	6.3	-	65.8	0.0	98.2	1	98.8
김제시	1	34	0	2	98.8	66.2	33.3	46.7	88.9	0.0	-	99.2	0.0	96.7	1	99.1
완주군	1	25	0	0	-	82.2	76.9	76.9	79.5	46.2	-	62.7	63.5	96.0	1	97.6
진안군	1	14	0	0	-	84.4	36.4	81.8	95.7	18.2	-	54.6	0.0	90.8	1	99.3
무주군	0	10	0	0	-	62.1	83.3	100.0	93.8	16.7	-	59.4	54.4	90.0	1	100.0
장수군	0	2	1	0	97.1	80.2	42.9	100.0	81.3	14.3	-	73.4	0.0	97.0	1	100.0
임실군	0	18	0	0	-	73.9	25.0	75.0	87.5	33.3	-	79.2	36.7	93.4	1	97.7
순창군	0	13	0	0	-	61.9	81.8	45.5	90.9	9.1	-	57.6	64.9	82.1	1	98.4
고창군	0	32	0	1	98.4	68.8	57.1	92.9	80.0	7.1	-	98.6	60.5	87.3	1	99.6
부안군	1	20	0	0	97.8	53.1	61.5	84.6	80.6	7.7	-	99.8	47.7	92.9	1	99.4

총합

전라
북도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도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기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동음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유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총면수중 비형식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포시)	읍부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PG 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 (%) 100% 이상	도보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비율(%) 100% 이상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시도명	여수시	1	55	0	3	98.1	68.7	85.7	100.0	38.8	42.9	-	54.6	0.0	0.34	75.5	1	100.5
	순천시	1	51	0	2	98.3	74.5	81.8	72.7	43.3	18.2	-	83.3	0.0	0.00	97.0	1	99.7
	나주시	1	43	0	0	98.5	70.0	76.9	76.9	60.0	15.4	-	58.0	0.0	0.00	86.8	1	96.1
	광양시	0	35	0	1	98.4	64.3	71.4	71.4	68.2	14.3	-	57.2	92.6	0.00	97.0	1	100.0
	담양군	1	26	0	0	97.9	60.8	33.3	50.0	61.9	16.7	-	69.1	45.0	0.00	97.0	1	99.7
	곡성군	0	16	1	0	-	60.8	45.5	27.3	100.0	18.2	-	70.6	26.0	1.46	91.5	1	98.9
	구례군	0	10	0	0	-	58.1	12.5	50.0	56.3	12.5	-	35.1	31.2	0.74	94.7	1	99.3
	고흥군	1	29	0	1	93.4	70.2	75.0	87.5	63.9	6.3	-	57.2	0.0	0.00	95.0	1	98.5
	보성군	1	24	0	0	97.4	69.6	50.0	58.3	62.1	16.7	-	30.6	0.0	0.00	92.4	1	95.9
	화순군	0	37	0	0	98.2	71.0	23.1	69.2	59.3	7.7	-	70.8	84.2	0.00	91.2	1	98.0
	정흥군	1	21	0	0	-	65.1	70.0	80.0	58.3	10.0	-	70.2	22.7	0.29	85.7	1	94.0
	강진군	1	11	0	1	97.0	74.1	54.5	72.7	65.2	9.1	-	40.0	14.9	0.00	83.9	1	97.9
	해남군	1	34	0	0	93.9	63.4	64.3	71.4	60.0	14.3	-	51.8	62.9	0.00	91.2	1	100.2
	영암군	0	29	0	0	97.8	62.9	90.9	90.9	46.4	36.4	-	67.0	76.0	0.00	83.4	1	98.4
	무안군	0	35	0	0	97.7	58.8	88.9	88.9	50.0	44.4	-	82.8	70.5	0.00	91.6	1	99.0
	함평군	1	23	0	0	-	64.8	100.0	77.8	68.4	11.1	-	69.5	32.0	0.00	83.5	1	98.2
	영광군	0	25	0	1	98.4	77.3	54.5	72.7	53.8	18.2	-	86.7	35.1	0.25	93.1	1	100.7
	장성군	0	20	0	0	-	77.1	36.4	63.6	71.4	9.1	-	82.0	51.3	0.00	94.2	1	99.7
	완도군	1	26	0	1	-	72.1	83.3	100.0	48.7	8.3	-	94.4	0.0	0.28	79.3	1	93.5
	진도군	0	1	1	1	-	65.7	100.0	100.0	41.7	14.3	-	99.0	0.0	0.00	79.8	1	100.4
	신안군	1	25	1	0	-	61.5	85.7	92.9	41.7	0.0	-	86.6	0.0	0.54	74.2	1	87.8

전라
남도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시도명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기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도움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양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총면수중 비형식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음부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음이 없는 시·군은 -포시)	읍부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PC 저장함크 공급 기구 비율 (%) 100% 이상	도보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비율(%) 100% 이상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시도명	포항시	1	105	0	5	98.2	66.8	71.4	100.0	40.8	7.1	-	70.0	82.6	0.00	92.4	1	96.8
	경주시	1	64	0	3	98.5	71.5	91.7	75.0	37.5	33.3	-	66.6	50.1	0.00	88.5	0	92.1
	김천시	1	24	0	1	97.8	69.0	46.7	33.3	60.9	6.7	-	53.4	0.0	0.19	93.1	0	94.3
	안동시	1	43	1	3	97.4	66.5	71.4	64.3	54.8	28.6	-	62.9	3.5	0.00	86.7	1	93.4
	구미시	1	44	0	11	99.5	75.8	62.5	87.5	50.0	0.0	-	86.1	63.5	0.93	81.2	0	93.5
	영주시	1	19	0	1	98.4	74.3	60.0	40.0	68.8	10.0	-	45.0	16.9	0.63	82.9	1	93.0
	영천시	1	18	0	0	98.0	66.8	54.5	63.6	58.3	27.3	-	82.6	55.7	0.30	92.7	0	91.7
	상주시	1	29	0	0	99.0	82.0	38.9	61.1	56.8	11.1	-	47.2	15.2	0.00	71.3	1	83.7
	문경시	1	27	0	0	98.7	70.8	66.7	66.7	45.5	11.1	-	74.1	0.0	0.00	84.2	1	95.8
	경산시	1	68	0	2	98.8	70.2	75.0	50.0	34.6	50.0	-	94.8	110.0	0.00	93.9	1	100.0
	군위군	0	8	1	0	-	78.5	37.5	62.5	92.3	12.5	-	60.8	0.2	0.00	76.1	1	93.4
	의성군	1	16	0	0	98.0	80.8	38.9	38.9	82.1	0.0	-	67.5	0.9	0.12	79.0	1	92.5
	청송군	0	3	1	0	-	79.3	75.0	87.5	58.8	12.5	-	61.0	0.0	0.00	83.1	1	100.0
	영양군	0	2	1	0	-	63.4	66.7	66.7	75.0	16.7	-	84.7	0.0	0.00	83.5	1	98.3
	영덕군	0	14	1	0	97.3	68.1	44.4	77.8	57.9	11.1	-	85.1	0.4	0.71	82.4	1	100.0
	청도군	0	18	0	0	96.0	72.6	55.6	77.8	47.4	11.1	-	55.9	17.9	0.00	91.4	0	88.2
	고령군	0	10	1	0	97.4	62.2	62.5	75.0	66.7	12.5	-	89.5	3.8	0.29	77.6	0	99.3
	상주군	0	18	1	0	98.3	64.6	80.0	70.0	30.4	10.0	-	62.7	0.0	0.00	41.6	1	100.0
	철곡군	1	15	0	0	98.6	76.7	87.5	75.0	12.5	50.0	-	71.4	88.2	0.23	70.9	1	91.5
	예천군	1	16	1	1	-	67.6	58.3	58.3	55.0	8.3	-	64.5	38.7	0.00	82.3	1	95.1
	봉화군	0	1	1	0	-	61.8	60.0	60.0	62.5	10.0	-	48.7	10.2	0.00	72.0	1	89.7
	울진군	1	13	1	1	97.1	69.0	80.0	80.0	44.4	10.0	-	53.3	18.6	0.31	87.2	1	95.9
	울릉군	0	1	0	1	-	46.0	33.3	100.0	22.2	0.0	-	69.6	0.0	0.00	96.0	1	100.0

경상
북도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광역 통합 구축률(%) 90% 이상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양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현장노숙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포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양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음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전체초·중 학교·수중 통학수단 제공하는 학교 비율(%)	총음면수중 비형식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적역주민 등인구중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음부도시가스 미부도시가스 중 소형PC 저장형크 응급 기구 비율 (%)	도비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비율(%) 100% 이상						
시도명	시·군명	창원시	1	83	0	8	99.7	63.8	100.0	87.5	19.0	25.0	-	79.4	84.7	0.23	97.6	1	96.8
		진주시	1	45	0	5	99.1	71.0	75.0	43.8	65.4	6.3	-	99.8	30.9	0.00	95.5	0	100.0
		통영시	1	38	0	2	94.4	74.0	28.6	100.0	43.5	14.3	-	96.8	0.0	0.29	80.6	1	89.0
		사천시	1	34	0	0	99.0	71.6	75.0	75.0	52.6	12.5	-	92.3	78.8	0.00	81.5	1	95.0
		김해시	1	135	0	5	99.3	60.9	100.0	71.4	8.5	42.9	-	78.9	86.0	0.00	95.6	0	100.0
		밀양시	1	34	1	1	98.3	63.9	63.6	63.6	58.3	18.2	-	47.8	0.0	0.16	78.5	1	81.9
		거제시	1	33	0	3	98.8	78.5	77.8	88.9	40.7	11.1	-	88.3	-	0.27	96.5	1	99.5
		양산시	1	45	0	4	98.5	61.2	80.0	80.0	7.7	40.0	-	81.8	97.3	0.57	80.5	0	100.0
		의령군	0	14	1	0	96.5	65.2	15.4	38.5	78.9	15.4	-	50.7	17.1	0.00	62.2	1	100.0
		함안군	1	17	0	0	98.3	63.5	60.0	70.0	25.9	20.0	-	81.3	56.1	0.20	75.3	1	100.0
		창녕군	1	9	0	0	98.3	67.9	50.0	50.0	64.3	28.6	-	96.0	13.6	0.00	84.6	1	98.3
		고성군	0	14	1	0	98.2	67.7	100.0	42.9	70.4	7.1	-	58.3	41.8	0.00	90.9	1	100.0
		남해군	1	15	0	0	98.1	71.6	60.0	90.0	58.3	10.0	-	58.4	0.0	0.30	89.2	1	92.3
		하동군	1	23	0	0	97.5	71.7	61.5	61.5	46.4	7.7	-	43.3	2.9	0.20	64.9	1	100.0
		산청군	0	10	1	0	97.2	70.6	54.5	63.6	70.0	27.3	-	40.6	0.0	0.15	53.1	1	99.3
		함양군	0	15	1	0	97.0	75.1	36.4	45.5	78.9	9.1	-	26.0	38.7	0.00	83.0	1	97.3
		거창군	1	16	1	1	97.7	93.7	33.3	50.0	74.1	8.3	-	33.3	59.1	0.25	92.1	0	100.0
		합천군	1	4	0	0	97.1	67.3	29.4	47.1	86.2	5.9	-	32.7	0.0	0.21	67.0	1	97.8
		제주시	1	103	0	7	99.3	75.0	85.7	100.0	16.7	28.6	-	100.0	0.0	0.17	47.9	1	79.2
		서귀포시	1	50	1	1	98.9	72.1	80.0	100.0	28.9	60.0	-	100.0	0.0	0.14	21.1	1	71.1

경상
남도

제주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시도명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창업, 사업제언, 취업컨설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체위관)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행정리 CCTV 설치 비율 (%)	행정리 1일 1회 이상 경찰순찰 실시 비율 (%)	소방출동 5분내 도착률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창업, 사업제언, 취업컨설팅,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체위관)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행정리 CCTV 설치 비율 (%)	행정리 1일 1회 이상 경찰순찰 실시 비율 (%)	소방출동 5분내 도착률 (%)
강원도	춘천시	1	3	1	1	0	1	93.3	25.7	-	20.0
	원주시	1	3	1	1	1	1	87.1	29.8	-	26.0
	강릉시	1	1	1	1	1	1	91.1	83.6	-	28.2
	삼척시	1	6	1	1	0	1	87.8	22.5	-	21.6
	홍천군	0	3	1	1	1	0	73.5	45.4	-	9.2
	횡성군	0	3	1	1	1	0	55.0	27.3	-	13.9
	영월군	0	2	0	1	1	1	72.6	100.0	-	16.7
	평창군	0	2	0	1	1	0	67.9	22.5	-	25.0
	정선군	0	1	1	1	1	1	83.2	23.1	-	12.5
	철원군	0	1	0	1	1	0	77.6	23.7	-	16.8
	화천군	0	1	0	1	1	0	66.5	34.5	-	22.0
	양구군	0	2	0	1	1	1	83.5	38.6	-	28.6
	인제군	0	1	1	1	1	1	81.6	75.0	-	21.7
	고성군	0	1	1	1	1	0	86.2	42.2	-	16.1
	양양군	0	1	1	1	1	1	61.5	37.1	-	7.1
	충청남도	충주시	1	5	1	1	1	1	92.3	51.1	-
재천시		0	3	1	1	0	1	94.8	54.8	-	34.3
청주시		1	9	1	1	1	1	92.2	27.7	-	36.0
보은군		1	2	1	1	0	1	70.9	44.9	-	22.4
유성군		1	2	1	1	0	1	86.2	40.9	-	19.4
영동군		0	5	1	1	1	1	67.1	100.0	-	22.9
진천군		0	1	1	1	0	1	75.3	37.4	-	24.0
괴산군		0	2	1	1	0	1	47.9	84.4	-	15.4
음성군		0	1	0	1	1	0	51.9	66.2	-	29.7
단양군		1	9	1	1	1	1	73.2	98.7	-	16.7
증평군	0	2	1	1	0	1	93.0	93.5	-	36.8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상담원)고용여부	시군내창업및사업체운영취업지원센터(상담원)고용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화회관)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시도명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상담원)고용여부	시군내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상담원)고용여부	시군내창업및사업체운영취업지원센터(상담원)고용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화회관)	하수도 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행정리 CCTV 설치 비율 (%)	행정리 1일 1회 이상 순찰 순찰 실시 비율 (%)	소방출동 5분내 도착률 (%)
아산시	1	1	0	0	1	0	1	83.9	100.0	-	23.0
순천시	1	2	1	0	1	0	1	90.7	18.8	-	33.3
나주시	1	5	1	0	1	0	1	66.9	16.1	-	13.7
광양시	0	1	1	1	1	1	1	92.7	17.2	-	45.6
담양군	1	1	1	1	1	1	1	73.2	62.5	-	22.4
곡성군	0	0	1	1	1	1	1	74.7	47.1	-	23.1
구례군	1	2	1	0	1	0	1	88.9	23.7	-	19.4
고흥군	1	1	1	0	1	0	1	52.5	100.0	-	8.7
보성군	0	0	0	0	1	0	1	57.0	29.1	-	17.7
화순군	0	2	0	1	1	1	0	79.3	16.3	-	27.7
장흥군	1	1	1	1	1	1	1	63.5	82.1	-	29.4
강진군	0	0	1	1	1	1	1	56.9	100.0	-	20.8
해남군	0	1	1	0	1	0	1	50.2	96.7	-	25.4
영암군	0	1	1	1	1	1	0	73.6	18.2	-	21.5
무안군	0	0	1	0	1	0	1	62.2	7.2	-	18.1
함평군	0	0	0	0	1	0	0	58.8	13.6	-	15.5
영광군	0	1	1	1	1	1	1	55.3	33.2	-	19.0
장성군	0	1	1	1	1	1	1	57.4	34.4	-	16.9
완도군	0	1	1	0	1	0	1	51.5	20.6	-	38.6
진도군	0	0	0	0	1	1	1	59.9	18.2	-	40.6
신안군	0	0	0	0	1	1	0	31.5	4.4	-	14.3

전라
남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소방활동 소방활동5분내도 차비율(%) 55%이상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시도명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시군내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창업, 시업체 운영, 취업 지원사업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원 운영 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활동
시군명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시군내창업보육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창업, 시업체 운영, 취업 지원사업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역문화원 운영 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활동
포항시	1	1	1	1	1	1	1	80.5	31.8	-	21.7
경주시	1	3	1	1	0	1	1	90.4	26.4	-	15.2
김천시	1	6	1	1	1	1	1	76.8	40.5	-	18.9
안동시	1	1	0	1	1	1	1	78.2	67.5	-	8.7
구미시	1	2	1	1	1	1	1	98.0	53.5	-	18.0
영주시	1	4	1	1	1	1	1	86.2	43.0	-	28.7
영천시	0	3	1	1	0	1	1	71.8	56.0	-	8.1
상주시	1	0	0	1	1	1	1	67.6	19.5	-	20.5
문경시	1	0	1	1	0	1	1	82.1	43.1	-	18.9
경산시	1	2	0	1	0	1	1	91.3	48.7	-	18.6
군위군	0	0	0	1	0	1	1	38.0	100.0	-	2.8
의성군	0	1	1	1	1	1	1	44.2	45.8	-	14.5
청송군	0	0	0	1	0	1	1	42.7	74.3	-	4.5
영양군	0	1	0	1	0	1	1	54.4	49.6	-	22.7
영덕군	0	0	1	1	0	1	1	74.1	75.5	-	17.0
청도군	0	0	0	1	0	0	0	54.6	40.1	-	10.2
고령군	0	0	0	1	1	1	1	59.7	59.5	-	14.5
성주군	0	0	1	1	1	1	1	36.0	100.0	-	12.5
칠곡군	1	8	1	1	1	1	1	72.1	29.3	-	13.7
예천군	1	5	1	1	0	0	0	48.8	45.7	-	15.4
봉화군	0	2	0	1	0	0	0	61.8	92.4	-	4.2
울진군	0	1	0	1	1	1	1	60.0	49.7	-	10.2
울릉군	0	0	0	1	0	1	1	1.4	28.0	-	20.0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시도명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 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상인, 사업체운영, 취업지원사업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행정리 CCTV설치 비율 (%)	행정리 1일 1회 이상 경찰순찰 실시 비율 (%)	소방출동 5분내도 대처율 (%)
	시군내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유무	시군내창업보육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신당 인력)고용여부	월 1회 이상 상인, 사업체운영, 취업지원사업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방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보급률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	행정리 CCTV설치 비율 (%)	행정리 1일 1회 이상 경찰순찰 실시 비율 (%)	소방출동 5분내도 대처율 (%)
시군명	창원시	1	5	1	0	1	96.2	25.3	-	34.6
	진주시	1	1	1	0	1	91.9	16.0	-	50.2
	통영시	0	1	1	0	1	82.2	18.4	-	47.5
	사천시	0	1	1	1	1	92.3	25.4	-	39.5
	김해시	1	13	1	0	1	95.5	23.6	-	44.5
	밀양시	0	1	1	0	1	72.1	29.4	-	51.6
	거제시	0	4	1	1	1	82.6	60.0	-	51.2
	양산시	1	6	1	0	1	96.6	27.2	-	43.2
	의령군	0	1	1	0	1	62.8	13.4	-	36.9
	함안군	0	2	1	0	1	52.2	49.8	-	39.2
	창녕군	0	2	1	0	1	67.7	29.8	-	39.1
	고성군	0	1	0	1	1	59.2	40.7	-	42.3
	남해군	0	1	0	0	1	73.3	36.9	-	42.9
	하동군	0	1	1	0	1	66.5	100.0	-	45.3
	산청군	0	1	1	1	1	66.1	14.0	-	51.7
	함양군	1	2	1	1	1	75.0	14.3	-	54.5
	거창군	1	1	1	1	1	81.0	95.9	-	35.7
	합천군	0	1	0	0	1	57.2	35.9	-	50.0
	제주시	1	7	1	0	1	91.0	45.8	-	27.3
제주도	서귀포시	1	0	1	0	1	92.6	52.6	-	19.6

경상남도

참고문헌

- 김광선·정도채·민경찬·유은영.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채종현·윤병석.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엄진영·유은영·류재현.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김광선·박주영. 2009.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부 -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2017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조 근 식 부 연구 위원
강 종 원 연 구 위 원

차 례

제1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91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92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95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96

제2장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1. 교육여건 99
2. 정주생활기반 107
3. 경제활동·일자리 109
4. 문화·여가 112

제3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 수범사례

1.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115
2. 강원교육희망재단 역할 및 주요 사업 116

표 차례

제1장

-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95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98

제2장

-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7) 102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을 104
 <표 2-3> 교육여건 - 평생학습 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106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108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활성화 111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113
 <표 2-7> 2017년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률 .. 114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강원교육희망재단 역할	118
<그림 3-2> 강원교육희망재단 주요 사업	118

제 1 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선정¹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기본방침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한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지표 선정
 - 국가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이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강원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선택 항목의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의 달성률 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개선 사업과 연계성 강화 도모
-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강원도가 추구하고자하는 장기비전을 기본으로 하고자 함.
 - 강원도는 2011년 민선5기 발전 전략과 실천 의지를 담은 도정구호와 방침을 제시하였음. 도정구호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이며, 도정방침은 “인간의 존엄, 지역의 가치, 평화와 번영”으로 정함.

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97~103. 제작성

- 이에 따라 강원도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을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역시 강원도 도정구호와 도정방침을 기본으로 하고자 함.

○ 강원도 농어촌의 특성인 산간지역의 특성 반영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항목은 도서·벽지지역을 위한 여객선 운항 등 강원도 산간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음.
- 농어촌 지역 간 물리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도만의 서비스기준을 선택 항목으로 추가 발굴
- 향후 강원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기준 마련

2. 선택 항목 지표 선정의 배경

2.1. 교육 부문

○ 학교 교육 부문

- 정부는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주요내용으로는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율을 확대, 학생수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 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등임.
- 강원도는 지방 재정이 열악하여 정부 정책대로 진행될 경우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황폐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 특히 학생수 60명을 기준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할 경우, 강원도는 2015년 기준 전체 학교 348개교 중 210개교(54.7%)가 폐교 대상임.
-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음. 학교의 폐교는 지역 공동

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생 유출 방지책이 필요한 상황임.

○ 평생교육 부문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함.
- 특히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100세 시대에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권 내에서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농어촌 교통의 부족, 인적자원의 부족 등으로 평생학습 기회조차 불리한 상황임. 따라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학습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코자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원도 내 시·군의 경우 재정이 열악하여 행복학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 단위의 센터 설치·운영은 더욱 어려움.
- 따라서 시·군별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의 설치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우선 시·군에 1개소 이상 확대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

2.2.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농림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는 다양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며, 풍부한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

고 있어 6차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

- 강원도 농어업이 1차 산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6차 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만의 특성과 가치를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하는 상황임.
 -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높아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되는 지역임. 식품 생산의 형태는 농가형 생산에서 품목별 또는 마을단위 조직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음.
 - 최근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는 농림수산물의 1차 생산과 2차 가공을 접목하고 체험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어가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유통·관광 등의 측면에서는 미약한 상태임.
- 강원도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서는 강원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산업화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함.
- 농림 생산물의 2차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차 가공산업은 마을단위, 광역단위의 단지 및 거점화를 통한 체계적 육성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3차 산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효산업은 시식, 음식점, 체험, 유통, 관광 등과 연계하면서 6차 산업화 추진이 필요함.
- 강원도에서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농산업화, 농상공연대, 향토산업 등의 농촌관련 부가가치 제고 사업들 중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지정 상황을 통해 강원도 내 농촌경제 활성화를 분석함.
- 또한 강원도는 기업형 새농촌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마들단위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지정 외에 기업형 새농촌 지정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상황을 통해서도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분석함.

2.3. 문화·여가 부문

-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하고 영화 상영관이 없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음.
- 지역주민들에게 영화 상영을 통해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상영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이 아니라 복합상영관 설치를 통해 최신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기존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최신 개봉영화 상영이 가능한 복합상영관이 최소 1개 이상 설치되는 지역 상황을 선정함.

3. 선택 항목 지표 선정

〈표 1-1〉 강원도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부문	선택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1. 교육여건	1)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강원에듀버스 운영 - 시·군에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를 확대한다.
	2)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배치, 행복학습센터설치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정주생활 기반	3)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3. 경제활동·일자리	4)농촌경제활성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4. 문화·여가	5)문화격차 해소	모든 시·군에 영화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4.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기존 지표들 중 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문화격차 해소와 관련된 지표는 유지하되, 그 외 지표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함.
- 2016년 교육여건 중 희망만들기 학교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변경된 지표를 유지
 - 기존(2015): (희망만들기 학교 / 대상학교) × 100
 - 변경(2016):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학교 / 대상학교) × 100
 - 변경사유
 - * 기존 시범사업으로 학교별 운영되던 희망만들기 학교가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운영의 형식으로 전환되면서 지표의 변경사유 발생
 - *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은 1학교 1개 교육과정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존재
- 2016년 교육여건 중 강원에듀버스 지표를 추가하였으며, 2017년 변경된 지표를 유지
 - 기존(2015):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추가(2016):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 100
 - 추가사유
 - *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에듀버스가 2015년말 기준 강원도 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되어 운영
 - * 이에 따라 기존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새로운 목표치의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
 - * 따라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대비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함.

- 2016년 ‘3. 경제활동·일자리 4) 6차산업화’ 지표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변경된 지표의 산출방식은 유지하나, 지표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였음.
- 2016년부터 강원도는 ‘새농어촌 건설 운동’을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표 산출 공식의 새농어촌 건설 운동 마을을 기업형 새농촌 마을로 변경하였음.
 - 기존(2015): {현재년도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전년도 새농어촌 건설 운동 마을 수 + 전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100
 - 변경(2016):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²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100
 - 변경 사유
 - * 분모인 새농어촌 우수 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증가율이 분자인 6차산업화인증사업자 증가율보다 높아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 따라서 기존 지표를 3개 부분 합계의 증가율로 변경하여 제시

2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 = 6차산업화인증사업자수 + 기업형 새농촌마을 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수

※ 새농어촌 건설 운동은 기업형 새농촌으로 명칭 변경

〈표 1-2〉 강원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교육여건	1)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희망만들기 교육과정운영 학교 / 대상학교) × 100	교육청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협조 자료
		(강원에듀버스 운영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교육청 : 강원에듀버스 사업	협조 자료
		(강원에듀버스 지원학교 수 / 강원도 초중고등학교 수) × 100	교육청 : 강원에듀버스 사업	협조 자료
	2)평생교육여건 기반조성	시·군별로 평생교육도시(지정=1, 미지정 0), 평생교육사(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센터(설치지원=1, 미지원=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협조 자료
2. 정주생활기반	3)주거환경개선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교체 주택수 /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 주택수) × 100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 지자체 조사	협조 자료
3. 경제활동·일자리	4)농촌경제활성화	(현재년도 해당마을 수-전년도 해당마을 수) / 전년도 해당마을 수 × 100	강원농촌융복합지원센터	협조 자료
4. 문화·여가	5)문화격차 해소	(영화관 설립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지역균형발전사업	협조 자료

제 2 장

강원도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1. 교육여건

1.1.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체육 등), 지역사회와 소통, 인성교육·지역사회와 학교의 만남 등을 위해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에 맞는 음악, 체육, 문화 등 다양한 특성화 교육 병행을 통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추진하는 강원도교육지원청 자체 사업임.

- 강원도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강원도는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초·중학교 수가 255개교

로 전체 초·중학교(549개교) 수의 46.45%임.

-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사업”의 통폐합 대상³ 기준 학생 수입.
 - 강원도는 2015년부터 통폐합 대상학교 259개교를 대상으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 2015년 당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중학교는 총 68개교로 이 중 희망학교 25개교, 선도학교 43개교였음.
 -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작은학교의 선도모델을 육성 및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희망학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컨설팅으로 2015년 이후 모든 작은학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집중 컨설팅 대상학교임.
 - 선도학교는 희망학교 미지정 학교 중, 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시설을 갖춘 학교로 1~2가지의 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로 최대한의 성과를 볼 수 있는 학교임.
-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희망학교와 선도학교는 2015년 본격 운영하면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학교,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세분화되어 확대 운영되었음.
-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이행실태는 기존 희망학교 및 선도학교에서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
 - 특성화 교육과정: 작은학교의 선도모델 육성 및 확산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 및 일반화
 - 공동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과정 시범운영 및 일반화

3 2015년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기준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학교는 2016년까지 60명 이하 초·중학교였으나, 2017년부터 자체적으로 적용 대상학교를 1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하였음.
 - 이에 따라 대상학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대상 학교의 수와 실제 운영 학교의 수가 증가하였음.
 - 기존 60명 기준에 따르면 대상학교 수가 255개교이나 대상학교를 100명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대상학교 수가 319개교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표를 산출하여 측정함.
 -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중복 운영되는 사례가 존재하나, 1개교 1개 교육과정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 현황을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319개 대상학교 중 317개 학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대상학교 중 교육과정 도입율 99.32%를 달성하였음⁴.
 - 특성화 교육과정은 319개 대상학교 중 186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은 319개 대상학교 중 80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공통 교육과정은 319개 대상학교 중 51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 강원도 내 시·군별로는 원주시, 속초시·양양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철원군, 양구군, 고성군이 100% 이상⁵을 달성하였으며, 동해시는 50.00%로 도입율이 가장 낮음.
 - 평균 도입율 99.32%보다 낮은 지역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임.

4 100% 이상을 도입한 시·군은 강원도 평균 도입율을 계산할 때, 100%로 제한하여 계산하였음.

5 100% 이상을 도입한 지역은 대상학교 모두가 최소한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1개 대상학교가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임.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1〉 교육여건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추진현황(2017)

구분	대상학교			희망만들기 학교									도입율 (%)	
	합계	초	중	합계	특성화 교육과정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공동 교육과정			
					계	초	중	계	초	중	계	초		중
강원도	319	238	81	317	186	144	42	80	54	26	51	35	16	99.32
춘천시	20	13	7	18	12	7	5	6	4	2	0	0	0	90.00
원주시	24	18	6	27	13	10	3	10	7	3	4	4	0	112.50
강릉시	21	18	3	20	10	10	0	6	4	2	4	4	0	95.24
속초시 양양군	23	20	3	28	14	12	2	4	4	0	10	10	0	121.74
동해시	4	3	1	2	1	1	0	1	1	0	0	0	0	50.00
태백시	10	7	3	11	10	7	3	1	1	0	0	0	0	110.00
삼척시	26	16	10	26	14	11	3	6	3	3	6	3	3	100.00
홍천군	34	25	9	30	19	15	4	7	5	2	4	3	1	88.24
횡성군	23	16	7	20	18	13	5	2	0	2	0	0	0	86.96
영월군	25	16	9	25	14	8	6	4	1	3	7	2	5	100.00
평창군	18	14	4	16	11	10	1	5	3	2	0	0	0	88.89
정선군	23	16	7	22	14	11	3	5	2	3	3	0	3	95.65
철원군	10	10	0	16	8	7	1	3	3	0	5	5	0	160.00
화천군	15	13	2	13	6	6	0	7	5	2	0	0	0	86.67
양구군	12	8	4	14	10	6	4	2	2	0	2	0	2	116.67
인제군	15	12	3	11	5	4	1	4	3	1	2	2	0	73.33
고성군	16	13	3	18	7	6	1	7	6	1	4	2	2	112.50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 강원에듀버스 운영

- 강원도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사업 중 강원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 강원에듀버스는 각 학교별로 관리하던 학교버스를 교육지원청이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이 노선별로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차량 공동 활용 제도임.

- 2014년 강원에듀버스가 운영된 지역은 총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으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등이 운영하였으나, 2015년부터 18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임.
 - 이에 따라 기존 제시한 에듀버스 운영 시·군 확대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음.
 - 따라서 기존의 선택항목 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의 추가적 제시가 요구됨.

- 이에 따라 2016년 선택 항목 점검·평가에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의 비율을 새로운 지표로 제시하였음.
 - 에듀버스지원율(%) = $\frac{\text{지원학교수}}{\text{초·중·고등학교수}} \times 100$

- 에듀버스 운영 실적에는 병설유치원 운영 실적이 별도의 실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 예를 들어, A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대상 에듀버스와 병설 유치원생 대상 에듀버스가 모두 있으면 2개교 지원 실적으로 계산됨.
 - 따라서 시·군에 따라 병설유치원 대상 운영 실적이 많은 경우에는 지원 학교 수가 대상학교 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음.

- 2017년 현재 강원도 전체 673개 초·중·고등학교 중 에듀버스 지원학교는 367개교로 지원율 54.53%를 달성함.
 - 에듀버스 지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군(137.14%)이며, 다음으로 화천군(95.65%), 정선군(91.43%), 양구군(84.21%), 평창군(81.25%), 철원군(80.77%) 순임.
 - 본 자료는 강원도 교육지원청 자료로 속초시와 양양군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표 2-2〉 교육여건 - 강원에듀버스 지원율

구분	2016				2017			
	도입	초중고 학교수	지원 학교수	지원율	도입	초중고 학교수	지원 학교수	지원율
강원도	18	675	327	48.44	18	673	367	54.53
춘천시	1	77	18	23.38	1	78	21	26.92
원주시	1	88	23	26.14	1	89	24	26.97
강릉시	1	62	19	30.65	1	62	23	37.10
속초시·양양군	2	44	20	45.45	2	44	20	45.45
동해시	1	28	4	14.29	1	28	4	14.29
태백시	1	25	6	24.00	1	25	6	24.00
삼척시	1	43	27	62.79	1	43	26	60.47
홍천군	1	49	29	59.18	1	47	29	61.70
횡성군	1	36	22	61.11	1	36	23	63.89
영월군	1	36	33	91.67	1	35	48	137.14
평창군	1	32	26	81.25	1	32	26	81.25
정선군	1	35	31	88.57	1	35	32	91.43
철원군	1	26	18	69.23	1	26	21	80.77
화천군	1	23	9	39.13	1	23	22	95.65
양구군	1	19	16	84.21	1	19	16	84.21
인제군	1	29	20	68.97	1	28	19	67.86
고성군	1	23	6	26.09	1	23	7	30.43

자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홈페이지 및 강원도 교육지원청 내부자료

1.2. 평생 교육 여건 기반 조성

- 고령화, 조기은퇴 등으로 제2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강원도 역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평생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음.

- 강원도 내 평생학습 도시는 2017년 현재 10개 시·군임.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등 1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음.

- 2015년까지 강원도 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9개 시·군이었으나, 2016년 영월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새로이 지정되어 10개 시·군으로 증가하였음.
 - 2017년 강원도에 추가로 지정된 평생학습 도시는 없어, 2016년과 동일한 10개 시·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있음.

- 2017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으로 2015년 10개 시·군보다 3개 시·군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과 동일함.
 - 2016년 평생교육사가 새로 배치된 지역은 춘천시, 태백시, 영월군임.

- 2017년 현재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군은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임.

- 강원도의 행복학습센터는 2017년 현재 12개 시·군으로 2016년 대비 6개가 증가하였음.
 - 2017년 현재 1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6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은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2017년 6개 시·군(춘천시, 홍천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이 추가로 설치되었음.

〈표 2-3〉 교육여건 - 평생학습 도시 및 행복학습센터

구분	2016년			2017년		
	평생학습 도시 (지정=1, 미지정=0)	평생교육사 배치 (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 센터 (자원=1, 미자원=0)	평생학습 도시 (지정=1, 미지정=0)	평생교육사 배치 (배치=1, 미배치=0)	행복학습 센터 (자원=1, 미자원=0)
강원도	10	13	6	10	13	12
춘천시	0	1	0	0	1	1
원주시	0	0	0	0	0	0
강릉시	1	1	1	1	1	1
동해시	1	1	1	1	1	1
태백시	0	1	1	0	1	1
속초시	0	0	0	0	0	0
삼척시	1	1	1	1	1	1
홍천군	1	1	0	1	1	1
횡성군	1	1	0	1	1	0
영월군	1	1	0	1	1	1
평창군	1	1	1	1	1	1
정선군	0	1	0	0	1	1
철원군	1	1	0	1	1	1
화천군	1	1	0	1	1	1
양구군	0	0	0	0	0	0
인제군	1	1	1	1	1	1
고성군	0	0	0	0	0	0
양양군	0	0	0	0	0	0

자료: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2. 정주생활기반

■ 주거환경개선사업

-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환경과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석면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함.
- 2011년 시범사업 당시 강원도의 슬레이트 주택은 49,908동으로 파악되었으나, 2017년 2월 재조사를 통해 강원도 슬레이트 주택은 50,279동으로 증가하였음.
 - 양구군이 기존 479동에서 850동으로 변경되었음.
- 2017년 현재 전체 50,279동 중에서 14,124동을 처리하였으며 잔여 슬레이트 주택이 36,155동 남아 있는 상황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가 가장 많이 된 지역은 홍천군으로 1,349동이 철거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태백시가 1,228동, 춘천시가 1,189동, 횡성군이 1,028동, 영월군이 1,000동 순임.
- 2017년 재조사된 슬레이트 주택 수(50,279동)를 기준으로 2017년 현재 강원도 내 슬레이트 주택 교체율은 28.09%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횡성군(78.23%)과 양구군(70.94%)이며, 다음으로 춘천시(61.83%), 홍천군(60.17%), 화천군(57.38%), 태백시(46.25%), 철원군(41.45%) 순임.
- 슬레이트 주택 철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해시(15.32%), 삼척시(15.15%), 원주시(15.05%), 정선군(14.68%)임.

〈표 2-4〉 정주생활기반 - 석면슬레이트

구분	슬레이트 주택수 (2011)	2016			슬레이트 주택수 (2017)	2017		
		처리수	잔여 슬레이트 주택수	달성률 (%)		처리수	잔여 슬레이트 주택수	달성률 (%)
강원도	49,908	10,342	39,566	20.72	50,279	14,124	36,155	28.09
춘천시	1,923	826	1,097	42.95	1,923	1,189	734	61.83
원주시	4,446	544	3,902	12.24	4,446	669	3,777	15.05
강릉시	5,837	672	5,165	11.51	5,837	989	4,848	16.94
동해시	3,302	389	2,913	11.78	3,302	506	2,796	15.32
태백시	2,655	855	1,800	32.20	2,655	1,228	1,427	46.25
속초시	1,862	306	1,556	16.43	1,862	391	1,471	21.00
삼척시	5,076	593	4,483	11.68	5,076	769	4,307	15.15
홍천군	2,242	1,032	1,210	46.03	2,242	1,349	893	60.17
횡성군	1,314	605	709	46.04	1,314	1,028	286	78.23
영월군	3,857	747	3,110	19.37	3,857	1,000	2,857	25.93
평창군	2,892	463	2,429	16.01	2,892	583	2,309	20.16
정선군	3,775	445	3,330	11.79	3,775	554	3,221	14.68
철원군	1,474	441	1,033	29.92	1,474	611	863	41.45
화천군	969	465	504	47.99	969	556	413	57.38
양구군	479	448	31	93.53	850	603	247	70.94
인제군	2,547	447	2,100	17.55	2,547	635	1,912	24.93
고성군	3,694	719	2,975	19.46	3,694	961	2,733	26.02
양양군	1,564	345	1,219	22.06	1,564	503	1,061	32.16

주: 강원도는 2017년 2월 석면슬레이트 현황을 재조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구군이 기존 479동에서 850동으로 변경되었음. 2017년은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표를 산출하였음.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3.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 활성화(기존 '6차산업화 활성화'에서 변경)

- 기존 지표(2015년)는 전년도의 새농어촌 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비 현재년도의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비율을 제시하였음.
 - 그러나 새농어촌 우수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되면서 향후 해당 마을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르면 분모의 증가 속도가 분자의 증가 속도를 초월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음.
 - 새농어촌 우수마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모두 지정과 지정 탈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변화율의 평균을 측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새농어촌 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의 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지표로 새로이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지표는 새농어촌 우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합계의 증가율로 산정함.

- 단, 2016년부터 새농어촌 우수마을이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되어 추진됨에 따라 2017년부터 지표의 구성 요소인 새농어촌 우수마을 수를 기업형 새농촌 마을 수로 변경하여 산출하였음.
 - 농촌경제 활성화 증가율의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음
$$\text{증가율} = \frac{\text{현재년도 해당마을수} - \text{전년도 해당마을수}}{\text{전년도 해당마을수}} \times 100$$

- 강원도는 자체 농촌개발사업으로 1999년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기업형 새농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선정된 강원도 기업형 새농촌 마을은 145개이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6개 마을임. 또한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수는 144개임.
- 2017년 현재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이 가장 많은 지역은 횡성군으로 16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다음으로 홍천군 15개 마을, 평창군 13개 마을, 춘천시 12개 마을, 정선군과 양양군 11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 2017년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86개 마을이며, 가장 많은 지역은 평창군과 인제군으로 각각 20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다음으로 춘천시 17개 마을, 강릉시 16개 마을, 횡성군 15개 마을이 지정되었음.
- 2017년 강원도의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는 144개소로 평창군이 16개소로 가장 많으며, 횡성군과 영월군이 각 15개소, 원주시가 14개소, 홍천군이 13개소로 지정되었음.
- 강원도는 2016년 대비 기업형 새농촌 지정마을 75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소,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28개소가 증가하였음.
- 강원도는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29.08%임.
 - 농촌경제활성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해시(66.67%)이며, 다음으로 고성군(50.00%), 홍천군(40.74%), 평창군(40.00%) 순임.
- 2017년 현재 강원도 전 지역이 2016년 대비 농촌경제활성화 지표가 증가하였으며, 양구군이 5.88%로 증가율이 가장 낮음.

〈표 2-5〉 경제활동·일자리 - 농촌경제활성화

구분	2016				2017				증가율 (%)
	계	기업형새 농촌마을	농촌체험 휴양 마을	6차산업화 인증 사업자	계	기업형새 농촌마을	농촌체험 휴양 마을	6차산업화 인증 사업자	
강원도	368	70	182	116	475	145	186	144	29.08
춘천시	32	7	17	8	38	12	17	9	18.75
원주시	27	6	10	11	34	10	10	14	25.93
강릉시	21	4	12	5	28	7	16	5	33.33
동해시	3	1	2	0	5	3	2	0	66.67
태백시	6	2	2	2	8	3	2	3	33.33
속초시	6	1	3	2	7	2	3	2	16.67
삼척시	17	4	10	3	23	9	10	4	35.29
홍천군	27	7	12	8	38	15	10	13	40.74
횡성군	37	7	15	15	46	16	15	15	24.32
영월군	24	4	9	11	32	8	9	15	33.33
평창군	35	5	19	11	49	13	20	16	40.00
정선군	21	6	10	5	28	11	10	7	33.33
철원군	17	3	11	3	21	6	11	4	23.53
화천군	16	3	7	6	21	6	7	8	31.25
양구군	17	1	8	8	18	2	8	8	5.88
인제군	32	3	20	9	38	8	20	10	18.75
고성군	6	1	2	3	9	3	2	4	50.00
양양군	24	5	13	6	32	11	14	7	33.33

자료: 강원도 내부자료

4. 문화·여가

■ 문화격차 해소

- 도농복합시 및 시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도 농어촌지역은 개봉관이 없어 최신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시 지역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음.
 - 이와 같은 번거로움과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 영화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현재 강원도 내에는 총 12개 시·군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및 작은 영화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으나, 시 지역과 도농복합시를 제외하고는 6개의 농어촌 지역에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음.
 -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시 지역 대형 영화관과 계약을 통해 문화복지회관 등을 활용하여 주말에 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나 영화 상영시설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음.
 - 2017년 현재 군 지역 중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에 작은 영화관이 설치되어 있음.
- 강원도는 현재까지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 외에 횡성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에서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 중임.
- 횡성군은 2017년 12월 중 작은 영화관 준공 예정이며, 2017년 12월 현재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운영자 선정 중임.
- 인제군은 2017년 12월까지 수탁운영자를 선정하고 2018년 2월 개관 예정이며, 양구군 역시 2017년 12월 현재 수탁운영자 선정 중임.

〈표 2-6〉 문화·여가 - 영화관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설치=1, 미설치 0)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설치=1, 미설치 0)	영화관 설치 운영시·군(설치=1, 미설치 0)
강원도	8	11	12
춘천시	1	1	1
원주시	1	1	1
강릉시	1	1	1
동해시	1	1	1
태백시	0	0	0
속초시	1	1	1
삼척시	0	1	1
홍천군	1	1	1
횡성군	0	0	0
영월군	1	1	1
평창군	0	1	1
정선군	0	0	1
철원군	0	1	1
화천군	1	1	1
양구군	0	0	0
인제군	0	0	0
고성군	0	0	0
양양군	0	0	0

〈표 2-7〉 2017년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목표치 달성률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2017년 목표치	2017년 달성	
교육여건	소규모 농어촌 학교 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81%	99.32%	
		강원 에듀 버스 운영	사군별 도입	100% (달성)	100%
			전체학교 대비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	50%	54.53%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사군별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 학습센터 설치	-도시 : 10 -교육사 : 11 -센터 : 8	-도시 : 10 -교육사 : 13 -센터 : 12	
정주생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 ⁶	22%	28.09%	
경제활동 일자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업형새농촌, 농촌체험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전년대비 8% 증가	전년대비 29.08% 증가	
문화여가	문화격차 해소	사군별 영화관 설차운영	10개소	12개소	

6 개량 대상 석면 슬레이트 총량은 2013년 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수치에서 2017년 2월 재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였음.

제 3 장

강원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 수범사례: 강원교육희망재단 사례

1.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1.1. 사업목적

-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강화로 학생이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 육성
- 마을과 지역의 상생 토대 마련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

1.2. 설립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07호, 2014.3.24. 제정, 2015.9.25. 시행)
 - 강원교육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공포

(강원도조례 제4062호, 2016.9.30., 제정)

○ 설립내용 :

- 기금 규모 : 300억 원(2026년도까지 단계별 조성)
- 재원 : 교육청, 도청, 시·군청 출연금+개인, 기업체, 기관, 단체의 기부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
- 성격 :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2017년 4월 12일 출범

1.2. 사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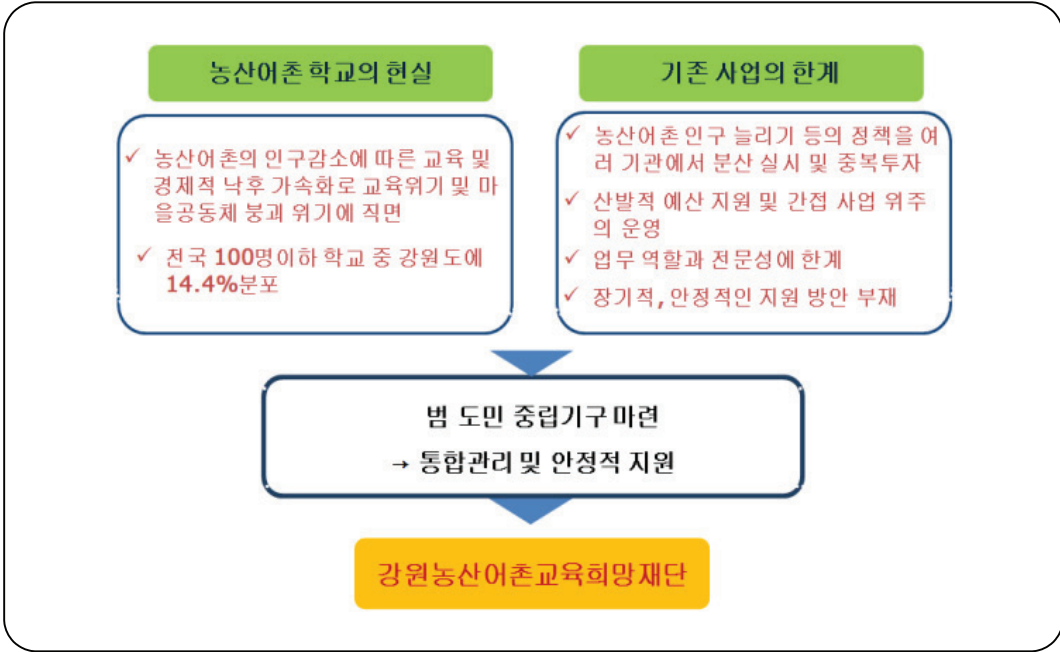
-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2월>
- 재단설립 인가 신청 및 등기 완료<3월>
- 「강원교육희망재단」 출범<4.12>
- 시도교육청과 연계, ‘전국 작은학교 포럼’ 개최<7.7>
- ‘작은학교의 날 선포식’ 개최<11.11>

2. 강원교육희망재단 역할 및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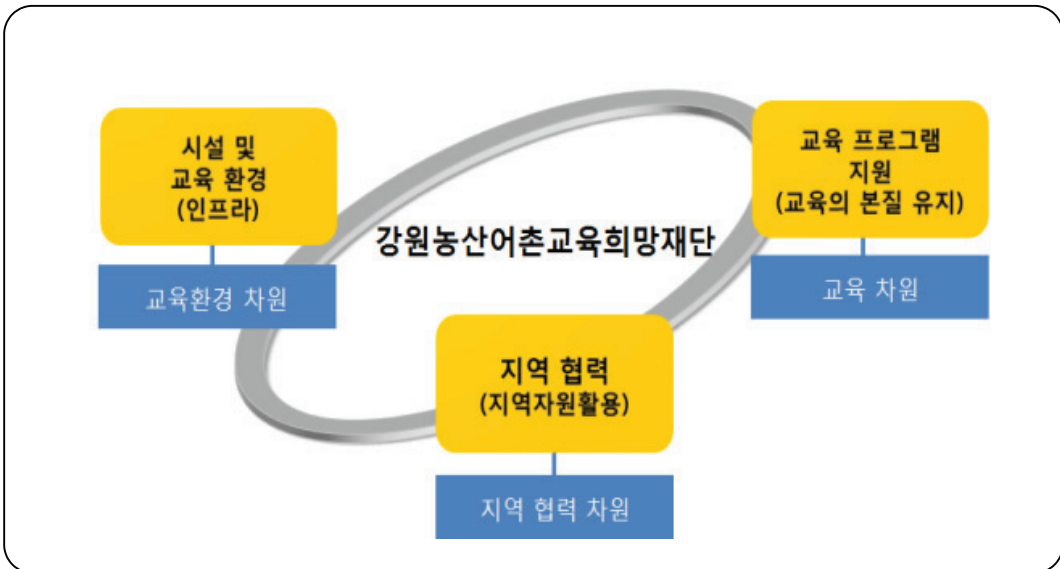
- 강원도는 농산어촌의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및 경제적 낙후 가속화로 교육의 위기 및 마을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전국 100명 이하 학교 중 강원도가 14.4%를 차지
- 기존 사업들은 농산어촌 인구 늘리기 등의 정책을 여러 부처 및 기관에서 분산 실시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산발적인 예산 지원과 간접사업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며, 업무의 역할과 전문성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도 교육의 전반적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사업 통합 관리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범도민적 중립기구인 강원농산어촌교육희망재단을 설립하였음.
- 해당 재단은 교육환경, 교육, 지역협력의 차원에서 강원도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 교육환경 차원: 시설 및 교육인프라
 - 교육 차원: 교육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교육의 본질 유지
 - 지역협력 차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협력의 유도
- 강원교육희망재단의 역할 및 주요사업 도식

〈그림 3-1〉 강원교육희망재단 역할



〈그림 3-2〉 강원교육희망재단 주요 사업



2017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원 광 희 수석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125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현황 126
3. 3차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평가 결과 129
4. 3차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평가 기준 134

제2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143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149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162
4.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166

제3장 정책제언

1. 정책적 제언 177
2.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안) 178

제4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우수사례

1. 증평군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젝트 183

표 차례

제1장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135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136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137
<표 1-4> 충청북도 선택 항목 최종 지표	139
<표 1-5>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	141

제2장

<표 2-1> 최종 지표 선정	146
<표 2-2>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서비스기준	148
<표 2-3>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151
<표 2-4>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 마을 현황	153
<표 2-5>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154
<표 2-6>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156
<표 2-7> 시·군별 노인 자살률 현황	158
<표 2-8> 시·군별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락망	159
<표 2-9>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161
<표 2-10> 석면 슬레이트 개선 현황	162
<표 2-1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163
<표 2-12> 마을기업 현황	164
<표 2-13> 노인 자살비율 현황	164
<표 2-14> HD급 CCTV 현황	165
<표 2-15>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166
<표 2-16>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168

<표 2-17> 주거환경 비율	169
<표 2-18> 시·군별 전체 마을 수 현황	170
<표 2-19>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171
<표 2-20>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172
<표 2-21> 마을기업 비율	172
<표 2-22>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173
<표 2-23> 노인자살률 비율	174
<표 2-24> 시·군별 CCTV 현황	175
<표 2-25> HD급 CCTV 비율	176

제 1 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¹

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배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지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혁신 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을 둘러싼 이러한 위기 요인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량의 감소로 이어져 농어촌 주민이 누려야 하는 기초생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결과로 나타남. 결국 이러한 결과는 도·농간 발전도의 격차와 삶의 질 서비스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임.
 - 특히, 농어촌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의 변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획일적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됨.
 - 공급자 관점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체감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131~150. 재작성

-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주민들이 만족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하여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서비스 공급자인 공공 부문의 정책 달성 목표 설정 및 성과 판단의 근거 마련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근거로 삼을 만한 정책 목표 기준을 제시함.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현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함.
 -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국가의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서비스기준은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임.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혹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함.
 -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도 계획,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각 부처의 장관과 지자체장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규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책 추진의 토대로 활용하고 기준 이행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3농 혁신정책’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충청북도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방서가 없는 2개 군에 소방서를 설치하였으며, 도정 정책 방향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설정하는 등 농어촌서비스기준 충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세칙’에 의거해 2011년부터 범부처 협의체인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여 운영 중임.
 - 관련 전문가 및 농어촌 주민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과 성과 지표, 평가 결과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2012년 4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함.
- 2013년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8개 부문 32개 항목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임.
 - 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 후 시행 과정에서 현실성이 낮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기준을 조정함.
- 농어촌 범죄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부문에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응급부문의 ‘도난방지’, ‘경찰서비스’, ‘소방서비스’ 등 항목을 안전부문으로 이관 및 항목 명칭을 변경함.

- 교육부문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항목과 보건 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은 세부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안전부문으로 이관된 ‘도난방지’ 항목은 ‘방법설비’로 항목명칭 및 세부내용을 일부 변경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 [별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2013년 9월 9일자로 개정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3년 9월 10일자로 고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5년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별 목표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달성해야 할 정책 목표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달성 연도 등을 포함한) 운용 주기 역시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간주함.
- 제2기 삶의 질 사업 예산은 총 34조 5천 4백억 원이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목표 달성(기준이행)을 위한 별도의 정책 사업과 예산 없이 운영되었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서비스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고 있어 관련 사업과 예산이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32개 항목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사업 예산 규모는 2013년 3조 4천 2백억 원 정도로, 2012년도 대비 11.6% 증가함.
- 제3차 기본계획 기간 중에 18개 부·처·청이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을 개선하고 신규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함.

- 2018년까지 3년 동안 기본계획에 포함된 모든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2016년에는 2015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가운데 61개 과제를 평가하였으며, 2015년 시행계획과 2015년 추진실적 보고서에서 실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 수는 총 105개였음.
 - 2015년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 수는 최소 22개이며, 달성한 것으로 명확하게 보고된 과제 수는 52개였음.
- 한편, 평가위원단은 2015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 과제 중 61개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과제와 개선 필요 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3. 3차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평가 결과

- 평가를 실시한 8개 정책군별 61개 과제의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².

1) 농어업인에 특화된 사회 안전망 구축

- 전국 단위 정책사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여 수혜자 선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두루누리 사업 활성화’ 과제는 농촌 지역의 사업체 업종 및 종사자의 연령 및 국적 등과 같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임.
 - ‘기초생활 보장제 사각지대 해소’ 과제 역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임.

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연구정책센터, 제3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 시행 2년의 성과와 과제, 농어촌 삶의 질 정책컨퍼런스, 2016. 12 발표자료 요약 인용

- 전국의 농가 중 실제로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농가의 비중이 낮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수혜 조건을 개선해 수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농업인 노후 안정 농지연금 지원 사업’, ‘경영 이양 고령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이 좋은 예임.
 - ‘농어업인 건강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농가 여성 및 농어업 후계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함.

2)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서비스 확충

- 지역의 교육청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의견이 제출되었음.
 - ‘농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의 경우 낙후한 농촌 소재 학교가 사업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낙후지역일수록 학생 수가 적거나 더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임.
 - ‘농어촌 학교 간 연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농어촌 학교 통학여건 개선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평가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이 반영됨.

3) 정주공간 활성화 및 농어촌 생활권 구현

- 정책군에 속한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수립, 예산집행, 예산확보 여부, 성과목표 달성 측면은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음.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 주택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마을 정비사업’은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사업과 연계를 강화해야 함.
 - 연계추진의 전제 조건은 사업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부 부처 간, 사업 주체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4)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기반 마련

- 정책군에 속한 사업을 평가할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별 성과지표는 대부분 매출액 증가, 고용 증가 등의 단편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순익, 소득, 부가가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이 같은 정책 사업들이 농어촌에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함.
- 규제와 관련된 사업은 실제로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의 제조가공 활동 규제 완화’, ‘지역특화발전 지구 신규 규제특례 발굴’ 등과 같은 사업이 좋은 예에 해당됨.

5)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강화

-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 사업들은 대부분 계획 수립, 예산 집행,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성과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되지만, 일부 성과 지표 개선이 필요함.

6) 문화 여가 인프라 및 인적 기반구축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등의 시설 건립 사업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며, 계획 집행 성과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다만, 수요 조사 및 농촌 주민의 시설 활용도 조사 부문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임.
- 정책군에 속하는 사업 중 일부는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평가함.
 - ‘지역문화지수’ 사업의 경우, 도시와 농촌을 동일한 지수로 비교할 경우

농촌의 문화·여가 여건이 열위에 있다는 결과만 드러낼 뿐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임.

-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정 사업’의 경우 그 실행의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비해 예산 규모는 작아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평가함.

7)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 정책군에 속한 사업들이 내용상 관련이 있고, 성과측면에서 보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들을 연계추진을 통해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경관보전직불제’, ‘농업유산 지정 관리’, ‘농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주민 자율적 경관보전 활동 확대 사업’의 경우 경관보전협약 체결 실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함.

8)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정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함.
 - ‘수리시설 안전 관리’, ‘소하천 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 예산 감소, 농특회계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저하한 것으로 평가됨.
 - 안전 문제에 관한 정책사업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불규칙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고려하면, 예산지원을 안정되게 유지해야 함.

9) 평가위원단의 의견종합 및 정책 제안

-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추진과 더불어 기존사업 관리 및 운영 비용을 확보해 그 활용도와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교육농장 육성 사업’은 사업을 처음 도입했던 때와 비교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 사업이 일몰 예정이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큼.
 - ‘소규모 농업인 창업 및 소득화 지원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수리시설 안전관리’, ‘소하천정비’,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의 사업도 예산문제로 사업의 지속성과 성과 제고에 어려움.
- 정책성과가 우수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하는데, ‘6차산업화 모델정책사업’의 경우, 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영체들의 매출 규모가 평균 23.6% 증가했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비율이 86%에 이르는 등의 성과를 보여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을 농촌 지자체가 널리 확산할 수 있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성과가 우수한 중앙정부 부처사업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적 시야에서 볼 때 지자체 예산만으로 규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간(2015년) 18개소 내외의 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70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함.
 -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거나 동일 시·군내 사업량을 증대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정책사업 간 연계를 활성화하려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완도군청은 국가농업유산, 경관보전직불제, 슬로시티 지정 등 여러 사업을 연계 추진한 사례로 청산도에 대한 대중적 인지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여타의 농어촌 시 군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으로는 체 간 협약 및 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야간경관계획 등의 관련 조례, 사업시행 매뉴얼, 사업주협정, 경관관리 체계 등의 요소를 여타 지자체에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함.

4. 3차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평가 기준

-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을 의미함.
 - 7개 부문 16개의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 <표 1-1>과 지자체 자율 관리의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여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의 이행 실태 점검방법은 <표 1-2>, 지자체 자율관리의 선택 항목은 7대 부문 24개 항목 <표 1-3>으로 예시하고 있지만, 이외의 평가 항목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점검·평가함.

〈표 1-1〉 국가관리 핵심 항목

부문	핵심 항목	국가최소기준	Base line(%)	'19년 목표(%)
1.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76.8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1.8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4.1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 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71.0	80
2.교육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98.1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21.1	40
3.정주생활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8.3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62.9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50.8	70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90.4	100
	11)광대역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77.3	90
4.경제활동·일자리	12)창업및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00
5.문화·여가	13)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92.0	100
6.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9.4	85
7.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32.7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0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45.4	55

〈표 1-2〉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방법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i) 전국사업체조사 (읍·면단위 제공)	공식 통계
			ii)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 통계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	행정 조사
			소방방재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 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 / (도움이 필요한 노인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포함)	공식 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 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 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 (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 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 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 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 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협조 자료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 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 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현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 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한국LPG산업협회)	협조 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 통계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 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수 / 총 가구 수) × 100	방송통신위원회: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 자료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4.경제 활동 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별 관련 서비스센터 운영 및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행정 조사
5.문화· 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협조 자료
		(공연프로그램 공연 횟수 + 전시프로그램 전시 일수) / 12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 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 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 자료
6.환경 ·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 통계
7.안전 (생활안전)	15) 방범설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경찰청: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협조 자료
	16) 경찰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1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경찰청: 시·군별 CODE 1 건별 출동소요시간	협조 자료
	17) 소방 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방재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 자료

〈표 1-3〉 지자체의 자율관리 “선택 항목” 예시

부문	선택 항목(예시)	세부 내용(예시)
1.보건 복지	1) 순회방문	보건진료소 설치 지역의 80% 이상의 마을에서 월 1회 이상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변화를 돕는 전문팀의 순회방문을 받을 수 있다.
	2) 알코올중독 예방 및 상담	모든 시·군에서 음주문화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며 알코올중독자의 단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3) 청소년	모든 시·군에 학대 및 성폭력 등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쉼터 및 그룹홈을 1개소 이상씩 확충 한다.
		모든 시·군에 학교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4) 사회복지 서비스	모든 읍·면에 사회복지담당을 2명 이상 배치한다.
	5) 자살예방	노인 자살시도 발생시 1년 동안 주1회 사례관리를 방문하여 실시한다.
6) 정신건강	모든 시·군에 정신보건센터를 1개소 설치·운영한다.	

부문	선택 항목(예시)	세부 내용(예시)
2.교육	7)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8) 방과후학교	농어촌 학교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에 교통비를 지급한다.
	9) 교사임용	학교·지역단위 임용제를 통한 교원 임용을 확대한다.
	10) 교사배치	면지역 소규모 학교에 행정 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11) 평생교육	(농어촌 문해조사를 실시하고) 문맹자에게 면단위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정주 생활기반	12) 석면슬레이트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전면 개량한다. * '13.12월 기준(환경부 전국 실태조사 결과) 대비
	13) 공동목욕탕	읍면별로 공동목욕탕을 운영한다.
	14) 도서지역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5.경제활동 ·일자리	15) 지역 수요에 적합한 일자리	읍면별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공급 및 매개하는 일자리를 1인 이상 배차운영한다.
	16) 사회적 경제 조직 운영 지원 프로그램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매년 5가지 이상 운영한다.
	17) 귀농·귀촌인 창업지원 및 구인구직 서비스	시·군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18) 농산어촌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기업인 포럼	시·군 내외의 기업인들끼리 정보 제공 및 융복합화를 시도하는 채널을 제공하기 위한 포럼을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4.문화·여가	19) 문화향유	전문 문화시설(예: 문예회관, 미술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문화 프로그램에 월 1회 이상 참여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및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20)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1) 영화관람	모든 시·군에서 언제나 최신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2) 문화여가인력	모든 읍면에 문화여가사가 1명 이상 배치되어 주민수요에 맞는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6.환경·경관	23) 생활쓰레기 수거	모든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진다.
7.안전 (생활안전)	24) 경찰순찰	읍·면별로 파출소를 설치·운영하며, 범죄취약마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위해 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

〈표 1-4〉 충청북도 선택 항목 최종 지표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점검방법	점검수단
1. 정주 생활 기반	1) 석면 슬레이트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매년 5% 이상 감소시킨다.	(석면슬레이트 개선 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	'03년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 및 각 지자체 협조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	시내버스수혜 마을수/ 시내버스미운행마을총수	충청북도청 협조
	3) 마을리더 양성	시·군 단위에서 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마을리더(간사)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행정리에서 마을리더 양성 프로그램 코스를 연 1코스(최소 3주) 이상 실시한다.	(10인 이상 마을 중 지역리더 프로그램 실행 마을 / 10인 이상 마을) × 100	각 지자체 협조
	4) 커뮤니티 조직	시·군 단위에서 농촌서비스 및 커뮤니티를 개선하기 위한 중간조직을 양성한다.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단체를 읍·면 당 2개소 이상 양성한다.	NGO현황 조사	각 지자체 협조
	5) 난방설비	가족규모 축소에 따른 난방시설 개량으로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시킨다.	겨울철 농촌주택 1인당 난방비를 00원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1인당 12~2월 난방비조사	에너지공급기관 통계, 지역 주유소 통계(난방용 등유)
2. 경제 활동/ 일자리	1) 도농교류 프로그램	시·군 단위에서 도시와의 교류를 위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촌체험, 로컬푸드 판매 등이 이루어진다.	6차산업 지원 시설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및 행사를 개최한다.	6차산업 지원센터	충북도청 협조
	2) 법률 서비스	경제활동 및 근로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불이익을 감소시킨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서비스센터를 충청북도종합계획 상 4개 지역생활권을 기준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한다.	법률서비스센터 설치 여부 조사	각 지자체 협조
	3)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 당 00개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	(각 유형별 단체 수 / 총 읍·면수) × 100	각 지자체 협조
	4) 직업교육	지역에 알맞은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특산물의 생산, 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각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 협조
	5) 농촌 일자리	비 농번기 농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운영한다.	비 농번기에 대체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	각 지자체 일자리 관련 부서 협조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점검방법	점검수단
3. 보건 복지	1) 자살률	자살률을 감소시킨다.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자살예방센터 설치 보건소 수 / 총 보건소 수) × 100	보건소 협조
	2) 노인복지	노인종합서비스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가문화를 제공한다	각 마을 경로당에 노인도우미를 1명 이상 배치한다.	(노인도우미 배치 경로당 수 / 총 경로당 수) × 100	각 지자체 협조
	3) 아동	방과 후 아동방치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지역에서 제공한다.	읍면당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센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돌봄서비스 센터 설치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각 지자체 협조
	4) 영유아	생활권내 국공립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가능하다.	읍·면당 국공립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센터 설치 읍·면 / 총 읍·면) × 100	각 지자체 협조
	5) 문화 다양성	지역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갈등을 완화시킨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2회 이상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문화다양성 교육 현황 조사	각 지자체 협조
	6) 건강	알콜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알콜중독환자 수를 감소시킨다.	알콜중독예방 프로그램을 마을마다(리)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알콜중독예방 프로그램 실시 마을 수 (리) / 총 마을 수 (리)) × 100	보건소 협조
	7) 건강	금연클리닉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여 금연율을 높인다.	금연성공률이 50% 이상 달성	(금연성공사례 수 / 총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 100	보건소 협조
4. 안전	1) 방범설비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기 설치된 CCTV 화질을 12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한다.	(HD급 CCTV 설치 개수 / 총 CCTV 설치 개수) × 100	각 지자체 협조
	2) 화재예방	농촌주택에 초기화재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를 비치한다.	농촌주택 소화기보급률 00% 이상으로 개선한다.	농촌주택 소화기 보급률 조사	소방본부 협조
	3) 치안 인프라	농어촌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 및 관할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농어촌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를 00이하로 낮추거나 관할면적을 00㎡ 이하로 낮춘다.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면적 조사	통계자료
	4) 응급 상황관리	응급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응급 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초중고, 마을회관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응급 안전 교육프로그램 실시 여부 조사	소방본부 협조
	5)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사용가능한 구급장비를 적재적소에 구비한다.	1개 리에 1세트(00,00,00) 이상의 응급환자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장비를 배치한다.	자동제세동기를 포함한 구급장비 구비 여부 조사	소방본부 협조

〈표 1-5〉 2015년 충청북도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핵심 항목 이행실태

구분	1. 보건복지				2. 교육				3. 장수생활기반				광역 통합망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초·중학교	평생교육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역 통합망					
시·군·구	모든 주요과목 1차 진료 가능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환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간수비율(%) 97% 이상 (소방서 없는 시·군은 -표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중재가 노인복지 서비스 수혜자 비율(%) 80% 이상	영유아 3명 이상 음면수 대비 보육시설 1개소 이상 있는 음면수 비율(%) 80% 이상	총음면수중 초중학교 운영학교가 있는 음면수 비율(%) 100% 이상	총음면수중 평생교육시 설이 있는 음면수 비율(%) 40% 이상	총가구수중 최저주거 기준이상 가구수 비율(%) 95% 이상	면지역주민 등등인구 급수인구 비율 (%) 82% 이상	읍 도시가스 보급률(%) 65% 이상 (읍이 없는 시·군은 -표시)	읍면도시가스 미보급세대수 중 소형PG 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 (%)	도보15분내 정류장, 버스 3회 이상 운행 미일 비율(%) 100% 이상	광역 통합망 구축률(%) 90% 이상			
		충주시	1	69	0	1	98.53	65.31	69.23	61.54	73.33	7.69	89.86	62.94	0.08	93.7
제천시	1	32	0	1	97.70	79.32	75.00	87.50	55.56	25.00	88.64	60.02	0.00	87.6	1	87.95
청주시	1	114	0	1	99.40	75.70	100.00	69.23	59.09	30.77	91.03	64.20	0.00	97.6	1	100.00
보은군	1	11	1	0	98.50	67.46	27.27	27.27	76.19	18.18	81.23	21.50	0.00	83.4	1	97.19
옥천군	1	30	0	0	99.21	58.61	44.44	44.44	63.16	11.11	84.26	64.83	0.55	89.0	1	97.26
영동군	1	19	1	1	98.35	72.52	63.64	72.73	62.50	9.09	80.31	61.02	0.38	72.2	1	86.96
진천군	1	11	0	1	99.52	73.05	100.00	57.14	85.00	28.57	87.16	76.93	0.21	91.4	1	96.09
괴산군	1	7	0	0	96.88	72.90	54.55	54.55	65.22	9.09	81.34	46.39	0.16	93.2	1	94.62
음성군	1	17	0	0	98.19	76.74	88.89	77.78	65.63	44.44	92.07	83.44	0.21	81.1	1	98.44
단양군	0	6	1	0	-	72.41	62.50	75.00	54.55	12.50	83.91	41.42	0.00	95.3	1	85.14
중평균	1	6	0	0	99.60	66.11	100.00	50.00	28.57	50.00	91.98	85.20	0.90	97.0	0	96.04

충청북도

구분	4. 경제활동, 일자리				5. 문화, 여가		6. 환경, 경관	7. 안전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 교육	시군내창업및사업 채운영,취업상담을 위한전문인력(전담 인력)고용여부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월1회이상시군내 창업,사업제안영,취 업관련전문포로그 랜운영 여부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지법문화원 운영 여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 관람 여부 (지법문화원)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 여부 (문예회관)	하수도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시도명	시군내창업보육지 원센터등창업및사 업채운영을위한지 원센터유무	1	1	1	1	1	1	40.24	40.24	-	-
시·군명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92.21	92.21	-	-
충주시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95.01	95.01	-	-
제천시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91.12	91.12	-	-
청주시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69.72	69.72	-	-
보은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85.68	85.68	-	-
옥천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68.77	68.77	-	-
영동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73.75	73.75	-	-
진천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29.07	29.07	-	-
괴산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43.43	43.43	-	-
음성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52.29	52.29	-	-
단양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72.81	72.81	-	-
증평군	시군내일자리센터 등취업상담을위한 지원센터유무	1	1	1	1	1	1	92.09	92.09	-	-

청
양
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 80-89 수정인용

제 2 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1.1. 지표 선정 목적

-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선택 항목으로 선정된 4개 분야 5개 지표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택 지표를 선정함.
 -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충청북도의 경우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15~’19)”이 수립되었으나, 삶의 질 지표와 관련 부서 및 지자체에서 동 계획을 활용하려는 의지와 실행 계획으로서의 집행력이 낮은 상황으로 3차 삶의 질 시행계획에서는 실행력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충청북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선택 항목 지표를 선정토록 하며, 선정된 지표의 달성률 제고 등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개선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충청북도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선택 항목으로 추가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함.
 - 충청북도 및 11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삶의 질 서비스기준과 관련성 높은 항목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고자 함.

1.2. 선정배경

- 충청북도의 삶의 질을 서비스 기준에 대한 충족도 여부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의 현황과 도정 목표 및 정책 검토가 필요함.
 - 충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삶의 질 현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6년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 충청북도 민선 5기와 6기의 공약 중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 높은 지표를 분석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함.

1.2.1. 충청북도 삶의 질 현황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충청북도의 삶의 질 현황을 점검함.
 -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보고서는 각 9개 광역자치

단체(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를 9개 분야, 32개의 점검·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삶의 질 현황을 점검함.

1.2.2. 선택 항목 지표 선정

가. 지표(안) 선정 과정

- 2016년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과정에서 충북연구원 연구팀에서 제안한 선택 항목(안)에 대해 전문가 워크숍과 도 및 11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과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선택 항목 지표안이 제안되었으며, 제안된 선택 항목 선정지표에 대한 서비스기준 및 점검 방법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음.

나. 최종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방법

- 최종 선택 항목 지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함.
 - 정리된 지표(안)를 전문가 및 공무원들에게 배포하여 중요도가 높은 지표와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를 선정함(선정 개수의 제한은 없음).
 - 전문가 및 공무원 의견을 취합하여 중요도를 점수화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함.

다. 최종 선택 항목 지표

- 최종 선택 항목은 각 부문별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지표를 선정함.
- 선택 항목 선정 원칙으로 5~6개의 지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선택 항목 후보에 4개 부문 중에서 한 부문은 두 개의 지표를 선정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이 16점 동점으로 두 개 지표를 선정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13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마을기업을 지표로 선정함.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15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살률을 지표로 선정함.
- 안전 부문에서는 16점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방범설비를 선정함.

〈표 2-1〉 최종 지표 선정

부문	선택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1.정주 생활 기반	1)석면 슬레이트	●	●	●	-	●	●	●	●	●	16
	2)대중교통취약지역 지원 사업	●	●	●	●	●	●	△	△	●	16
	3)마을리더 양성	-	-	△	△	-	●	△	△	△	7
	4)커뮤니티조직	-	-	●	●	-	●	△	△	△	9
	5)난방설비	-	●	●	-	△	●	●	△	△	11
2.경제활동·일자리	1)도농교류프로그램	-	△	●	-	-	△	△	△	●	8
	2)법률서비스	-	△	△	-	●	△	●	△	△	9
	3)마을기업	●	●	●	●	△	●	●	△	△	13
	4)직업교육	-	△	△	-	-	△	△	△	△	6
	5)농촌일자리	-	●	●	-	●	△	△	△	△	10
3.보건·복지	1)자살률	●	●	△	●	●	●	△	△	●	15
	2)노인복지	-	●	△	●	-	△	●	△	△	10
	3)아동	-	-	●	●	-	●	●	△	●	11
	4)영유아	-	●	●	●	△	●	●	△	●	14
	5)문화다양성	-	●	△	-	●	●	●	△	●	12
	6)건강	-	-	△	-	-	△	△	△	●	6
	7)건강	-	-	△	-	-	△	△	●	●	7

부문	선택 항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합계
4.안전	1)방법설비	●	●	●	-	●	●	●	●	●	16
	2)화재예방	-	●	●	-	-	●	●	△	△	10
	3)치안인프라	-	●	△	△	●	●	●	△	△	12
	4)응급상황관리	-	●	●	-	-	●	●	△	●	11
	5)응급서비스	-	●	●	●	-	●	●	●	●	14

주1. ●: 2점, △: 1점

주2. ①~⑦: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

⑧~⑨: 지자체 담당 공무원

1.2.3. 선택 항목 목표치

○ 선택 항목의 목표치는 '17년 실적대비 서비스 기준과 선정된 세부기준, 점검지표를 기반으로 '16년 선정된 점검방법을 통해 17년부터 19년까지 연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음.

* 보건/복지-자살률의 경우 '1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

-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17년 실적치인 3.54%에서 목표연도까지 매년 5%씩 감소시킨다.
-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의 경우 '17년 92.52%, '18~19년 96%로 확대한다.
- 마을기업의 경우 '17년 2.41개소를 '17~19년까지 매년 면소재지 마다 최소 2개소씩 운영하도록 한다.
- 자살률(노인 자살률)은 '16년 실적 36.9%를 '17년 34%, '18년 32%, '19년 29%로 자살율을 감소시킨다.
- 방법설비(HD급 CCTV)는 '17년 실적 90%를 '18~19년 100%로 확대시킨다.

〈표 2-2〉 충청북도 선택 항목 및 서비스기준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점검방법	점검지표	16년 실적	목표치		
							17	18	19
1.장주 생활 기반	석면슬레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매년 5% 이상 감소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 총 슬레이트주택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호수, 총 슬레이트 주택 수 	3.47%	5%	5%	5%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 전체마을 수)-(마을과 버스정류장 거리)700m 이상인 마을)/(시·군 전체마을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버스 운행마을 수, 시내버스 미 운행 마을 수 	92.52%	95%	96%	96%
2.경제 활동·일자리	마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당 2개 이상 운영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유형별 단체 수/총 읍면 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기업단체 수, 사회적기업 단체 수, 협동조합 단체 수 	2.41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3.보건·복지	자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시·군의 60세 이상 노인인구자살자수/시·군 전체 연령 자살자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세 이상 자살자수, 총자살자 수 	36.9%	34%	32%
4.안전	방범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설치된 CCTV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급 CCTV 설치개수/총 CCTV 설치개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HD급CCTV설치개수, 총 CCTV 설치 개수 	90%	90%	100%	100%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1. 정주환경기반

2.1.1. 석면 슬레이트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농촌에는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많으며, 약 8년 이상 된 석면 슬레이트는 석면 분진이 발생되어 주민의 생명에 위협요 소로 작용되고 있음.
- 석면 분진은 미국산업 안전 보건청(OSHA)가 선정한 1급 발암 물질 중의 하나로 석면이 인체에 들어오면 외부로 배출되지 누적되어 암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현재는 사용이 전면 중지된 상황임.
- 하지만 아직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석면 슬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수준과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됨으로 인해 노후 슬레이트를 재활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충청북도는 주거용 슬레이트 건축물을 우선 철거 대상으로 2021년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전면 철거 계획 하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석면 슬레이트로 부터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지붕 1,43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음.

나.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text{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해당주택수})}{(\text{총 슬레이트 주택수})} \times 100$$

- 충청북도에서 진행 중인 각 시·군별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대상지붕 현황에서 전체 총 슬레이트 주택 수를 나눈 비율 자료를 사용함.
-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으로 인한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감소율로 서비스를 점검함.
-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자료는 충청북도 도청에서 제공 받았으며, 총 슬레이트 주택 수는 ‘13년 환경부 전수조사 자료 및 각 지자체 협조 자료를 점검 수단으로 사용함.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 감소율 매 5%씩 달성
- 충청북도에는 40,293개소에서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으로 1,430개 건물을 개선하여 3.5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 지자체 중 단양군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증평군이 6.48%의 감소율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 석면 슬레이트 사용이 많은 옥천군이 2.24% 감소율, 영동군이 2.20%의 감소율, 충주시가 2.63%의 감소율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시·군별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단위: 동, 개, %)

시군별	석면 슬레이트 현황 (동)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현황								개선사업으로 인한 감소율 (%)
		배정물량				추진실적				
		2017	2016	2015	2014	2017	2016	2015	2014	
청주	4,319	270	330	350	300	210	364	391	329	6.25
충주	5,694	150	150	120	100	97	150	127	100	2.63
제천	3,843	120	110	120	100	98	171	156	121	3.12
보은	4,060	110	150	150	200	93	200	202	225	2.70
옥천	6,685	150	180	220	200	122	320	325	294	2.24
영동	5,906	130	180	200	150	114	232	249	208	2.20
증평	772	50	80	90	80	40	76	96	86	6.48
진천	1,698	100	110	120	110	80	167	138	120	5.89
괴산	3,095	150	210	220	150	120	238	262	189	4.85
음성	3,476	130	140	120	80	90	180	147	88	3.74
단양	745	70	90	90	80	56	118	104	101	9.38
전체	40,293	1,430	1,730	1,800	1,550	1,120	2,216	2,197	1,861	3.54

2.1.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충청북도의 전체 행정리는 3,092개이고 이 중 44.85%에 해당하는 1,387개 마을은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버스정류장까지 700m이상의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5km이상으로 떨어진 마을도 8.24%인 255개로 나타남.
- 정류장과 떨어진 마을은 마을 인구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노령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한다면 농촌 문제 중 대중교통은 삶에 미치는 영향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점검 기준은 필요함.

나.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공급한다.

$$\frac{(\text{시·군 전체마을수}) - (\text{마을과 버스정류장 거리가 } 700\text{m 이상인 마을})}{(\text{시·군 전체마을(행정리)수})} \times 100$$

다. 점검방법 및 수단

- 마을의 수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현황과 시내버스 정류장과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현황은 충청북도 내부 자료인 ‘시골마을 행복택시’ 사업 자료를 활용함.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 대중교통 수혜 마을의 비율 95%로 상승
- 충청북도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총 2,713개의 행정리를 운행 중에 있으나, 운행되지 않는 소외지역 1,387개의 마을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지자체 중 청주가 580개, 영동이 431개, 옥천이 220개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증평 7개, 괴산 8개로 대중교통 미운행 마을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4〉 시·군별 시내버스 운행 마을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마을 수 (개)	마을 수 (마을회관~최단거리 버스승강장 거리)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
		소계	0.7km~ 1.0km	1.0km~ 1.2km	1.2km~ 1.5km	1.5km 이상	
청주	584	580	580	0	0	0	99.32
충주	333	32	11	3	5	13	90.39
제천	153	11	8	0	1	2	92.81
보은	247	13	2	1	5	6	94.70
옥천	220	220	200	20	0	0	91.00
영동	431	431	80	90	60	200	100.0
증평	74	7	3	1	0	3	90.54
진천	292	39	20	4	6	9	86.64
괴산	279	8	3	0	1	4	97.13
음성	331	25	11	1	8	6	89.42
단양	148	21	4	0	5	12	85.81
전체	3,092	1,387	922	120	91	255	92.52

-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로 보았을 때 단양군이 85.81%로 가장 대중교통의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동군이 100%로 가장 높은 운행마을 비율을 보임.
- 시내버스 정류장과 700m 이상 떨어진 마을 회관까지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변경하여 운행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교통 수요 적은 오지마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함.
- 이에 따른 대안으로 충청북도에서는 농촌 낙후지역 대중교통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교통 오지마을에서 버스가 다니는 면이나 읍내 마을까지 버스요금만을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일반택시회사에서 기사별로 순번을 정하여서 교통 오지마을 주변 마을이나 택시 대기소에서 대기하다가 주민이 호출할 시에 오지마을의 마을회관으로 가서 주민을 태우고 환승이 가능한 정류장에 내려주는 체계임.

〈표 2-5〉 시·군별 행복택시 운행마을 현황

(단위: 마을, 세대, 명)

구분	전체 마을 수	'17하반기 시범운행마을		
		마을 수	세대 수	주민 수
청주	584	24	881	1,739
충주	333	26	1,607	3,307
제천	153	17	321	695
보은	247	16	372	688
옥천	220	13	215	389
영동	431	32	937	2,035
증평	74	2	39	56
진천	292	40	1,625	2,936
괴산	279	19	462	861
음성	331	35	1,206	2,028
단양	148	7	84	167
전체	3,092	251	7,749	14,901

2.2. 경제활동·일자리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의미함.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법상 회사이지만 비영리 단체인 기업을 의미함.

-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자의 계층에 있는 하청업체, 소규모 농장을 가진 농장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력하여 만든 단체를 의미함.
- 이와 같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취업의 기회, 경제적 이익,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3개 사회적 경제단체가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농민들의 이익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임.

나.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 활동에 도움을 준다.

다. 점검방법 및 수단

- 각 유형별 단체(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현황은 충청북도청과 지자체 내부 자료를 활용함.

$\frac{\text{각유형별단체수}}{\text{총시군의읍면수}} \times 100$
--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 각 읍·면·동 1개에 유형별 단체 2개 이상
- 충청북도에는 153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마을기업 82개, 사회적 기업 128개, 협동조합 370개로 각 1개 읍·면·동당 2.41개의 단체가 설립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청주와 증평이 각각 읍·면·동 기준 4개와 3.5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진천이 1개, 괴산 1개, 단양 1.25개로 낮게 나타남.

〈표 2-6〉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각 유형별 단체 현황			읍·면·동 수	각 1개 읍·면·동 단체 수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청주	11	61	172	43	4
충주	8	11	48	25	1.92
제천	5	17	42	17	2.47
보은	6	5	14	11	1.27
옥천	6	8	12	9	1.33
영동	14	6	28	11	2.54
증평	4	3	7	2	3.5
진천	6	6	7	7	1
괴산	12	4	11	11	1
음성	4	3	19	9	2.11
단양	6	4	10	8	1.25
전체	82	128	370	153	2.41

2.3. 보건·복지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충북의 노인 인구는 전국 평균의 6.84%보다 1.56%가 높은 8.4%로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돌입함.
- 충북의 ‘16년의 자살자는 517명으로 그 중 60세 이상의 자살 사망자는 199명(38.4%)으로 나타나 전국 노인 자살률 중 3위로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 중복의 경우 노인 자살률의 원인을 파악하여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노인 인구의 자살 비율은 농촌지역은 접근성이 취약하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있어 계속해서 상승할 것임.
-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자살률을 감소시킨다.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text{시·군 60세 이상(노인) 자살사망자수}}{\text{시·군 전체연령 자살사망자수}} \times 100$$

- 자살률의 점검방법은 각 시군의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자살 사망자 수와 시·군 전체 연령에서의 자살인구의 비율로 점검·평가함.
- 연도별 시·군 전체 인구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은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내부 자료를 이용함.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 노인 인구의 자살비율을 30%로 감소

- 충청북도 노인 자살비율은 2014년 36.5%, 2015년 38.4%, 2016년 38.4%로 총 자살자 중 노인 자살자가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주와 진천이 20%~31.7%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낮게 타나났으며, 괴산과 단양이 73.3%~80%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 시·군별 노인 자살률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전체 연령	60대 이상	전체 연령	60대 이상	전체 연령	60대 이상
청주	255	81(31.7)	212	75(35.4)	206	60(29.1)
충주	73	29(39.7)	57	24(42.1)	81	36(44.4)
제천	42	18(42.8)	54	22(40.7)	56	23(41.1)
보은	12	7(58.3)	20	14(70)	6	4(66.6)
옥천	20	11(55)	19	7(36.8)	21	8(38.1)
영동	24	11(45.8)	19	9(47.4)	16	9(56.2)
증평	10	4(40)	14	5(35.7)	9	4(44.4)
진천	25	5(20)	24	5(20.8)	25	4(16)
괴산	15	11(73.3)	17	6(35.3)	24	12(50)
음성	31	14(45.2)	29	9(31.1)	35	12(34.3)
단양	10	8(80)	12	7(58.3)	14	8(57.1)
전체	517	199(38.4)	477	183(38.4)	493	180(36.5)

* 주: 1) 옥천군의 경우 '옥천경찰서' 2016년 11월 말 통계치를 기준으로 함

- 충청북도는 도민의 자살 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충북 광역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과 같은 다양한 복지체계가 필요한 질환의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 '충북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충청북도 각 11개 시·군

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표 2-8〉 시·군별 정신건강 증진센터 연락처

구 분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청주	충청북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17-0597	http://cbmind.or.kr/
	청주시 서원·흥덕 정신건강증진센터	291-0199	http://www.cjmental.co.kr/
	청주시 상당·청원 정신건강증진센터	201-3122-9	http://www.cheongwoncenter.or.kr/
충주	충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855-4007	http://mhc.cj100.net/home/
제천	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646-3074-5	http://www.jcmind.or.kr/
보은	보은군 정신건강증진센터	544-6991~2	http://www.goodboeun.com/
옥천	옥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730-2199	http://www.okmind.or.kr/
영동	영동군 정신건강증진센터	740-5613	-
증평	증평군 정신건강증진센터	835-4276	http://www.jpmind.net
진천	진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536-8387	http://www.jcmhc.net
괴산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0832-0330	www.gsmhc.or.kr
음성	음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	872-1883	http://www.esmind.or.kr/
단양	단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420-3257-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68 인용

- 시·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자살 예방의 날’과 같은 일회성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며, 공기업과 마을회관을 돌며 자살예방을 위한 일회성 강연들을 주로 시행하고 있음.
- 제천시는 노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연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2.4. 안전

가. 선택 항목 선정배경

- CCTV의 방범 효과는 예로부터 많이 입증되었고, 최근에는 특히 인적이 드문 곳과 골목 같은 우범지대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
- 방범효과 뿐만 아니라 범죄가 발생 하였을 시 범인 체포의 단서 제공과 범죄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된 CCTV로 경찰 인력의 보완 등의 효과가 있음.
- CCTV 설치는 일정 수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제는 해상도를 고화질로 변경하였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범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다. 점검방법 및 수단

$$\frac{\text{HD급 CCTV설치대수}}{\text{총 CCTV설치대수}} \times 100$$

- 시·군별 CCTV 설치 대수는 농촌마을 중 행정리만 집계한 것이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어린이집과 은행 통계는 제외함.
-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41만 화소 이상부터의 CCTV를 집계하였고, HD CCTV는 경찰청의 고화질 분류 기준에 따라 120만 화소 이상으로 정의함.

라. 선택 항목 현황 및 평가

- 목표 : HD급 CCTV로 100% 교체
- 충청북도 내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는 9,760대이고 이중 8,828대가 HD급 CCTV로 설치되어 있어 90.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11개 시·군 중 청주, 제천, 영동의 경우 HD급 CCTV로 100%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충주 75%, 보은 81.5%, 옥천 91.2%, 증평 31%, 진천 96.6%, 괴산 81%, 음성 96%, 단양 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9〉 시·군별 마을(행정리) CCTV 현황

(단위 : 대, %)

구 분	CCTV 설치 현황		HD급 CCTV 비율(%)
	HD급 CCTV(대)	전체 CCTV 설치(대)	
청주	2,777	2,777	100.0%
충주	794	1,058	75.0%
제천	1,650	1,650	100.0%
보은	339	416	81.5%
옥천	445	488	91.2%
영동	450	450	100.0%
증평	178	567	31.0%
진천	745	771	96.6%
괴산	348	430	81.0%
음성	780	813	96.0%
단양	322	340	95.0%
전체	8,828	9,760	90.5%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 정주환경기반 이행실태

3.1.1 석면 슬레이트

$$\left(\text{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해당 주택 수} / \text{총 슬레이트 주택 수} \right) \times 100$$

- 정주환경기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슬레이트 정비를 통한 충청북도 슬레이트 감소율은 평균 3.54%이며,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고, 단양군이 9.38%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0〉 석면 슬레이트 개선 현황

(단위: %, 호)

지표	구분	평균	노후슬레이트 정비 현황	최대값	최소값
주거환경 정비 현황	전체	3.54%	1,430	9.38% (단양군)	2.20% (영동군)
	시 지역	3.89%	540	6.25% (청주시)	2.63% (충주시)
	군 지역	7.21%	890	9.38% (단양군)	2.20% (영동군)

3.1.2 대중교통

(시·군 전체 마을 수-마을과 버스정류장 거리가 700m이상인 마을)/시·군 전체 마을(행정리) 수 × 100

- 정주환경기반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정비 현황을 보면 대중교통보급율은 평균 92.52%이며,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고, 영동군이 100%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현황

(단위: %, 호)

지표	구분	평균	마을과 버스정류장 거리 700m이상마을	최대값	최소값
대중교통 정비 현황	전체	92.52%	1,387	100% (영동군)	85.81% (단양군)
	시 지역	94.16%	623	99.32% (청주시)	90.39% (충주시)
	군 지역	91.90%	764	100% (영동군)	85.81% (단양군)

3.2. 경제활동·일자리 이행실태

(각 유형별 단체 수/총 시·군의 읍·면 수) × 100

3.2.1 마을기업

- 경제활동·일자리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총 마을기업은 580개이며,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고, 청주시가 244개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2〉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지표	구분	단체현황	각 1개 읍·면·동 단체 수	최대값	최소값
마을기업 현황	전체	580	2.41	244 (청주시)	14 (증평군)
	시 지역	375	2.79	244 (청주시)	64 (제천시)
	군 지역	205	1.75	48 (영동군)	14 (증평군)

3.3. 보건·복지 이행실태

$$(시·군 60세 이상(노인) 자살 사망자 수 / 시·군 전체 연령 자살 사망자 수) \times 100$$

3.3.1 노인 자살

- 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자살자 감소를 위해 추진한 결과 충청북도 노인 자살자 비율은 평균 38.4%이며,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높고, 단양군이 80%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3〉 노인 자살비율 현황

(단위: %, 명)

지표	구분	평균	노인 자살자	최대값	최소값
노인 자살비율 현황	전체	38.4%	199	80% (단양군)	20% (진천군)
	시 지역	38.1%	128	42.8% (제천시)	31.7% (청주시)
	군 지역	52.2%	71	80% (단양군)	20% (진천군)

3.4. 안전 이행실태

$$(HD급 CCTV 설치 대수/총 CCTV 설치 대수) \times 100$$

3.4.1 방법설비

- 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HD급 CCTV 보급률은 90.5%이며,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높고,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이 100%로 다른 시·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14〉 HD급 CCTV 현황

(단위: %, 대)

지표	구분	HD급 CCTV 비율(%)	CCTV 설치현황(대)	최대값	최소값
HD급 CCTV	전체	90.5%	9,760	100% (청주, 제천, 영동)	31% (증평군)
	시 지역	91.6%	5,485	100% (청주시, 제천시)	75% (충주시)
	군 지역	84.0%	4,275	100% (영동군)	31% (증평군)

4.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4.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4.1.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조사범위 선정 기준

- 공간접근성 지표의 조사범위는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공간 단위인 행정리를 최소 단위로 하고, 해당 지표 및 관련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법정리 단위까지로 확대해 적용함.

■ 조사범위 현황

〈표 2-15〉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전체	전체	123	1513	140
	읍지역	15	13	12
	면지역	87	1184	77
	동지역	64	629	109
시지역	전체	55	624	72
	읍지역	5	5	2
	면지역	29	292	19
	동지역	51	331	51
군지역	전체	68	862	68
	읍지역	10	8	10
	면지역	58	853	58
청주시	전체	13	321	30
	읍지역	3	3	
	면지역	10	240	
	동지역	30	82	30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충주시	전체	25	162	25
	읍지역	1	1	1
	면지역	12	25	12
	동지역	12	136	12
제천시	전체	17	141	17
	읍지역	1	1	1
	면지역	7	27	7
	동지역	9	113	9
보은군	전체	11	174	11
	읍지역	1	1	1
	면지역	10	173	10
옥천군	전체	9	125	9
	읍지역	1	1	1
	면지역	8	124	8
영동군	전체	11	131	11
	읍지역	1	1	1
	면지역	10	130	10
증평군	전체	2	27	2
	읍지역	1	1	1
	면지역	1	26	1
진천군	전체	7	83	7
	읍지역	1	1	1
	면지역	6	82	6
괴산군	전체	11	126	11
	읍지역	1	1	1
	면지역	10	125	10
음성군	전체	9	115	9
	읍지역	2	2	2
	면지역	7	113	7
단양군	전체	8	108	8
	읍지역	2	2	2
	면지역	6	106	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75-176 인용

4.2. 정주환경 지표 특성분석

4.2.1. 지표평가 기준자료

■ 주택 슬레이트 정비

- 주거환경은 충청북도 환경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 정보를 기반으로 함.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 증대와 고가의 처리비용으로 자발적 처리에는 한계가 있음.
- 석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석면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

〈표 2-16〉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단위: 호)

구분	슬레이트 사업대상 건물 수
전체	40,293
시 지역	13,856
군 지역	26,387
청주시	4,319
충주시	5,694
제천시	3,843
보은군	4,060
옥천군	6,685
영동군	5,906
증평군	722
진천군	1,698
괴산군	3,095
음성군	3,476
단양군	745

〈표 2-17〉 주거환경 비율

(단위: 호, %)

구분	사업추진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430	3.54%	5.61%	9.38%	2.20%
청주시	270	6.25%	3.89%	6.25% (청주시)	2.63% (충주시)
충주시	150	2.63%			
제천시	120	3.12%			
보은군	110	2.70%	7.21%	9.38% (단양군)	2.20% (영동군)
옥천군	150	2.24%			
영동군	130	2.20%			
증평군	50	6.48%			
진천군	100	5.89%			
괴산군	150	4.85%			
음성군	130	3.74%			
단양군	70	9.38%			

- 충북 전체의 평균 주거환경 현황은 5.61%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단양군이 9.38%로 주거환경개선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동군 2.2%, 충주시 2.63%로 낮게 나타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주거환경현황은 3.89%인데 반해 군 지역은 7.21%로 군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지원 사업

- 대중교통 취약 지역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각 지자체의 버스정거장 700m이 상인 마을을 기초로 농촌형 교통복지 모델을 발굴 및 운영하고자 함.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을 공급하여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18〉 시·군별 전체 마을 수 현황

(단위: 마을)

구분	전체 마을 수
전체	3,092
시 지역	1,070
군 지역	2,022
청주시	584
충주시	333
제천시	153
보은군	247
옥천군	220
영동군	431
증평군	74
진천군	292
괴산군	279
음성군	331
단양군	148

- 충북 전체의 평균 시내버스 운행마을 현황은 93.03%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영동군 100%, 청주시 99.32%로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주시 90.39%, 단양군 85.81%로 낮게 나타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 현황은 94.16%인데 반해 군 지역은 91.90%로 시 지역의 시내버스 운행마을 비율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9〉 시내버스 운행 마을 비율

(단위: 마을, %)

구분	사업추진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387	92.52	93.03%	100%	85.81%
청주시	580	99.32	94.16%	99.32% (청주시)	90.39% (충주시)
충주시	32	90.39			
제천시	11	92.81			
보은군	13	94.7	91.90%	100% (영동군)	85.81% (단양군)
옥천군	220	91			
영동군	431	100			
증평군	7	90.54			
진천군	39	86.64			
괴산군	8	97.13			
음성군	25	89.42			
단양군	21	85.81			

4.3. 경제활동/일자리 지표 특성분석

4.3.1. 지표평가 기준자료

■ 마을기업

- 보건·복지 지표는 충청북도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현황과 자살 통계자료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함.
- 노인 자살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20〉 시·군별 마을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사업량
전체	580
시 지역	375
군 지역	205
청주시	244
충주시	67
제천시	64
보은군	25
옥천군	26
영동군	48
증평군	14
진천군	19
괴산군	27
음성군	26
단양군	20

〈표 2-21〉 마을기업 비율

(단위: 개, %)

구분	사업추진수	비율	현황	최대값	최소값
전체	580	-	580	244	14
청주시	244	42.07	375	244 (청주시)	64 (제천시)
충주시	67	11.55			
제천시	64	11.03			
보은군	25	4.31	205	48 (영동군)	14 (증평군)
옥천군	26	4.48			
영동군	48	8.28			
증평군	14	2.41			
진천군	19	3.28			
괴산군	27	4.66			
음성군	26	4.48			
단양군	20	3.45			

- 충북 전체의 마을기업 현황은 580개로 조사됨.
- 시·군별로 청주시 244개, 영동군 48개의 마을기업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천시 64개, 증평군 14개로 낮게 나타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마을기업 현황은 375개인데 반해 군 지역은 205개로 시 지역의 마을기업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4. 보건·복지 지표 특성분석

4.4.1. 지표평가 기준자료

■ 노인 자살률

- 보건·복지 지표는 충청북도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현황과 자살 통계자료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함.
- 노인 자살은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2-22〉 시·군별 노인자살률 현황

(단위: 명)

구분	노인자살 수
전체	199
시 지역	128
군 지역	71
청주시	81
충주시	29
제천시	18
보은군	7

구분	노인자살 수
옥천군	11
영동군	11
증평군	4
진천군	5
괴산군	11
음성군	14
단양군	8

〈표 2-23〉 노인자살률 비율

(단위: 명, %)

구분	자살노인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99	38.4	45.2%	80.0%	20%
청주시	81	31.7	38.1%	42.8% (제천시)	31.7% (청주시)
충주시	29	39.7			
제천시	18	42.8			
보은군	7	58.3	52.2%	80.0% (단양군)	20.0% (진천군)
옥천군	11	55.0			
영동군	11	45.8			
증평군	4	40.0			
진천군	5	20.0			
괴산군	11	73.3			
음성군	14	45.2			
단양군	8	80.0			

- 충북 전체의 자살 노인 수는 199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군별로 단양군 80.0%, 괴산군 73.3%, 보은군 58.3%로 노인 자살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천군은 가장 낮은 20.0%로 나타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노인 자살률 비율 현황은 38.1%인데 반해 군 지역은 52.2%로 군 지역의 노인 자살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5. 안전 지표 특성분석

4.5.1. 지표평가 기준자료

■ 방법설비

- CCTV는 인적이 드문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의 범죄예방에 효과적임.
- 충청북도에서 운행 중인 CCTV 중 HD급 CCTV현황을 점검함.

〈표 2-24〉 시·군별 CCTV 현황

(단위: 개)

구분	CCTV설치 현황
전체	9,760
시 지역	5,485
군 지역	4,275
청주시	2,777
충주시	1,058
제천시	1,650
보은군	416
옥천군	488
영동군	450
증평군	567
진천군	771
괴산군	430
음성군	813
단양군	340

〈표 2-25〉 HD급 CCTV 비율

(단위: 대, %)

구분	CCTV 총수	HD급 CCTV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9,760	8,828	90.5	87.8%	100	31
청주시	2,777	2,777	100.0	91.6%	100.0% (청주시, 제천시)	75.0% (충주시)
충주시	1,058	794	75.0			
제천시	1,650	1,650	100.0			
보은군	416	339	81.5	84.0%	100.0% (영동군)	31.0% (증평군)
옥천군	488	445	91.2			
영동군	450	450	100.0			
증평군	567	178	31.0			
진천군	771	745	96.6			
괴산군	430	348	81.0			
음성군	813	780	96.0			
단양군	340	322	95.0			

- 충북 전체의 HD급 CCTV 비율은 전체 9,760개소 중 8,828개소로 90.5%로 조사됨.
- 시·군별로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이 10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주시 75.0%, 괴산군 81.0%, 증평군은 31.0%로 낮게 나타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시 지역의 HD급 CCTV 비율 현황은 91.6%인데 반해, 군 지역은 84.0%로 군 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 3 장

정책제언

1. 정책적 제언

- 계획대비 실적 자료를 구축하는 시점이 기관별 차이와 도와 시·군간 담당부서의 불일치로 적기 자료 취합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광역 자치단체 내 농정국을 중심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이 가능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기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와 평가를 위해 농경연과 시도 연구원간 협약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평가를 위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함.

- 지표에 따라 달성 가능한 총량의 차이로 실적률이 낮은 경우도 있어 동일 기준에 의해 서비스기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매년마다 새롭게 측정할 수 있어 달성 노력 및 이행실태의 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변경하거나 대안적 점검 형태를 모색해야 함.

- 정부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지자체별로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과정을 협조하는 담당자가 교체되어,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구득이 어려워짐.
 -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중심으로 담당 연구원을 지정하여 도와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자료 관리 및 평가의 어려움을 해소함.

-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매년 시행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없어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기는 문제가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 정도에 따라 담당 직원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개선 필요함.

2.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에 따라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종합·체계적인 개발촉진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열악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의 지역과 그 밖의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개정 2013.8.5.>

2. “농어업”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3. “농어업인등”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
4.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 2013.9.10.], 그 외의 동 조례에 의거하여 ○○시/군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제3조(충청북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청북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 ② 충청북도지사는 농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내용이 해당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충청북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립·시행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충청북도지사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
 2.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 수준과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그 밖에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② 충청북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충청북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① 충청북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용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2.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복지 부문, 교육 부문, 생활권 기반 부문,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문화·여가 부문, 환경·경관 부문, 안전 부문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가 포함되도록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는 지역실정 및 주민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이전이라도 개정할 수 있다.
- ③ 충청북도지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함께 충청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본 조례의[별표]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 고시한다.

제6조(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

1. 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보건·복지 부문)
2.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교육 부문)
3. 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생활권 기반 부문)
4.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경제활동·일자리 부문)
5.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문화·여가 부문)
6. 농어촌 환경 및 경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환경·경관 부문)
7.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위험 방지와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안전 부문)
8. 그 밖에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은 「OOO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개정 및 운용지원을 위해 총

괄·조정·심의, 목표달성의 점검·평가 등을 위한 협의체로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은 충청북도지사의 각 실·과·소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농어업인·주민 또는 농어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의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 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이나 간사 운용 등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심의 및 점검·평가한다.

1. 제4조의 실태조사
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안 심의
4.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대한 총괄·조정
5.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 정도의 주기적인 점검·평가 및 결과에 대한 주민 공지
6.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시/군 시책 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권고
7. 그 밖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위원회 행정지원) ① 충청북도 행정조직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획·예산 부서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이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충청북도 행정조직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충청북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부서에 자료요청은 물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5조 관련)

제 4 장

충청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우수사례

1. 증평군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젝트

1.1. 사업 필요성

1.1.1.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정신장애인의 조기발견·등록·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적인 정신장애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반주민 대상으로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1.1.2. 사업목적

-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행위에 대해 심리적·의학적·사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함. 자살예방 생명 사랑 문구 홍보 스크린 및 안전부스 설치로 증평군민 누구나 쉽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살의 유병률을 낮추고자 함.

-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교육 및 생명문화 보급을 통하여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켜, 점차적으로 중평지역의 자살률을 낮추는 데 목표를 둠.
- 이웃과 단절되고 소외된 지역 또는 우울 및 자살사가 많은 취약계층 지역에 유관기관과 융합·통합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함.
-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함.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함.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중평군민, 정신질환자 및 가족

1.3. 사업 추진 체계 및 운영 계획

1.3.1. 예산, 조직구성 및 운영 체계

■ 사업 예산

센터 사업	사업예산	비고
정신건강증진사업	202,240,000원	
아동청소년사업	50,000,000원	
자살예방사업	40,000,000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10,000,000원	
법인전입금	2,552,430원	
합계	304,792,430원	

■ 조직 및 인력 구성

인 력	인력구성			
	센터장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팀장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인원	1명	1명	2명	5명
상근	비상근	상근	상근	상근
계	9명			

■ 정신건강사업 운영 체계

기 관	역 할	비 고
증평군청, 증평군보건소	예산지원, 방문간호사업 수행협조, 환자발견 및 의뢰, 행정지원	방문보건팀
해광의료재단 충북병원	인력지원, 센터운영 제반사항 지원	의료팀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자문, 사업지원	내부 및 외부 운영위원

1.3.2. 세부사업 운영계획

○ 정신건강사업 운영

- *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 만성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적응과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 정신건강 증진사업 : 지역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 군민의 욕구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개발·제공한다.
- * 정신보건환경조성 :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홍보 및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둔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재활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교육부지정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우울증, 자살) 및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신건강 복원력을 증진한다.
- * 자살예방사업 :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개선 및 고 위험군 조기개입 및 위기관리를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한다.
- *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 지역 내 자살고위험군(고위험군, 시도자, 유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지원을 통해 즉각적인 위기개입 지원서비스(경제적 지원, 정신과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4. 자살예방을 위한 추진 사업 내용

1.4.1.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추진 상황

○ 자살사망률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음 .

- 1위 한국 28.5명(14년 27.3명) / 2위 헝가리 19.4명 / 3위 일본 18.7명
- 자살률 낮은 국가 : 34위 터키 2.6명/ 33위 그리스 4.2명→우리나라와 엄

청년 격차

* 13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연령표준화 미적용)

- 충청북도 자살률 전국 4위(2013년,2014년 전국 3위)
 - 1위 강원 35.3명 / 2위 충남 35.1명 / 3위 전남 30.8명 / 4위 충북 30.4명
 - 2013년, 2014년 전국 3위

- 증평균 자살률 도내 4위(2014년 도내 11위)로 자살률 증가
 - 2013년 48.8명(도내3위), 2014년 28.1명(도내11위), 2015년 39,4명(도내4위)
 - 2014년에 비해 자살률 증가

- 증평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제정(2012.08.03.)
 - 생명존중사업에 필요한 정책 마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

- 충북도내에서 행복지수 1위라는 이미지 훼손
 - 충북도민 평균 행복지수 59.4
 - 증평균민 행복지수 64.6으로 도내에서 1위

- 충청북도 시·군별 자살률

(단위: 명, %)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사망자수	477	212	57	54	20	19	19	14	24	17	29	12
자살률	30.4	25.6	27.5	39.9	58.9	36.6	37.7	39.4	36.3	44.5	30.5	39.3
순위		11	10	3	1	7	6	4	8	2	9	5

1.4.2. 주요 사업 내용

세부 사업	추진 시기	내용 및 수행방법	대상	비고
생명 dream	1월 ~ 12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생명 드림존(Dream Zone)” ① 힐링부스 - 생명사랑문구 홍보 전자 스크린 설치 - 우울증이완요법 (음악재생, 힐링향기) -전화기설치(주간-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24시간 상담기관) - 힐링쉼터 의자 설치 - 보안 cctv 설치(도안 관제센터 연결) ② 키오스크 설치 - 자가 테스트, 고위험군 자동연계 서비스 ③ 프로그램 ㉠ 콘서트 ㉡ 캠페인 ㉢ 예방프로그램	증평군민 모두	팀장/담당자, 군청 안전 건설과 협조
		② 위기대응체계 운영 - 24시간 응급전화(1577-0199) - 실시간 위기사례 공유 및 개입 -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사후관리 - 분기별 간담회 운영	증평소방서, 증평지구대, 미래병원, 한성병원	팀장/담당자
		③ 자살위기자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유가족 포함)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 입원비 연 300만원 - 외래진료비 (검사비, 상담비 포함)와 약 제비 연 60만원 - 응급이송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살고위험군 및 자살위기자, 유가족	팀장/담당자
희망 dream	1월 ~ 12월	① 농약보관함 사업 - 주민 설명회 및 동의서 받기 - 협약식 및 간담회 - 농약보관함 보급 - 우울증, 생명사랑 교육 - 집단프로그램(4회기)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중간평가 - 간담회 및 평가회(년4회)	선정지역	팀장/담당자, 자살예방협의회

세부 사업	추진 시기	내용 및 수행방법	대상	비고
		② 희망문자 전송 - 주 2회 전송(화요일, 금요일) - 자살위기자 응급개입 - 자살고위험군, 만성등록자, 생명지킴이, - 사례관리 방문	자살고위험군, 만성등록자, 생명지킴이, 일반인	팀장/ 담당자
행복 dream	1월 ~ 12월	①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 청·장년층 - 주부 - 노인층	청·장년 주부 노인	팀장/ 담당자
		② GATE-KEEPER 교육 - 대학생 - 노인층 - 일반인(학부모)	대학생 노인돌보미 노인일자리 학부모	팀장/ 담당자
		③ 캠페인 - 대학생 - 일반인 - 노인층	대학생 일반인 노인층	팀장/ 담당자

<보도자료>

<증평군, 도내 자살률 최저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나간다>

2017-11-16

증평군이 도내 자살률 최저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나간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증평군의 인구 자살률은 2015년 기준 10만명당 39.4명으로 괴산군(41.6명)에 이어 충북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벽화그리기 사업과 캠페인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2016년 자살률이 10만명당 27.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수치는 지자체 간 자살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역의 인구를 10만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수치이다. 군은 올해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생명부스 설치 △정신건강 자가검진 키오스크 설치 △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증평군보건소(소장 김동희)는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기환)와 함께 증평읍 송산리 휴먼시아 2단지, 증평읍 신동리 주공 3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매주 2회씩 찾아가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12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우울증, 자살생각,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분야의 조기진단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의 발굴과 정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우울증 사전·사후검사 △우울증 예방교육 △아로마치료 △원예치료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교육 등이다.

군은 자살고위험군의 자살, 생명보호 안전망을 확충한다. 군은 12월 중 사업비 2200만원을 투입해 증평읍 송산리 휴먼시아 2단지, 신동리 주공 3단지에 ‘생명드림 힐링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생명드림 힐링부스 안에는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야간에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연결 되는 24시간 운영 전화기가 설치된다.

또 우울증 이완을 위해 부스 내에 힐링향기와 힐링음악 재생, 자살예방 스토리텔링 문구 삽입 등이 추진된다.

지난 8월에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스포츠센터와 군청, 여성회관에 ‘정신건강 자가검진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터치스크린에 검사자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이 실시되고 결과에 따라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뉜다. 고위험군일 경우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상담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매달 1회 자살예방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김동희 보건소장은“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정신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보건소 의약관리팀 이기영 835-4224)

2017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이 관 룰 연 구 위 원
김 정 하 연 구 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199
- 2. 연구의 범위 201

제2장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 202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205
-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208
-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213
- 5. 점검 평가의 종합 228

제3장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 1. 우리마을주치의제 231

표 차례

제2장

<표 2-1> 충청남도 2015년, 2016년 및 2017년 선택 항목	203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204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지표	207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208
<표 2-5>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209
<표 2-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210
<표 2-7>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210
<표 2-8>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211
<표 2-9> 2017년 행복경로당 운영	212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213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216
<표 2-12> 주거환경 비율	217
<표 2-13> 시·군별 의료시설 수	218
<표 2-14>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219
<표 2-15>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 지역)	220
<표 2-1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 지역)	221
<표 2-17>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 지역)	222
<표 2-18>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시설 수	223
<표 2-19> 면 지역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224
<표 2-20>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226
<표 2-21> 행복경로당 운영	227
<표 2-22>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229
<표 2-23> 2016년 대비 개선사항	230

제3장

<표 3-1> 추진 실적 232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법정동리 및 행정리	215
---------------------------	-----

제3장

<그림 3-1>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모습	233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2017년 점검 및 평가는 2015년과 2016년의 평가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평가 지표 및 방법 등의 연속성에서 추진하도록 함.
 - 2017년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및 평가는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 모니터링 과정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배경 및 목적, 그리고 평가 지표와 방법 등을 준수함.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지표도 포함되어 있기에, 농어촌 지역 간 다

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여 2015년 지자체별 선택 항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2015년 시도연구원과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필요
 - 2015년 시도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7년 현재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현황에 대한 점검·평가와 서비스기준 관련 지자체에서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의 발굴·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2.1.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그 중 지표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으로 범위를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함.
- 시간적 범위는 2017년 당해에 대한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이행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함.

2.2. 내용적 범위

- 2015년 충청남도에서 확정된 선택 항목의 2017년 현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2015년 시·도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 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함.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충청남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 첫째,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둘째,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분석
 - 셋째, 충청남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제 2 장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및 목표치 설정¹

1.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 2015년 충청남도의 선택 항목 지표의 선정 기준과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 변경은 다음과 같음.
- 2015년 선택 항목 선정 기준은 목표 적합성, 지속성, 관리가능성 대표성 시급성 5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지표 1차 선정하였고, 선정된 지표를 대상으로 자료의 구득 가능성, 농식품부 공통지표 중복성(차별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선택 항목 선정하였음. 또한 충남 농어촌 복지팀과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항목의 적합도 판단, 지표별로 중복성이 있는 경우 대체 지표를 통해 유사 지표를 통합하였음.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71~376. 재작성

- 목표 적합성 : 삶의 질, 농어촌서비스 기준 목표에 적합하여야 함.
 - 관리가능성 : 충남에서 지표 이행제고를 위해 노력 가능성
 - 대표성 : 지역을 대표하는 지표
 - 시급성 : 빠르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 지속성 :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점
 - 구득 가능성 : 통계자료 구득 가능
 - 차별성 :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지표와의 중복성 배제
- 기준에 의해 충청남도 2015년 선택 부문은 주거부문, 의료부문, 안전부문, 복지부문 4개 부문의 4개 선택 항목이 최종 선정됨. 그러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위해 2016년 목표치의 일부가 수정되었고, 2017년에는 2016년에 설정한 목표치를 준용하도록 함.
- 주거부문 : 변경 없음.
 - 의료부문 : 순회방문서비스에 대한 내용 삭제
 - 안전부문 :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면 지역 법정리 95% 이상 향상
 - 복지부문 : 변경 없음.

〈표 2-1〉 충청남도 2015년, 2016년 및 2017년 선택 항목

부문	선택 항목	2015년 세부내용	2016년 및 2017년 변경 세부내용
주거	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의료	진료서비스 접근성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이 40% 이상으로 하고, 어려운 지역은 순회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안전	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시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복지	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프로그램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표 2-2〉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구분	항목	내용		점검방법	'15년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주거	1)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 100	7.2%	11.7%	14.0%	16.9%	19.8%
의료	2)진료 서비스접근성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 × 100	22.1%	23%	24%	25%	25%
			(보완지표)의료 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 /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5.6%	5.6%	6.4%	7.2%	8.0%
안전	3)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받을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84.4%	85%	86%	87%	88%
복지	4)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81.2%	85%	85%	90%	95%

주 : 2016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충남부문)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²

2.1. 주거부문

■ 주거환경

- 건강 및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 환경 개선을 90% 이상으로 함.
- 환경부가 실시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전수조사와 충청남도에서 노후 석면 슬레이트 정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총 석면 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중 2011년부터 시작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누적 사업량의 비율을 분석함.

2.2. 의료부문

■ 진료서비스 접근성

-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40% 이상으로 함.
- 1차 이상의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한 면 지역 법정리 수/총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분석함.
- 의료취약 마을 방문 건강 관리서비스를 보완지표로 사용함.
- 방문 건강 관리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법정리에 대해 분석함.
-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 지역 법정리 수 / 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법정리 수 비율 분석함.
- 최종 진료서비스 접근성은 총 면 지역 법정리 중 1차 이상의 의료시설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77~380 재작성

생활권에 속한 면 지역 법정리 또는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의 비율을 분석함.

2.3. 안전부문

■ 구조구급출동

-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10분 이내 모든 면 지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함.
- 구조구급시설 접근성은 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며 ‘구조구급센터 5km 범위 내 위치한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비율’로 계산

2.4. 복지부문

■ 노인복지

-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음.
-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통하여 자료를 구축함.
-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읍·면·동 수 / 총 읍·면·동 수 비율로 계산

〈표 2-3〉 충남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 지표

구분	항목	내용		점검방법	기준 연도	구축 자료	조사 범위	지표특성
주거	주거 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2017년	충남도 내부자료	읍면동	H/W
의료	진료 서비스 접근성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017년	충남도 내부자료	면지역 법정리	H/W
			(보안지표)의료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2017년	충남도 내부자료	면지역 법정리	S/W
안전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도착가능한 면지역 행정리 수/총 면지역 행정리 수)×100	2017년	충남도 내부자료	행정리	접근성
복지	노인 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2017년	충남도 내부자료	읍면동	S/W

3. 이행실태 점검 결과

3.1. 주거부문 이행실태

3.1.1. 주거환경

$$\left(\frac{\text{사업 추진 수}}{\text{전체 주택 슬레이트 정비 사업 대상 수}} \right) \times 100$$

-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인 노후슬레이트 정비 현황 비율은 충청남도 전체 평균 15.9%이고, 군 지역은 22.8%, 시 지역은 10.0%임.
- 이는 2016년과 비교할 때, 전체적으로 0.9% 증가하였고, 군 지역은 1.5%, 그리고 시 지역은 0.5% 증가함.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4〉 주거환경 정비 현황

지표	구분	평균	총 정비사업 대상 수	노후 슬레이트 정비 현황	최대값	최소값
주거환경 정비 현황	전체	15.9%	68,765	10,918	금산군 (46.7%)	서산시 (5.6%)
	시 지역	10.0%	37,147	3,721	천안시 (21.2%)	서산시 (5.6%)
	군 지역	22.8%	31,618	7,197	금산군 (46.7%)	부여군 (9.2%)

3.2. 보건의료부문 이행실태

3.2.1. 진료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법정리 수 / 총 면 지역 법정리 수) \times 100$$

- 면 지역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접근성은 전체 평균 23.0%이고, 시 지역은 24.7%, 군 지역은 21.4%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할 때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접근성은 전체적으로 0.6% 증가하였고, 시 지역에서는 0.8%, 그리고 군 지역에서는 0.4% 증가한 수준에 그침.

〈표 2-5〉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지표	구분	비율	총 면지역 법정리 수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법정리 수	최대값	최소값
면지역 의료시설 접근성	전체	23.0%	1,637	377	계룡시 (35.7%)	예산군 (18.2%)
	시 지역	24.7%	813	201	계룡시 (35.7%)	공주시 (19.6%)
	군 지역	21.4%	824	176	태안군 (34.8%)	예산군 (18.2%)

- 의료시설 접근성에 대한 보완 지표로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우리마을주치의제를 조사함.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지에 한 달에 3번 의사 혹은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검진 및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받는 면 지역 법정리 대비 의료시설 접근성이 낮은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을 평가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없는 면 지역 법정리 중에서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 지역 법정리의 평균 비율은 9.6%로 나타남. 시 지역에서는 9.2%이고, 군 지역은 10.0%로 나타났으며,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0.3%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표 2-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지표	구분	접근성 낮은 면 지역 법정리 수	우리마을 주치의 혜택받는 면 지역 법정리 수	비율
우리마을 주치의제	전체	1,260	121	9.6%
	시 지역	612	56	9.2%
	군 지역	648	65	10.0%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를 합하여 진료서비스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법정리를 조사함.
-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법정리와 우리마을주치의제가 시행되고 있는 면 지역 법정리의 비율은 충남 전체 30.4%이고, 시 지역은 31.6%, 군 지역은 29.2%로 나타남.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는 0.8%, 시 지역은 1.0%, 군 지역은 0.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2-7〉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가결과

지표	구분	비율	총 면 지역 법정리 수	법정리 수 (양호+혜택)	최대값	최소값
의료 시설 접근성	전체	30.4%	1,637	498	태안군 (43.5%)	예산군 (25.2%)
	시 지역	31.6%	813	257	계룡시 (42.9%)	공주시 (25.9%)
	군 지역	29.2%	824	241	태안군 (43.5%)	예산군 (25.2%)

3.3. 안전부문 이행실태

3.3.1. 구조구급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 이내 면 지역 행정리 / 총 면 지역 행정리)×100

- 2017년 현재 구조구급센터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행정리 비율은 충청남도 평균 79.4%이고 시 지역은 84.2%, 군 지역 74.3%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1.9%가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2.4% 개선되었으며, 군 지역은 1.3%가 개선됨.

〈표 2-8〉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지표	구분	비율	총 행정리 수	접근성 양호한 행정리 수	최대값	최소값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전체	79.4%	3,331	2,645	계룡시 (100.0%)	예산군 (54.8%)
	시 지역	84.2%	1,718	1,446	계룡시 (100.0%)	천안시 (70.5%)
	군 지역	74.3%	1,613	1,199	서천군 (89.0%)	예산군 (54.8%)

3.4 복지부문 이행실태

3.4.1 노인복지

$$(\text{행복경로당 조성 운영 읍·면·동 수} / \text{시·군 총 읍·면·동 수}) \times 100$$

- 행복경로당은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접근을 편리하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
- 2017년 현재 175개 읍·면·동에 행복경로당이 조성되어 있어 행복경로당 조성 비율은 84.5%로 나타났고, 시 지역은 78.0%이고, 군 지역은 95.0%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은 5.6%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에서는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2017년 행복경로당 운영

지표	구분	비율	총 읍면동 수	행복 경로당 운영 중인 읍면동 수	최대값	최소값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전체	84.5%	207	175	-	공주시 (25.0%)
	시 지역	78.0%	127	99	보령, 아산, 서산, 논산 (100.0%)	공주시 (25.0%)
	군 지역	95.0%	80	76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100.0%)	부여군 (75.0%)

4.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지표별 특성 분석

4.1. 충청남도 선택 항목 지표 조사 범위 및 분석 방법

4.1.1. 선택 항목 지표 조사범위

■ 조사범위 선정 기준

- 공간 접근성지표의 조사 범위는 전국 광역 지자체에서 구득할 수 있는 가장 세밀한 공간 범위인 행정리를 최소 단위로 하고, 해당 지표 및 관련 자료의 특성에 따라 법정리 단위까지로 확대해 적용함.
- 공간 접근성지표 외에는 조사 범위를 시·군 단위로 함.

■ 조사범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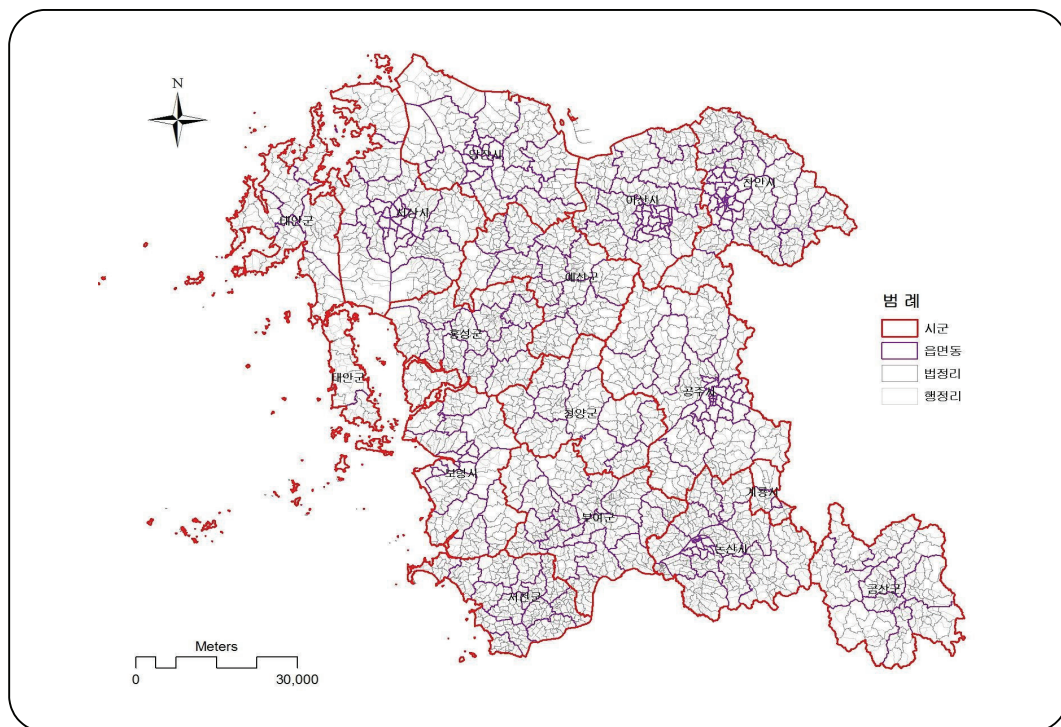
〈표 2-10〉 시·군별 법정리 및 행정리 현황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전체	전체	283	2,094	4,417
	읍 지역	24	335	964
	면 지역	137	1,637	3,331
	동 지역	122	122	122
시 지역	전체	203	1,126	2,390
	읍 지역	13	191	550
	면 지역	68	813	1,718
	동 지역	122	122	122
군 지역	전체	80	968	2,027
	읍 지역	11	144	414
	면 지역	69	824	1,613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천안시	전체	42	178	457
	읍 지역	4	63	203
	면 지역	8	85	224
	동 지역	30	30	30
공주시	전체	37	188	272
	읍 지역	1	18	32
	면 지역	9	143	213
	동 지역	27	27	27
보령시	전체	21	111	245
	읍 지역	1	13	35
	면 지역	10	88	200
	동 지역	10	10	10
아산시	전체	30	163	417
	읍 지역	2	26	100
	면 지역	9	118	298
	동 지역	19	19	19
서산시	전체	24	138	278
	읍 지역	1	10	29
	면 지역	9	115	236
	동 지역	13	13	13
논산시	전체	24	185	435
	읍 지역	2	26	86
	면 지역	11	148	338
	동 지역	11	11	11
계룡시	전체	4	15	54
	면 지역	3	14	53
	동 지역	1	1	1
당진시	전체	22	148	232
	읍 지역	2	35	65
	면 지역	9	102	156
	동 지역	11	11	11
금산군	전체	10	106	255
	읍 지역	1	9	39
	면 지역	9	97	216
부여군	전체	16	191	433
	읍 지역	1	22	53
	면 지역	15	169	380

구분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동)리
서천군	전체	13	173	316
	읍 지역	2	24	52
	면 지역	11	149	264
청양군	전체	10	115	183
	읍 지역	1	11	26
	면 지역	9	104	157
예산군	전체	12	141	311
	읍 지역	2	25	83
	면 지역	10	116	228
홍성군	전체	11	177	342
	읍 지역	2	34	90
	면 지역	9	143	252
태안군	전체	8	65	187
	읍 지역	2	19	71
	면 지역	6	46	116

〈그림 2-1〉 법정동리 및 행정리



4.2. 주거환경 지표 특성 분석

4.2.1. 지표 평가 기준 자료

■ 주택 슬레이트 정비

- 주거환경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 정보를 기반으로 함.

〈표 2-11〉 시·군별 주택 노후 슬레이트 건물 현황

구분	슬레이트 사업대상 건물 수	2016년까지 누적 사업추진 수	2017년 사업추진 수
전체	68,765	8,818	2,100
시 지역	37,147	2,886	835
군 지역	31,618	5,932	1,265
천안시	3,073	592	58
공주시	6,252	317	96
보령시	5,432	349	107
아산시	6,932	435	147
서산시	4,413	185	63
논산시	6,080	497	200
계룡시	147	24	6
당진시	4,818	487	158
금산군	6,446	2,551	460
부여군	9,841	736	173
서천군	6,571	1,001	265
청양군	2,124	614	96
예산군	819	252	71
홍성군	2,473	339	113
태안군	3,344	439	87

4.2.2. 주거환경 특성 분석

- 충남 전체의 평균 주거환경 비율은 15.9%로 조사됨.
- 시 지역에서는 천안(21.2%), 계룡(20.4%), 당진(13.4%), 논산(11.5%)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보령 및 아산, 공주, 서산은 주거환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에서는 금산(46.7%), 홍성(39.4%), 청양(33.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천, 예산, 태안, 부여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충남지역의 주거환경 현황은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2016년에 비해서 충남지역 전체적으로 0.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충남지역에서 주택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12〉 주거환경 비율

구분	사업추진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0,918	-	15.9%	46.7%	5.6%
천안시	650	21.2%	10.0%	21.2% (천안시)	5.6% (서산시)
공주시	413	6.6%			
보령시	456	8.4%			
아산시	582	8.4%			
서산시	248	5.6%			
논산시	697	11.5%			
계룡시	30	20.4%			
당진시	645	13.4%			
금산군	3,011	46.7%	22.8%	46.7% (금산군)	9.2% (부여군)
부여군	909	9.2%			
서천군	1,266	19.3%			
청양군	710	33.4%			
홍성군	323	39.4%			
예산군	452	18.3%			
태안군	526	15.7%			

4.3. 진료서비스 접근성 지표 특성 분석

4.3.1. 지표평가 기준자료

■ 의료시설 지표평가 기준자료

- 의료시설은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에서 관리하는 주소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함. 의료시설은 보건기관을 포함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함.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병원의 기준을 갖춘 보건소)을 포함함.

〈표 2-13〉 시·군별 의료시설 수

구분	의료시설 수	면 지역 의료시설 수	접근성 양호한 법정리 수(면 지역)
전체	2,687	1,566	642
시 지역	2,024	815	395
군 지역	663	751	247
천안시	762	85	61
공주시	165	143	36
보령시	141	82	30
아산시	322	117	87
서산시	181	120	39
논산시	202	159	56
계룡시	48	14	38
당진시	203	95	48
금산군	89	97	34
부여군	107	131	57
서천군	90	113	40
청양군	48	107	27
예산군	116	140	40
홍성군	130	116	27
태안군	83	47	22

■ 우리마을주치의제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보건 서비스 제공, 생명 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독자 사업임.

〈표 2-14〉 시·군별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구분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마을 수	면 지역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행정리 수	면 지역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수
전체	171	148	146
시 지역	90	73	72
군 지역	81	75	74
천안시	14	11	11
공주시	13	10	10
보령시	11	10	10
아산시	12	10	10
서산시	11	9	9
논산시	15	11	11
계룡시	2	2	1
당진시	12	10	10
금산군	10	11	10
부여군	16	16	16
서천군	13	12	12
청양군	10	9	9
예산군	12	11	11
홍성군	12	9	9
태안군	8	7	7

4.3.2. 진료서비스지표 특성 분석

- 면 지역 의료시설 접근성지표는 면 지역 전체 법정리 수에 대한 1차 이상의 의료(진료)시설이 있는 법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표 2-15〉 의료시설 접근성지표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총 법정리 수 (면 지역)	접근성 양호한 법정리 수(면 지역)	비율
전체	1,637	377	23.0%
시 지역	813	201	24.7%
군 지역	824	176	21.4%
천안시	85	23	27.1%
공주시	143	28	19.6%
보령시	88	26	29.5%
아산시	118	32	27.1%
서산시	115	24	20.9%
논산시	148	38	25.7%
계룡시	14	5	35.7%
당진시	102	25	24.5%
금산군	97	18	18.6%
부여군	169	39	23.1%
서천군	149	29	19.5%
청양군	104	23	22.1%
예산군	143	26	18.2%
홍성군	116	25	21.6%
태안군	46	16	34.8%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충남 전체 23.0%이고, 시 지역은 24.7%, 군 지역은 21.4%로 나타남.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의료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완 지표로서 의료 시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 우리마을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정리를 포함함.
- 의료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제외한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는 총 121개로 전체 9.6%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2016년과 비교할 때, 우리마을주치의 혜택을 받는 면 지역 법정리 수는 3곳이 증가하였고, 비중은 0.3% 증가함.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법정리 비율은 군 지역이(10.0%)이 시 지역(9.2%)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접근성 낮은 면 지역 법정리 수	혜택 법정리 수	비율(%)
전체	1,260	121	9.6%
시 지역	612	56	9.2%
군 지역	648	65	10.0%
천안시	62	8	12.9%
공주시	115	9	7.8%
보령시	62	6	9.7%
아산시	86	6	7.0%
서산시	91	8	8.8%
논산시	110	9	8.2%
계룡시	9	1	11.1%
당진시	77	9	11.7%
금산군	79	9	11.4%
부여군	130	14	10.8%
서천군	120	11	9.2%
청양군	81	9	11.1%
예산군	117	10	8.5%
홍성군	91	8	8.8%
태안군	30	4	13.3%

- 의료시설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보완 지표인 우리마을주치의제 혜택 지역을 포함한 충청남도 면 지역 진료서비스 접근성 평균은 30.4%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은 31.6%, 군 지역은 29.2%로 나타남.
- 시 지역에서는 계룡(42.9%), 천안(36.5%), 보령(36.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서산과 공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군 지역에서는 태안(43.5%), 부여(31.4%), 청양(30.8%)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서천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시설 접근성은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2016년에 비해서 충남 전체적으로 진료 접근성은 0.8%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1.0%, 그리고 군 지역은 0.6% 개선되었음.

〈표 2-17〉 진료서비스 평가결과(면 지역)

구분	총 법정리 수 (면 지역)	면 지역 법정리 수 (양호+혜택)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1,637	498	-	30.4%	43.5%	25.2%
천안시	85	31	36.5%	31.6%	42.9% (계룡시)	25.9% (공주시)
공주시	143	37	25.9%			
보령시	88	32	36.4%			
아산시	118	38	32.2%			
서산시	115	32	27.8%			
논산시	148	47	31.8%			
계룡시	14	6	42.9%			
당진시	102	34	33.3%			
금산군	97	27	27.8%	29.2%	43.5% (태안군)	25.2% (예산군)
부여군	169	53	31.4%			
서천군	149	40	26.8%			
청양군	104	32	30.8%			
예산군	143	36	25.2%			
홍성군	116	33	28.4%			
태안군	46	20	43.5%			

4.4.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 분석

4.4.1. 지표평가 기준자료

가. 면 지역 구조구급센터

- 충청남도 인력 배치 된 구조구급센터 수는 전체 73개소이고, 이 중 면 지역에 구조구급센터 수는 34개소임. 면 지역 구조구급센터 중 시 지역은 18개소, 군 지역 16개소임.

〈표 2-18〉 시·군별 구조구급센터 시설 수

구분	구조구급센터	면 지역 구조구급센터
전체	73	34
시지역	45	18
군지역	28	16
천안시	11	2
공주시	5	2
보령시	5	2
아산시	6	4
서산시	6	3
논산시	5	1
계룡시	1	1
당진시	6	3
금산군	3	2
부여군	5	4
서천군	5	3
청양군	2	1
홍성군	5	2
예산군	4	2
태안군	4	2

4.4.2. 구조구급출동 지표 특성 분석

- 구조구급센터 접근성지표는 전체 면 지역 행정리 수에 대한 구조구급센터로부터 5km이내에 도착이 가능한 면 지역 행정리 수의 비율로 평가함.
- 구조구급센터 접근성이 양호한 면 지역 행정리의 평균은 79.4%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은 84.2%, 군 지역은 74.3%로 나타남.

〈표 2-19〉 면 지역 구조구급센터 접근성

구분	총 면지역 행정리 수	접근성 양호한 면지역 행정리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3,331	2,645	-	79.4%	100.0%	54.8%
천안시	224	158	70.5%	84.2%	100.0% (계룡시)	70.5% (천안시)
공주시	213	181	85.0%			
보령시	200	161	80.5%			
아산시	298	241	80.9%			
서산시	236	185	78.4%			
논산시	338	321	95.0%			
계룡시	53	53	100.0%			
당진시	156	146	93.6%			
금산군	216	165	76.4%	74.3%	89.0% (서천군)	54.8% (예산군)
부여군	380	263	69.2%			
서천군	264	235	89.0%			
청양군	157	115	73.2%			
홍성군	252	215	85.3%			
예산군	228	125	54.8%			
태안군	116	81	69.8%			

- 시 지역에서는 계룡(100.0%), 논산(95.0%), 당진(93.6%)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 지역에서는 서천(89.0%), 홍성(85.3%) 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2.4%가 개선되었고, 시 지역은 3.5% 개선되었으며, 군 지역은 1.3%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4.5. 노인복지 지표 특성 분석

4.5.1. 지표평가 기준자료

- 충청남도 시·군별 행복경로당 조성 및 운영 현황은 충청남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의 내부 자료를 구득하여 사용함.
- 2017년 현재 충청남도 전체 190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시 지역은 106개소, 군 지역은 8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한편 접근 편리성 분석을 위해 행복경로당이 운영되는 읍·면·동 수를 조사하면, 충남 전체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은 181개, 시 지역은 99개, 군 지역 82개임.
 - 이는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의 행복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표 2-20〉 시·군별 행복경로당 운영 현황

구분	행복경로당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전체	190	181
시지역	106	99
군지역	84	82
천안시	24	20
공주시	4	7
보령시	23	15
아산시	17	17
서산시	15	15
논산시	15	16
계룡시	2	3
당진시	6	6
금산군	15	11
부여군	12	13
서천군	13	14
청양군	10	11
홍성군	12	11
예산군	13	13
태안군	9	9

4.5.2. 노인복지 특성 분석

- 충남 전체의 행복경로당 읍·면·동별 운영 평균은 84.5%로 조사되었고, 시 지역에서는 78.0%, 그리고 군 지역은 95.0%인 것으로 나타남.
 - 행복경로당 운영 여부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1개 읍·면·동에 2개 이상이 있어도 1개로 평가하게 됨.
- 행복경로당은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0개 시·군에서 100%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반면 상대적으로 천안(80.0%), 부여(75.0%), 계룡(50.0%), 당진(42.9%), 공주(25.0%)로 나타나고 있음.

- 2016년과 비교해 보면 충남 전체적으로 3.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은 5.6%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에서는 개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이 충남의 특화사업으로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복경로당이 상대적으로 공급되지 않은 시·군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근간 100%의 운영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 개발이 요구됨.

〈표 2-21〉 행복경로당 운영

구분	총 읍·면·동 수	행복경로당 운영 읍·면·동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207	175	-	84.5	100.0%	25.0%
천안시	30	24	80.0%	78.0	100.0%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25.0% (공주시)
공주시	16	4	25.0%			
보령시	16	16	100.0%			
아산시	17	17	100.0%			
서산시	15	15	100.0%			
논산시	15	15	100.0%			
계룡시	4	2	50.0%			
당진시	14	6	42.9%			
금산군	10	10	100.0%	95.0	100.0%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75.0% (부여군)
부여군	16	12	75.0%			
서천군	13	13	100.0%			
청양군	10	10	100.0%			
홍성군	11	11	100.0%			
예산군	12	12	100.0%			
태안군	8	8	100.0%			

5. 점검 평가의 종합

5.1.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 당초 계획에서 2017년의 목표치를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14.0%,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비율이 24.0%,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이 6.4%, 구조구급출동이 86.0%, 그리고 노인복지가 85.0%로 제시되었음.
- 달성된 실적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15.9%,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비율이 23.0%,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이 9.6%, 구조구급출동이 79.4%, 그리고 노인복지가 84.5%로 나타남.
- 목표달성율을 살펴보면, 주거환경이 113.6%,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 지역 비율이 95.8%, 우리마을 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이 150.0%, 구조구급출동이 92.3%, 그리고 노인복지가 99.4%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대체적으로 당초 목표치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구조구급활동의 경우, 당초 실적의 수치와 2017년 평가의 수치가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서 2015년 실적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표 2-22〉 당초 목표의 달성 정도

항목	지표내용	'17년 목표	'17년 실적	목표 달성율
주거 환경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14.0%	15.9%	113.6%
진료 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4.0%	23.0%	95.8%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6.4%	9.6%	150.0%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86.0%	79.4%	92.3%
노인 복지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 된 읍면 수)×100	85.0%	84.5%	99.4%

5.2. 2016년 대비 개선사항

- 2016년 대비 각 지표별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주거환경은 0.9% 개선되었고, 진료서비스 접근성 중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비율은 0.6%,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 법정리 비율은 0.3%, 구조구급출동이 2.4%, 그리고 노인복지는 3.3% 개선되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지역의 농어촌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향후 목표 달성율이 낮은 1차 이상 의료시설 혜택을 받는 법정리 비율과 구조구급활동에 초점을 두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2-23〉 2016년 대비 개선사항

항목	지표내용	'16년 실적	'17년 실적	'16년 대비 달성율
주거 환경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15.0%	15.9%	0.9%
진료 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2.4%	23.0%	0.6%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9.3%	9.6%	0.3%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77.0%	79.4%	2.4%
노인 복지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81.2%	84.5%	3.3%

제 3 장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1. 우리마을주치의제

1.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민선5기 공약으로 추진된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남도 독자 사업임.
- 의료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월 3회 이상 방문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보건 서비스제공, 생명사랑 행복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
- 우리마을주치의제는 농어촌 지역 의료취약지역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 대상 마을에는 매달 한 차례 이상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문, 진료·상담은 물론, 각종 건강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함.

1.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규모 : 273백만 원(도비 30%, 시·군비 70%)
- 사업주관 : 도(보건정책과), 시·군(보건소 등)
- 사업내용
 - 마을별 월 3회 이상 방문(월 2회 의사 참여 의무)
 - 내과·한방·치과진료 등
 -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 60세 이상 치매선별검사 및 65세 이상 우울척도검사 실시
 - 보건교육 실시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 신청 또는 선정기준 : 의료취약지역 마을(시·군 선정)

1.3 추진실적

〈표 3-1〉 추진 실적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개소	169개 마을	169개 마을	169개 마을	171개 마을
사업비	273백만원	273백만원	273백만원	273백만원

〈그림 3-1〉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모습



자료: <http://www.hankookilbo.com/v/31e0a0ac13d248739709a70fac59371e>

1.4. 주요 성과 및 기대효과

- 농어촌 지역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
- 농어촌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자가 관리능력 향상 기대
-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농어촌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농번기 시기 의료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

2017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이 민 수 연 구 위 원
이 성 재 교 수

차 례

제1장 서론

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241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242
3.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 242

제2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244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48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257

제3장 요약 및 제언

1. 2017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272
2.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278

제4장 삶의 질 우수사례 - 삼례문화예술촌

1. 사례 개요 280
2. 사업 개요 282
3. 운영 현황 283
4. 세부 사업 284
5. 성공 요인 290

- 참고문헌 294

표 차례

제2장

- <표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48
- <표 2-2> 독거노인 돌봄 259
- <표 2-3> 노인 치매 돌봄 261
- <표 2-4> 어울림 학교 263
- <표 2-5> 그룹홈 혜택 265
- <표 2-6> 노인일자리 현황 267
- <표 2-7>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269
- <표 2-8>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271

제3장

- <표 3-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항목 273
- <표 3-2>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변화 274
- <표 3-3>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변화 275
- <표 3-4> 어울림 학교 지정률 변화 275
- <표 3-5> 그룹홈 이용률 변화 276
- <표 3-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변화 277
- <표 3-7>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변화 277
- <표 3-8>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변화 278

제4장

- <표 4-1> 관람객 수 현황 283
- <표 4-2> 각 관별 현황 284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246
--	-----

제 1 장

서론1

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
- 전라북도의 경우도 정부의 계획에 부응하여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음.
 -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설정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전라북도 농어촌 현실과 여건을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265~267 재작성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 농어촌 주민의 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기준 항목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선정하고,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2.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

- 2015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맞추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함.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14년에 종료, 새로운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2015년부터 추진 중임.
- 2015년 개편안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이원화함.
 - 핵심항목은 ‘국가 최소 기준’으로서 중앙정부에서 운용하며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에도 필수항목으로 포함함.
 - 선택항목은 지역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운용함.

3.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

- 핵심 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임.

- 핵심 항목에서는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국가 장기 목표와 함께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기간(2015~2019) 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제시함.
 -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점검함(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 지원기관).
- 선택 항목은 지역 여건, 실태,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함.
- 선택 항목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선택 항목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핵심 항목의 점검방법을 참조하여 각 지자체별 여건과 선택항목 기준에 맞게 점검 방법을 정해서 운용함.

제 2 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2

1. 선택 항목 선정 개요

1.1. 목적 및 원칙

■ 전북 특성을 반영한 지표

- 전라북도 삶의 질 향상 내용이 핵심 정책 아젠다로 선정되어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함.
- 전라북도의 모든 실국 사업을 고려하지만, 농수산국의 소관업무로 구체화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 타 시도와 차별화되어 전라북도가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를 선택항목으로 우선 고려함.

- 과소화 및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에 비해 문화·복지 향유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북도 농촌의 문화·복지 향유 기반 확대와 관련된 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 농어촌 주민 체감형 지표

-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
- 시설 중심의 지표를 지양하고 농어촌 주민의 생활 및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를 개발함.
 - 농어촌 주민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활동, 동호회 활동, 체육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부합하는 지표

- 국가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충을 목적으로 함.
- 전라북도 농어촌 공공서비스 중에서 전라북도가 정책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지표

■ 지표의 고유 특성 고려

- 지표의 대표성
 - 전라북도 삶의 질을 대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 선정함.
- 자료 확보 용이성
 - 지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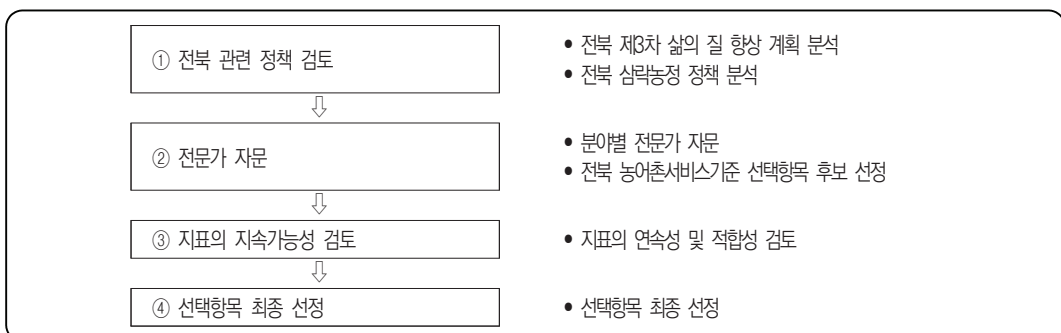
- 지표의 신뢰성
 - 지표 설정에 필요한 자료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지자체 노력 가능성
 -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 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가능성이 높은 지표

1.2.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기존 연구(이민수·이정희, 2016)를 통해 전라북도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은 전라북도 관련 정책 검토, 지표의 지속성,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통해 선정함.
 - [1단계] 전북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민선6기 핵심정책인 전북 삼락농정 정책 분석
 - [2단계] 전북 선택항목 후보군 선정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시
 - [3단계] 지표의 연속성과 자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합성 검토
 - [4단계] 지표선정 기준에 부합한 선택항목 최종 결정

〈그림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방법



■ 최종 선택 항목 선정

-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후보 항목에 대한 적합도, 시급성, 차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6개 부문 8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함.
 -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독거노인 돌봄, 노인 치매 돌봄을 선택 항목으로 선정함.
 -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기초 학력, 어울림학교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기초 학력은 자료 미비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울림학교를 선정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그룹홈, 석면슬레이트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석면슬레이트는 자료미비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그룹홈을 선정함.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문화·여가 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동호인 항목을 선정함.
 - 안전 부문에서는 어업인안전 항목을 선정함.

- 2016년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에 수행할 본 연구에서는 8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제외함.
 - 2016년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지표의 경우 최종 지표에서 제외하였으나 2017년 연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일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표에 포함함.
 - 어업인 안전 지표는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 수와 행정 예산 및 지원 인원 수에 변화가 없어 최종 지표에서는 삭제함.
 - *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3개 시·군의 어업인 보험 가입실적을 살펴보면 어선원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공제 보험 등 사업량이 '16년과 '17년 모두 4,930건으로 동일하여 변화 없음.

〈표 2-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비고
보건 복지	독거노인돌봄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인차매돌봄	시군 내에서 차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 여건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어울림학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주 생활 기반	그룹홈	주거 및 식생활 자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제 일자리	노인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대해 일자리를 제공한다.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동호인	문화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전	어업인안전	어업인의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로 인명적 조업활동을 보장한다.	제외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2.1. 독거노인돌봄

■ 선정배경

- 전라북도 농어촌 노인은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고, 이는 16개 시·도 중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 비율임. 특히, 전북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초고령사회 진입함(진안·무주·임실·순창 노인인구 30% 초과).
-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함.
 - 전라북도는 도 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독거노인의 경우 거동이나 소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북 농어촌 독거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 내용

농어촌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자 / 독거노인 수)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각농정
독거노인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농어촌 노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재가노인 자원 서비스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 - 고령농가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2.2. 노인 치매 돌봄

■ 선정배경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함께 치매노인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도차원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치매노인의 많은 경우가 주변에서 돌봄을 담당할 가족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북 농어촌 치매 독거노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야 함.

■ 내용

농어촌 지역의 중증 치매노인은 시군 내에서 치매 극복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 중증 치매환자 노인 수)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노인 치매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농어촌 노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 - 고령농가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2.3. 어울림학교

■ 선정배경

- 전라북도에서 학생 수 5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는 전체 762교 중 241교 (31.6%)이며, 이 중 92.9%는 농어촌 학교임. 이와 함께 농어촌 학교는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저소득층이 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도시와 차별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어촌 학교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으로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내용

읍면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학교 수)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도 교육청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어울림 학교	- 어울림학교 지정·운영	

2.4. 그룹홈

■ 선정배경

-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주요 사회복지이용시설을 살펴보면, 시부가 총 31개소로 전체 이용시설의 72.1%를 차지하고 있고, 군부는 12개소로 27.9%에 불과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임.
- 따라서 부족한 노인 복지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로당을 활용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연계가 중요함.

■ 내용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점검방법

- (그룹홈 혜택자 수/ 그룹홈 수요자)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라농정
그룹홈	- 경로당 시설·운영 지원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 - 고령농가 건강지원 서비스 확충

2.5. 노인일자리

■ 선정배경

- 농어촌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내용

일자리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노인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노인 일자리 수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노인 일자리	- 농어촌 노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	- 농업농촌 인력 지원 - 도농연계6차산업화 사업

2.6. 통합문화이용권

■ 선정배경

- 농어촌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은 문화향유 기회가 적고, 도시에 비해 질 높은 문화향유 접근성도 부족함.
-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으므로,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내용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계층은 문화관람 향유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금액)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통합문화 이용권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생활문화센터 조성	- 농업농촌 문화복지 지역종합센터 운영

2.7. 문화 동호인

■ 선정배경

-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임. 따라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지표가 필요함.

■ 내용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점검방법

- $(\text{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 \text{농어촌 인구 수}) \times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문화동호인	-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 농어촌 문화예술 기반 확충 -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

2.8. 어업인안전

■ 선정배경

-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어업인은 어업 활동이 용이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움.
-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어업인 안전 공제 보험 가입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함.

■ 내용

어업인의 어업 활동에 대한 안전 보장 강화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점검방법

- (안전 공제 가입 어업인 수 / 어업인 수) × 100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관련정책

선택 항목	전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삼락농정
어업인 안전	-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3.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3.1. 독거노인 돌봄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은 지역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자 / 독거노인 수) × 100

■ 자료원

- 독거노인 수 : 통계청(KOSIS)
 - 시군별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자 수 + 그룹홈 경로당 이용노인 수(1개소 당 10명으로 추정)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6년 말 독거노인 수는 60,243명으로 이 중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2.1%인 19,320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23.1%의 독거노인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49.0%로 가장 높았고, 익산시가 13.8%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23.6%p 정도 높은 46.7%의 독거노인이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 지역의 경우 진안군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111.48%로 가장 높았고, 부안군이 24.7%로 가장 낮았음.

〈표 2-2〉 독거노인 돌봄

구분	독거 노인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평균(%)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비율(%)	평균(%)
전체	60,243	19,320		32.1	-	31.5
군산시	8,713	1,450	16.64	23.1	17.5	26.2
익산시	10,297	1,425	13.84		15.0	
정읍시	7,130	1,365	19.14		21.2	
남원시	5,177	1,425	27.53		36.1	
김제시	6,138	3,010	49.04		54.1	
완주군	3,582	2,400	67.00	46.7	56.4	39.9
진안군	1,942	2,165	111.48		118.7	
무주군	1,860	1,725	92.74		40.1	
장수군	1,694	540	31.88		27.3	
임실군	2,321	740	31.88		32.8	
순창군	2,412	730	30.27		26.8	
고창군	4,680	1,285	27.46		23.3	
부안군	4,297	1,060	24.67		25.8	

2.2. 노인치매돌봄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의 중증 치매 노인은 시·군내에서 치매 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 중증 치매 환자 노인 수) × 100

■ 자료원

- 치매노인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2014년 시군별 치매 유병률을 기초로 하여 2016년 치매노인 수를 추정함
 - 치매노인 수 = 중증치매(SCI) 노인 + 경증치매(MCI) 노인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내자 +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자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6년 치매노인 수는 78,331명으로 이 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은 36.2%인 28,368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35.1%의 치매 노인이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정읍시의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44.73%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30.95%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3%p 정도 높은 38.1%의 치매 노인이 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 지역의 경우 순창군의 치매 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율이 46.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이 32.88%로 가장 낮았음.

〈표 2-3〉 노인 치매 돌봄

구분	치매 노인 수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	비율(%)	평균(%)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비율(%)	평균(%)
전체	78,331	28,368		36.2	-	35.0
군산시	13,119	4,061	30.95	35.1	30.9	34.3
익산시	14,809	4,891	33.03		32.7	
정읍시	8,435	3,773	44.73		42.5	
남원시	6,232	2,291	36.76		35.2	
김제시	7,423	2,571	34.63		33.0	
완주군	5,717	2,019	35.32	38.1	34.6	36.3
진안군	2,451	970	39.58		37.6	
무주군	2,269	746	32.88		31.5	
장수군	2,089	846	40.49		38.9	
임실군	2,835	1,157	40.81		38.2	
순창군	2,727	1,268	46.49		43.4	
고창군	5,314	2,028	38.16		36.1	
부안군	4,911	1,747	35.58		33.9	

2.3. 어울림학교

■ 서비스기준

- 읍·면 지역 초·중학교 어울림학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

■ 점검방법

- (어울림학교 지정 초·중학교 / 읍·면 초·중학교 수) × 100

■ 자료원

-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 전라북도 교육청 행정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7), 2017년도 학교현황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정된 어울림학교 초·중학교 수
- 읍면 초·중학교 수 : 전라북도 교육청 통계자료
 - 전라북도 교육청(2017), 시군별 학교현황
 - 2017년도 전라북도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학교 수

■ 점검결과

- 전라북도 읍·면지역의 2017년 초·중학교 392개 중에서 어울림학교로 지정된 학교 비율은 26.0%인 102개임³.
 - 2017년 어울림학교 지정비율을 전년 대비 약 3%p 정도 증가하여 13개교가 증가함.
 - 초등학교는 전체 읍·면 초등학교 수 261개 중 90개의 학교가 어울림 학교로 지정됨.
 - 중학교는 전체 읍·면 중학교 수 131개 중 12개의 학교가 어울림 학교로 지정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35.8%의 읍·면 초·중학교가 어울림학교로 지정되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어울림학교 지정 비율이 55.6%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26.5%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17.7%p 정도 낮은 18.1%의 초·중학교가 어울림학교 혜택을 받고 있음.
 - 군 지역의 경우 고창의 어울림학교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8.3%로 가장 낮았음.

3 전북 2017년도 어울림학교 지정은 103개임.

-전년도와 동등조건 비교를 위해 고등학교인 해리고등학교(2017년 지정) 1교 제외

〈표 2-4〉 어울림 학교

구분	읍면 학교수			어울림학교수			비율 (%)	평균 (%)	2016년 모니터링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비율	평균
전체	261	131	392	90	12	102	-	26.0	-	22.8
군산시	26	8	34	8	1	9	26.5	35.8	21.2	32.0
익산시	30	12	42	12	0	12	28.6		21.4	
정읍시	22	13	35	11	3	14	40.0		34.3	
남원시	19	10	29	8	0	8	27.6		27.6	
김제시	28	8	36	18	2	20	55.6		55.6	
완주군	30	14	44	5	0	5	11.4		9.1	
진안군	13	10	23	2	0	2	8.7	4.3	15.3	
무주군	10	6	16	2	0	2	12.5	12.5		
장수군	9	7	16	2	1	3	18.8	12.5		
임실군	15	9	24	2	0	2	8.3	8.3		
순창군	15	7	22	5	1	6	27.3	13.6		
고창군	21	14	35	8	2	10	28.6	28.6		
부안군	23	13	36	7	2	9	25.0	25.0		
								18.1		

2.4. 그룹홈

■ 서비스기준

-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은 읍면 내에서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그룹홈 경로당 수/ 경로당 수) × 100

■ 자료원

- 그룹홈 경로당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그룹홈 경로당 현황
 - 2017년까지 기존 경로당 중 취사 및 숙식이 가능한 그룹홈으로 전환한 경로당 수
- 경로당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경로당 현황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7년 경로당은 6,014개소로 이 중 그룹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11.7%인 706개소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 통합시의 경우는 7.3%의 경로당이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도농통합시의 경우 김제시의 그룹홈 서비스 혜택율이 24.4%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1.0%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도농통합시에 비해 8.8%p 정도 높은 16.1%의 경로당이 숙식이 제공되는 그룹홈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었음.
 - 군 지역의 경우 진안의 그룹홈 서비스 이용률이 48.5%로 가장 높았고, 순창군이 그룹홈 경로당이 8개소로 이용률이 가장 낮은 2.2%로 나타남.

〈표 2-5〉 그룹홈 혜택

구분	경로당 수	그룹홈 경로당 수	비율(%)	평균(%)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비율(%)	평균(%)
전체	6,014	706		11.7		10.2
군산시	503	5	1.0	7.3	0.9	10.0
익산시	668	10	1.5		2.1	
정읍시	684	19	2.8		4.3	
남원시	484	30	6.2		14.7	
김제시	620	151	24.4		27.8	
완주군	433	155	35.8	16.1	25.9	10.4
진안군	328	159	48.5		50.2	
무주군	269	100	37.2		0.0	
장수군	273	8	2.9		0.0	
임실군	343	19	5.5		5.6	
순창군	370	8	2.2		0.3	
고창군	574	21	3.7		0.0	
부안군	465	21	4.5		4.8	

2.5. 노인 일자리

■ 서비스기준

- 일자리가 필요한 농어촌 지역 노인은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노인 경제 활동 참여자 수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 100

■ 자료원

- 노인 일자리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분석
 - 2017년 현재 소득이 있는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수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2017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전북추출)
 - 일자리 필요 노인 수 = 노인 경제 활동 참여자 수 + 노인 경제 활동 미참여자 중 일자리 의사가 있는 노인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7년 경제 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를 추정하면 118,689명으로 이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제 활동 참여자 비율은 69.1%인 68,308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일자리 필요 노인 중 75.5%가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지역의 경우는 경제 활동 참여 희망자 중 일자리에 참여하고 노인의 비율이 60.0%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경제 활동 참여 의사가 있는 노인 중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임실군으로 80.7%였고, 가장 적은 지역은 순창군으로 44.5%만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활동 참여 의사가 있지만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공공 일자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지역으로는 농촌 지역이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함.

〈표 2-6〉 노인일자리 현황

구분	노인 수	경제활동참여 의사노인 수	노인 경제 활동참여자 수	비율(%)	평균(%)	최대값	최소값
전체	265,531	118,689	68,308		69.1		
군산시	44,472	18,081	13,742	76.0	75.5	117.8 (김제)	45.1 (남원)
익산시	50,201	20,517	15,512	75.6			
정읍시	28,593	9,652	8,835	91.5			
남원시	21,126	14,489	6,528	45.1			
김제시	25,164	6,600	7,776	117.8			
완주군	19,379	9,380	5,988	63.8	60.0	80.7 (임실)	44.5 (순창)
진안군	8,307	4,593	2,567	55.9			
무주군	7,691	4,962	2,377	47.9			
장수군	7,082	4,433	2,188	49.4			
임실군	9,611	3,682	2,970	80.7			
순창군	9,245	6,415	2,857	44.5			
고창군	18,014	9,212	5,566	60.4			
부안군	16,646	6,673	5,144	77.1			

2.6. 통합문화이용권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의 문화 소외 계층은 문화 관람 향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금액) × 100

■ 자료원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금액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금액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성과보고서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의 2017년 통합문화권 발급액은 4,156,860천 원으로 이 중 문화이용권이 이용된 비율은 82.3%인 3,419,782천 원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이용률은 약 10%p 정도 감소하였지만, 전체 이용액은 746,309천 원 증가하였음.

- 전주시를 제외하고 전라북도에서 통합문화권이 이용권이 발급된 수는 69,281명으로 나타남.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문화이용권 발급액 중 82.9%가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통합시의 경우 남원시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89.7%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77.1%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도농통합시에 비해 2.1%p 정도 낮은 80.8%를 나타냄.

- 군 지역의 경우 부안군의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이 91.7%로 가장 높았고, 완주군이 66.7%로 가장 낮았음.

〈표 2-7〉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구분	발급자 수	발급액 (천 원)	이용액 (천 원)	이용률 (%)	평균(%)	2016년 모니터링 결과	
						비율(%)	평균(%)
전체	69,281	4,156,860	3,419,782	-	82.3	-	92.9
군산시	12,406	744,360	573,656	77.1	82.9	92.6	93.2
익산시	15,645	938,700	750,596	80.0		92.0	
정읍시	7,938	476,280	423,012	88.8		94.5	
남원시	5,527	331,620	297,412	89.7		97.0	
김제시	7,392	443,520	386,994	87.3		92.4	
완주군	4,829	289,740	193,400	66.7	80.8	89.2	92.0
진안군	1,397	83,820	69,897	83.4		90.7	
무주군	1,871	112,260	90,351	80.5		95.7	
장수군	1,324	79,440	71,026	89.4		93.0	
임실군	1,772	106,320	83,564	78.6		95.4	
순창군	1,415	84,900	74,524	87.8		95.6	
고창군	4,055	243,300	201,240	82.7		89.4	
부안군	3,710	222,600	204,111	91.7		93.5	

2.7. 문화 동호인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1개 이상의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점검방법

- (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 농어촌 인구 수) × 100

■ 자료원

- 농어촌 지역 문화 동호인 수 : 전라북도 행정자료
 - 전라북도(2017), 문화예술과 업무편람
 - 2016년에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등록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 수
- 농어촌인구수 : 통계청(KOSIS) 자료
 - 전라북도 시군별 20~65세 인구 수

■ 점검결과

-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의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2017년 20-65세의 인구수는 725,382명으로 이 중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에 등록된 인구 비율은 2.6%인 18,601명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0.3%p 정도 증가하여,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다소 증가하였음.
- 군산시, 익산시 등 5개 도농통합시의 경우는 20-65세 인구 중 1.9%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도농통합시의 경우 전년 대비, 0.1%의 가입률이 증가하였음.
 - 도농통합시 경우, 김제시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3.0%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가 1.5%로 가장 낮았음.
- 완주군, 진안군 등 8개 군 지역의 경우는 20-65세 인구 중 도농통합시에 비해 2.6%p 정도 높은 4.5%가 생활문화예술 동호인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0.3% 정도 증가하였으며, 가입률이 다소 증가하였음.
 - 군 지역의 경우 장수군의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이 11.1%로 가장 높았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2.8%로 가장 낮았음.

〈표 2-8〉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구분	인구 (20세-65세)	동호인 수	가입률(%)	평균(%)	2016년 모니터링 결과	
					가입률(%)	평균(%)
전체	725,382	18,601	-	2.6	-	2.3
군산시	175,702	2,675	1.5	1.9	1.2	2.0
익산시	192,283	3,107	1.6		1.3	
정읍시	66,232	1,376	2.1		1.9	
남원시	47,938	1,281	2.7		2.2	
김제시	49,294	1,503	3.0		2.7	
완주군	58,475	1,797	3.1	4.5	3.1	4.2
진안군	14,288	995	7.0		6.0	
무주군	13,684	501	3.7		3.9	
장수군	12,678	1,406	11.1		9.3	
임실군	15,790	1,140	7.2		6.9	
순창군	15,629	1,045	6.7		5.2	
고창군	31,771	902	2.8		2.5	
부안군	31,618	873	2.8		3.1	

제 3 장

요약 및 제언

1. 2017년 모니터링 결과 요약

1.1. 2017년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전북 특성, 농어촌 주민 체감, 국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부합, 지표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성, 시급성, 차별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6개 부문 8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함.
 - 6개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여건부문, 정주생활기반부문, 경제활동·일자리부문, 문화·여가부문, 안전부문으로 구분함.
 - 보건복지부문에서는 독거노인돌봄, 노인치매돌봄을 선택항목으로 선정함.
 - 교육여건부문에서는 기초학력, 어울림학교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기초학력은 자료미비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어울림학교를 선정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서는 그룹홈, 석면슬레이트 항목을 검토하였으나, 석면슬레이트는 자료미비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그룹홈을 선정함.
 - 경제활동·일자리부문에서는 노인일자리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함.
 - 문화·여가부문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동호인 항목을 선정함.
 - 안전부문에서는 어업인안전 항목을 선정함.

- 2017년 평가에서는 정부 정책기조와 데이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5개 부문 7개 지표를 선정함.
-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어 2016년 제외된 노인일자리를 추가하고, 안전 부문의 어업인 안전 항목은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 수와 행정 예산 및 지원 인원수에 변화가 없어 최종 지표에서는 삭제함.

〈표 3-1〉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최종항목

구분	선택항목	2016년		2017년		비고
		항목선정	최종지표	항목선정	최종지표	
보건 복지	독거노인돌봄	○	○	○	○	
	노인치매돌봄	○	○	○	○	
교육 여건	어울림학교	○	○	○	○	
정주 생활 기반	그림흙	○	○	○	○	
경제·일자리	노인일자리	○	×	○	○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	○	○	○	
	문화동호인	○	○	○	○	
안전	어업인안전	○	×	○	×	전년도 동일

1.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비율은 '17년 32.1%로 '16년 31.5% 대비 0.6%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음.
- 군 지역은 '16년 39.9%에서 '17년 46.7%로 6.8%p 증가하여 크게 개선되었으나 시 지역은 '16년 26.2%에서 '17년 23.1%로 3.1%p 감소함.

〈표 3-2〉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변화

구분		독거노인 수(명)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명)	평균비율(%)
2017년	전체	60,243	19,320	32.1
	시부	37,455	8,675	23.1
	군부	22,788	10,645	46.7
2016년	전체	58,214	18,310	31.5
	시부	35,956	9,425	26.2
	군부	22,258	8,885	39.9

■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 노인치매돌봄 서비스 비율은 '17년 36.2%로 '16년 35.0% 대비 1.2%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음.
 - 노인치매 돌봄 서비스 혜택자 수는 '16년과 '17년 동일하나 치매노인 수가 '17년 감소함에 따라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은 '16년 34.3%에서 '17년 35.1%로 0.8%p 증가하였으며, 군 지역은 '16년 36.3%에서 '17년 38.1%로 1.8%p 증가하였음.

〈표 3-3〉 노인 치매 돌봄 서비스 변화

구분		치매노인수(명)	돌봄서비스 혜택자 수(명)	평균비율(%)
2017년	전체	78,331	28,368	36.2
	시부	50,018	17,587	35.1
	군부	28,313	10,781	38.1
2016년	전체	80,957	28,368	35.0
	시부	51,287	17,587	34.3
	군부	29,670	10,781	36.3

■ 어울림 학교 지정률

- 어울림 학교 지정률은 '17년 26.0%로 '16년 22.8% 대비 3.2%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음.
- 시 지역은 '16년 32.0%에서 '17년 35.8%로 3.8%p 증가하고, 군 지역은 '16년 15.3%에서 '17년 18.1%로 3.2%p 증가하였음.

〈표 3-4〉 어울림 학교 지정률 변화

구분		읍면학교수	어울림 학교수	평균비율(%)
2017년	전체	392	102	26.0
	시부	176	63	35.8
	군부	216	39	18.1
2016년	전체	391	89	22.8
	시부	175	56	32.0
	군부	216	33	15.3

■ 그룹홈 이용률

- 그룹홈 이용률은 ‘17년 11.7%로 ‘16년 10.2% 대비 1.5%p 증가하여 다소 개선되었음
- 시 지역은 ‘16년 10.0%에서 ‘17년 7.3%로 2.7%p 감소한 반면, 군 지역은 ‘16년 10.4%에서 ‘17년 16.1%로 5.7%p 증가하여 크게 개선되었음.

〈표 3-5〉 그룹홈 이용률 변화

구분		경로당수	그룹홈 경로당수	평균비율(%)
2017년	전체	6,014	706	11.7
	시부	2,959	215	7.3
	군부	3,055	491	16.1
2016년	전체	5,931	606	10.2
	시부	2,892	290	10.0
	군부	3,039	316	10.4

■ 노인 일자리 비율

- 2017년 경제활동 참여의사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수를 추정하면 118,689 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참여자 비율은 69.1%인 68,308명임.
- 노인일자리 비율은 시 지역이 75.5%로 군 지역 60.0%보다 높게 나타남.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17년 82.3%로 ‘16년 92.9% 대비 10.6%p 감소하여 이용률이 크게 약화됨.

- 시 지역은 ‘16년 93.2%에서 ‘17년 82.9%로 10.3%p 감소하고, 군 지역은 ‘16년 92.0%에서 ‘17년 80.8%로 11.2%p 감소하였음.

〈표 3-6〉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변화

구분		발급액(천 원)	이용액(천 원)	평균 이용률(%)
2017년	전체	4,156,860	3,419,782	82.3
	시부	2,934,480	2,431,670	82.9
	군부	1,222,380	988,113	80.8
2016년	전체	2,878,277	2,673,473	92.9
	시부	2,036,430	1,898,618	93.2
	군부	841,847	774,855	92.0

■ 문화 동호인 가입률

- 문화 동호인 가입률은 ‘17년 2.6%로 ‘16년 2.3% 대비 0.3%p 증가하여 소폭 개선되었음.
- 시 지역은 ‘16년 2.0%에서 ‘17년 1.9%로 0.1%p 감소한 반면, 군 지역은 ‘16년 4.2%에서 ‘17년 4.5%로 0.3%p 소폭 증가함.

〈표 3-7〉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가입률 변화

구분		인구 수(20세~64세)	동호인 수	평균 가입률(%)
2017년	전체	725,382	18,601	2.6
	시부	531,449	9,942	1.9
	군부	193,933	8,659	4.5
2016년	전체	735,520	15,949	2.3
	시부	540,751	8,410	2.0
	군부	194,769	7,539	4.2

〈표 3-8〉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변화

분야	세부지표	2017년			2016년			전체 변화율
		전체	시지역	군지역	전체	시지역	군지역	
보건 복지	독거노인 돌봄	32.1	23.1	46.7	31.5	26.2	39.9	0.6
	노인차매 돌봄	36.2	35.1	38.1	35.0	34.3	36.3	1.2
교육 여건	어울림 학교	26.0	35.8	18.1	22.8	32.0	15.3	3.2
정주 생활기반	그룹홈	11.7	7.3	16.1	10.2	10.0	10.4	1.5
경제·일자리	노인 일자리	69.1	75.5	60.0				
문화·여가	통합문화 이용권	82.3	82.9	80.8	92.9	93.2	92.0	-10.6
	문화 동호인	2.6	1.9	4.5	2.3	2.0	4.2	0.3

주 : 음영은 2016년 대비 감소 값

2.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 지역별 맞춤형 지표 관리

- 전체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2016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시 지역의 경우 7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서비스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군 지역은 문화·여가 부문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시 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취약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점검 등의 지표 관리가 필요함.

■ 정성적 지표 도입 검토

- 국가 차원의 농어촌서비스 지표는 광범위한 자료 수집, 지역 간 비교 등으로 산출 가능한 양적 지표 중심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짐.
- 그러나 한정된 공적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전달 체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정성적 지표도 필요하며 이를 지역 내에 적용하기 위한 시범적 연구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평가와 모니터링의 정책적 환류 강화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평가 이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함.
-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서별 협력 체계, 평가와 모니터링 환류 시스템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삶의 질 우수사례 - 삼례문화예술촌

1. 사례 개요

- 삼례는 1907년에 삼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고 1935년 완주군 삼례면으로 편입, 1956년 삼례읍으로 승격된 후 완주군의 중심 지역으로 성장함.
- 이후 전주시의 빠른 도시화 진행으로 인근 전주로 인구 유출, 완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봉동 둔산리 신도시 개발 등 주변 환경 변화로 삼례읍 공동화 진행함.
 - 삼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역세권이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발달로 도심의 이동과 전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삼례역 이전, 구 삼례역을 중심으로 공가 등이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장소로 전락함.
- 구 삼례역을 중심으로 문화시설이 산재하고 있으며, 1920년대 건립된 양곡창고는 일제강점기 건립되어 양곡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현대식 저장창고에 밀려 기능을 잃고 방치됨.
- 이에 완주군에는 역사성을 보유한 문화시설을 활용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거점화를 통해 새로운 관고아명소를 육성하고자 삼례문화예술촌 사업을 시작함.

- 100여년전 지어진 창고이지만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한 내부 목재 구조는 건축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아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업 추진함.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에 위치한 삼례문화예술촌은 부지면적 11,825㎡에 양곡창고 7동을 리모델링 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우수 사례임.

- 삼례문화예술촌은 일제강점기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임시 보관하던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 2013년 개관한 복합 문화 공간임.
- 192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양곡창고(삼례문화예술촌)은 7동이 집단화된 창고로, 삼례역과 만경강을 이용해 일제시대 쌀을 수탈하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임.
- 비록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지역과 함께 해 온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10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원형이 그대로 보존될 만큼 견고하여, 창고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대인의 감각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아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기획전시와 문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삼례문화예술촌은 전시·체험 시설 및 문화 카페, 책 공방, 목공소 등으로 문화예술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여 관광과 식음료 등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문화 예술 공간

- 지금의 삼례문화예술촌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문화로 미래를 여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산업화와 도시화, 고령화로

인해 쇠락하고 있는 농촌 지역을 살리고 농촌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정도의 관광지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 2013년 개관 이래 근대문화유산 등록 문화재로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 창출함.

- 2013년 : 향토자원 베스트 30선, 공공건축 대통령상 수상, 문화재청 근대 문화유산 등록 문화재 지정
- 2014년 :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본상
- 2016년 : 아시아관광 마케팅 사례상,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전국 군 단위 최초)
- 2017년 : 한국관광 100선 선정, 열린관광지 공모사업 선정

2. 사업 개요

○ 사업명 : (일제 양곡창고 활용) 삼례문화예술촌 조성 사업

○ 위 치 :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83-13

○ 규 모 : 3,062㎡(창고 7동, 대지면적 11,825㎡)

○ 기 간 : 2012년 5월 ~ 2013년 6월

○ 사업비 : 총 40억 원(매입 16억 원, 공사 24억 원) * 국비지원 12억 원

- 주요 내용 : 일제 시대 양곡창고(7동) 리모델링 후 문화 공간 조성
 - 미디어아트미술관, 문화카페, 책 공방 북 아트센터, 디자인 뮤지엄, 목공소, 책박 물관, 막사밭미술관 등

3. 운영 현황

- 개관일 : 2013. 6. 5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영자 : 삼삼예예미미협동조합(대표 : 김태호)
- 누적 관람객 수 : 165,656명

〈표 4-1〉 관람객 수 현황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관람객	165,656명	19,276명	31,870명	41,657명	35,220명	37,633명

- 직원 현황 : 조합원 7명(관장), 직원 9명
 - 인포메이션 센터(1명), VM아트미술관(2명), 책 공방 북 아트센터(1명), 디자인 뮤지엄(1명), 김상림 목공소(1명), 책 박물관(2명), 막사밭미술관(1명)

〈표 4-2〉 각 관별 현황

구분	내용	관장
VM아트미술관	기획전시, 작가초대전, 창의미술아카데미등	이기전
문화카페	바리스타 및 로스팅 교육, 작품 전시 등	전해갑
책공방북아트센터	책만들기 체험, 레터-프레스 전시등	김진섭
디자인뮤지엄	국내외 우수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세미나	김태호
김상림목공소	목공예 작품 전시, 목수학교운영등	김상림
책 박물관	기획전시, 고서대학, 북페스티벌 등	박대현
막사별미술관	기획전시, 도예교실 운영	김용문

4. 세부 사업

4.1. 미디어 아트 미술관

○ 과학과 예술, 과거와 현재가 융합·소통하는 예술 장르인 미디어 아트를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간 (전시기획 미디어아트 및 조형예술 작품전시)

- 2017 VM 아트미술관 기획전시

* VM프로젝트-15(3월~5월) : 딸기를 주제로 한 기획전

* VM프로젝트-16(6월~8월) :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기획전(가족중심형)

* VM프로젝트-17(9월~1월) :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국제전, 제4회 국제 뉴미디어전

- 2017 VM 아트미술관 창의 체험프로그램

* 나만의 별 세상 속으로 : 미술관 관람객 및 완주군민들이 다양한 미술을 쉽게 접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체험프로그램

- * 작가참여 체험프로그램 : 미디어 및 미술관련 작가님을 초대하여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작가의 예술적 감각과 전문적 미술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4.2. 책 공방 아트 센터

- 삼례문화예술촌의 활성화와 책 마을 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외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아날로그 활판 인쇄 방법인 **LETTER-PRESS**(레터-프레스)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인쇄의 역사를 전시, 레터프레스 체험, 자료집발간 등의 포커스를 맞춰 사업을 추진

- 자료집 발간

- * 책 공방이 보유하고 있는 활판인쇄기계 및 다양한 책 만드는 기계 중심으로 ‘레터프레스 A to Z 가이드북’, ‘책 공방, 삼례의 기록’ 등의 자료집을 발간

- 한국 근대 인쇄의 역사 기획전시

- * 한국 근대 역사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여 전시하는 다목적 체험 공간

- 브로슈어제작 및 발송

- * 삼례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한 책 공방 북 아트 센터 홍보브로슈어

제작 후 공방 내 비치하고 각 학교 및 단체로 DM 발송

- 단체체험프로그램

- * 책 만드는 버스 : 책 만드는 체험교육을 위한 기자재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찾아가는 어린이 전용 문화체험 버스
- * 북 아트 스쿨 : 누구나 책 만들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수하고 다양한 기자재의 활용 방법과 시연을 통해 폭넓은 북아트작업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 * 나만의 가족다이어리 : 단 하루의 경험이지만 평생토록 간직할 수 있는 추억을 제공

- 개인체험프로그램

- * 첫째 주 : 티셔츠 만들기(남녀노소 누구나/5우려~8월 진행)
- * 둘째 주 : 스르랩 북 만들기(초등학교 3학년 이상)
- * 셋째 주 : 미니 북+팝업 북(유치원생~초등학교 2학년)
- * 넷째 주 : 가족다이어리 만들기(어른)



4.3. 책 박물관

- 책을 매개로 한 세계의 역사, 문화, 예술, 인물 등을 다각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전시, 연구, 보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세대 간 문화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역할 제공
 - 전시 프로그램
 - * 상·하반기 기획전시 : 책을 매개로 지역민이 참여하는 전시 프로그램 운영
 - 이벤트
 - * 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이벤트 프로그램
 - 교육·체험
 - * 일반인 체험 : 완주군민 대상 책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체험프로그램
 - * 특별교육 : 완주군 초등학생 대상 지역연계 창작프로그램
 - * 진로직업 체험 :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으로서의 책의 세계 강의 및 관람
 - * 자원봉사 교육 : 사회 속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본 소양을 사전 습득케 하는 지역대학 연계프로그램



4.4. 디자인 뮤지엄

- 전시를 통한 디자인 전파에 그치지 않고, 창작지원 및 디자인 문화 거리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디자인 문화의 중심이 되고자 한국산업디자인협회(KAID)가 디자인뮤지엄(Design Museum)을 설치
 - 기획행사
 - * 디자인 학술 세미나 및 특강 : 지역과 도시의 상호 상생 및 지역 활성화 방안
 - * 대학생 Design Conference : 지역 디자인 관련 발표, 디자인 공모작 전시
 - 기획전시
 - * Concept 디자인 기획·전시 : 대학생의 아이디어 디자인, 창의력 디자인 전시
 - * 국내외 우수 디자인 작품 비교 전시 : 국내 Design과 외국 유명 Design의 비교 전시
 - 문화프로그램
 - * 디자인 창의력 교육 : 완주군 내 초등학생의 창의력 개발, 소책자 발간 등
 - * 지역주민을 위한 농산물 디자인 강연 : 농·생산물의 포장디자인 교육, 기타 농·생산물 관련 광고 및 디자인 이해교육



4.5. 김상림 목공소

○ 조선 목수들의 삶의 철학이 스며있는 목가구를 재현하고, 목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확실한 실체였던 연장을 컬렉션하여 목가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선조의 미감과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공간

- 교육

* 전문가 반 : 기초, 중급, 고급, 연구반 운영(각 반별 20주)

* 취미교실 : 본인이 원하는 생활용품 제작(교육기간 8주)

* 청년 목수학교(직업반) 개설

- 문화프로그램

* 지역 토착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무료체험교육

- 전시

* 목가구 및 옛 목수연장 상설전시



4.6. 막사발 미술관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특색 있는 작품전시를 통해 현대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 교육·체험
 - * 막사발 도예교실 :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상반기(3~5월)와 하반기(8월~10월) 운영
 - 레지던스
 - * 외국작가 워크숍 :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도예가를 초청, 국내에 약 한 달간 머무르며 작품 제작과 기증 및 전시 참여
 - 기획전시
 - * 초청작가 단체전 : 신진, 지역, 외부 작가를 초청하여 작품전시
 - 도록 및 책 발간
 - * 미술관의 2013년 완주이전부터 2017년까지 운영 도록 발간

5. 성공 요인

- 삼례문화예술촌이 지역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제고시키고 지역 활력에 기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사업주체들의 전문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확보를 위한 홍보·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연계, 입지의 우수성, 행정의 추진 의지 등임.
- 첫째, 삼례문화예술촌에 입촌해서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의 전문성 확보
 - 비주얼 미디어 아트 미술관 관장은 서양화 화가로서 구상미술 협회인 ‘사단법인 목우회’ 이사장 역임

- 디자인뮤지엄 관장은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국산업디자인학회 회장 역임
 - 김상립 목공소 관장은 1990년 서울 인사동에서 프레임아트샵 ‘못과 망치’를 시작한 이래로 목공예 시작, 이후 소목장, 소목을 배우면서 목공과 관련된 오랜 경력을 토대로 지역으로 내려와 현재의 목공소를 운영 중
 - 책 공방 북 아트 센터 관장 : 관장은 기자 출신이며, 2001년부터 서울 인사동에서 책 공방을 운영해 오다가 2013년 현 위치로 이전함. 제책 관련 오랜 경험과 언론인으로서의 경험 등 책과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음.
 - 책 박물관 관장은 1999년부터 강원도 영월의 옛 여촌 분교에 ‘책 박물관’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 현 위치로 이전해 옴. 관장의 오랜 기간 동안 책 박물관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세계 북페어에서 만난 인맥을 활용하고 있음.
 - 그리고, 관련 장비, 도서, 예술품, 프레스 기계 등 입촌 당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많은 소장품을 지역으로 들여와 당시 낙후된 도농지역이었던 삼례문화예술촌과 주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음.
- 둘째 문화예술이라는 하나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각 기관별 계층별, 시기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콘텐츠를 구성하는 소재면에서 지역 특화자원인 딸기, 책, 목가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추진 방식에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전 사회, 가족 또는 단체 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요일별, 주중 과 주말, 그리고 계절별로 차별화된 전문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 (VM아트미술관) 프로그램 7개, 3년간 총 853명 참여, (디자인 뮤지엄) 프로그램 2개, 총 290명 참여, (책 공방 북 아트 센터) 프로그램 9개

이상, 총 4,253명 참여, (책 박물관) 프로그램 20여 개, 총 2,670명 참여, (김상림 목공소) 프로그램 3개, 총 2,154명 참여

- 셋째, 각 관별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외에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언론보도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예술촌 홈페이지, 페이스북/ 리플릿, 가이드북, 프로그램안내서, 포스터, 산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보도, 방명록 작성 방문객에게 우편발송 등

- 넷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 문화의 품격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 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축제에는 기관별 프로그램을 진행
 - 별도의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위해 책 박물관은 2016년 지역에 소재한 우석대학교 LINC 사업단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책 공방 아트 센터는 완주 시니어 자서전학교, 삼례인 기록전, 지역출판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
 - 책 공방 아트 센터에의 경우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을 특화시켜 지역민들이 자서전을 펴내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의 자부심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디자인 뮤지엄은 팜 디자인 지역개발 디자인을 주제로 한 포럼과 컨퍼런스를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하였으며, 완주군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소외계층 어린이 15명에게 무료교육의 혜택을 제공
 - VM아트미술관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경관조성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주민들과 함께 벤치 만들기 사업 기획서를 제출하였고, 막사밭미술관은 레지던스 작가들이 만든 도판을 제작해 거리 벽면을 장식한 문화 거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디자인들이 가로경관에 실제 반영되어 지역재생 및 활성화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섯째, 전주라는 전라북도 최대 도시를 배후 도시로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완주군 행정 차원의 정책적 집중으로 지속 발전 가능성 양호
- 여섯째, 완주군 행정에서 삼례를 문화예술촌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총 95개 공동체, 1,351명의 예술 공동체 거점 사무실이 있으며, 주요 활동 무대가 삼례예술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개관 이래 2년 주기로 민간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운영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
 - 완주군은 민선6기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대표관광지('15년 선정)를 활용하여 삼례를 문화 예술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
 - 현재까지의 문화 예술 관련성과를 기반으로 삼례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행정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문헌

- 김광선 등. 2014.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C2014-6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광선 등.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E2016-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관계부처 합동. 2014.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2017.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및 2017년 시행 계획 발표」.
- 이민수 등. 2016.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 전북도청. 2014. 「삼각농정 기본계획」.
- 전북도청. 2015.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2017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채 종 현 부연구위원

차 례

제1장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01

제2장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1. 복지 통합시스템 305
 2. 교육 다양성 307
 3. 교통정보 309
 4. 귀농·귀촌 310
 5. 농업 일자리 정보 311
 6. 생활체육 313

제3장 점검·평가 결과

1. 복지 통합시스템 318
 2. 교육 다양성 321
 3. 교통정보 325
 4. 귀농·귀촌 327
 5. 농업 일자리 정보 329
 6. 생활체육 331

제4장 지역 우수사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1. 사례 개요 333
2. 사업 내용 334

부록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38

부록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조사표 339

표 차례

제2장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305
---------------------------------	-----

제3장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316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318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320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322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323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326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328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330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331

제4장

<표 4-1>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활동분야(예시)	335
<표 4-2>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내용	335

그림 차례

제4장

<그림 4-1>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체계	335
<그림 4-2>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절차	336
<그림 4-3>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방법	336

제 1 장

개요¹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계획과 집행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에서 수립한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평가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강화
 - 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 일부 항목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점검 지표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삶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15~317 재작성

의 질 실태 파악이 미흡

-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입하여 지역에 맞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표의 활용성을 강화
- 농어촌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지표로서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질적 발전을 도모

1.2. 연구 목적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실시
 - 2015년 시도연구원과 함께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고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는 공동연구를 수행
 - 2016년에는 2015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들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 2017년에는 2019년 목표 달성 가능 여부를 점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속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추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점검·평가와 더불어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범사례를 발굴·공유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과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농어촌 삶의 질 관련 정책 개선에 기여

1.3. 연구 내용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2017년)

- 2017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2015년 연구에서 확정한 점검 및 평가방식에 따라 2017년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 및 조사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기 목표 점검 및 시사점 도출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의 도달 가능 여부 점검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달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수범사례 발굴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지역 수범사례 발굴
 - 선택 항목 이행실태가 양호한 지역 사례
 -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우수 정책 사례 등

제 2 장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2

■ 선택 항목 선정

- 경북에서는 경북 삶의 질 현황 검토, 관련 정책 사업 검토, 전문가 자문회, 적합도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선정
 - ‘경북 삶의 질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경북 삶의 질 계획을 반영한 실용적 지표’를 원칙으로 선택 항목 선정

- 삶의 질 정책의 총 7개 부문 중 환경·경관과 안전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경북의 선택 지표를 선정
 - 복지 통합시스템(보건복지), 교육 다양성(교육), 교통 정보(정주생활 기반), 귀농·귀촌(경제활동·일자리), 농업 일자리 정보(경제활동·일자리), 생활 체육(문화·여가)

〈표 2-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교육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 일자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농업 일자리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 복지 통합시스템

■ 선정배경

- 현장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복지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서비스 공급 기능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일이 빈번
 - 교수, 연구자, 현장 실무자 등 경북의 복지 관련 전문가들이 통합적·종합적 복지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
- 농어촌 인구 고령화,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변화하는 농어촌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복지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경북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보다 대상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더욱 적합
-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경북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 도모

■ 내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점검방법

○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 \left(\frac{((a) \times 5.0) + ((b) \times 0.5) + ((c) \times 0.1)}{d \text{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 ㉠ 사례관리 실적: 읍면동 및 시·군구에서 선정한 사례관리가구 실적
- ㉡ 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 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한 단순서비스연계 건수
-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충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
- 행정자료: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행복e음 사례관리시스템 자료)(보건복지부)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복지 통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새마을 조성 사업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없는 복지시스템 구축

2. 교육 다양성

■ 선정배경

- 농어촌에서는 도시에 비해 다양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부족. 정규교과 이외에도 특히 문화, 체험, 특기 적성, 진로·적성 교육 등 다양한 학습 기회 부족이 심각
 - 교육 문제는 농어촌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을 저해
- 정규교과 이외의 다양한 교육·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경북 농어촌 지역의 교육 다양성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 경북에서는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영어 수업, 진로체험 버스 등 다양한 교육 사업 개발에 노력

■ 내용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text{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text{총 시·군 수}) \times 100$
-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충족 기준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 교육 서비스 유형

- 교육시설 및 조직: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건립된 상시적 교육 시설 혹은 조직
- 적성교육: 원어민 교사, 청소년 오케스트라, 특기적성 교육 과정,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상시 교육 지원 서비스
- 진로교육: 진학지도 컨설팅, 맞춤형 입시 상담, 진로체험센터 등 진로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
- 체험교육: 여름과학캠프, 영어체험센터, 찾아가는 이동천문대 등 일주일 이내의 이벤트성 체험 교육 서비스

■ 점검수단

- 행정자료: 교과부, 지자체
- 행정조사: 시·군별 교육서비스 사업 수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교육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 소규모 초등학교 영어 경진대회 개최 - 방과 후 학교 운영 - 농촌전원학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문화복지사다리 구축 - 어린선비(경북혼) 교실 운영

3. 교통정보

■ 선정배경

- 농어촌에서의 접근성 문제는 도시와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 노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한 농어촌에서 도시의 기준으로 교통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은 효율성 문제 야기 가능
- 하지만 효율성 문제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교통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이미 진행 중
 - 수요응답형 버스, 마중택시 등 농어촌 맞춤형 서비스 공급 방안
- 특히 농어촌의 특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통 서비스 공급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

■ 내용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충족 기준: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 교통정보 홈페이지, 교통정보 제공 앱, 전광판, 기타(상담인력 운영, 안내책자 등)

■ 점검수단

- 행정조사: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교통정보	-	-

4. 귀농·귀촌

■ 선정배경

- 고령화되고 과소화 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귀촌의 중요성 증가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등 향후 귀농·귀촌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북에서도 귀농·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귀농·귀촌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역점

■ 내용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100
- 충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 인력 지원센터,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의 집 등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귀농·귀촌 관련 사업 시행 현황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귀농·귀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인 정착금 지원 -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5만 명 유치

5. 농업 일자리 정보

■ 선정배경

-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농업·농촌 인력 수급 불일치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정보 부족으로 농촌·농업 노동 여건의 개선과 함께 농업 노동력 수요와 공급 간의 원활한 정보 공급 필요
- 좋은 일자리 창출은 민선 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농업 일자리 정보과 관련한 정책 사업도 더욱 확대할 예정

■ 내용

일 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 충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 일자리 공급 서비스 예시
 -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 중개창구 등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사업 범위

■ 관련 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농업 일자리 정보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일자리 창출	-

6. 생활체육

■ 선정배경

- 고령자 증가, 은퇴자의 귀농·귀촌 등 농어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도시보다 자연환경이 양호한 농어촌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미진
-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원하는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여건을 강화
- 하드웨어 기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농어촌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

■ 내용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점검방법

-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 점검수단

- 행정자료: 지자체
- 행정조사: 체육교실 운영 읍면 현황

■ 관련정책

선택 항목	경북 제3차 삶의 질 계획	민선6기 경북도지사 공약사업
생활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교실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제 3 장

점검·평가 결과

■ 점검·평가 방법

- 경상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를 위해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와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
 -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점검은 경북도청 내부 행정자료를 활용
 - 교육 다양성, 교통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항목 점검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는 있으나 점검·평가 결과를 엄격한 시·군 간 비교 등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항목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설문조사의 한계 존재

■ 점검·평가 결과

- 2017년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농업 일자리정보와 생활체육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지표값 및 충족 시·군 비율이 증가
 - 2017년 복지 통합시스템의 충족 시·군 수는 8개(34.8%)로 2016년에 비해 3개 시·군이 증가

- 교육 다양성의 충족 시·군 수는 19개(82.6%)로 2016년에 비해 6개 시·군이 증가
- 교통 정보의 충족 시·군 수는 18개(78.3%)로 2016년에 비해 2개 시·군이 증가
- 귀농·귀촌에서는 2016년 17개(73.9%)에 비해 2개 시·군이 늘어난 19개(82.6%)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농업 일자리정보에서는 2016년과 동일한 11개(50.0%)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정에서 제외)
- 생활체육의 충족 시·군 수는 14개(60.9%)로 2016년에 비해 3개 시·군이 감소

〈표 3-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결과

부문	선택 항목	총 시·군	2015년		2016년		2017년	
			충족 시군	비율(%)	충족 시군	비율(%)	충족 시군	비율(%)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23	5	21.7	5	21.7	8	34.8
교육	교육 다양성	23	15	65.2	13	56.5	19	82.6
정주생활기반	교통 정보	23	11	47.8	16	69.6	18	78.3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23	16	69.6	17	73.9	19	82.6
	농업 일자리정보	23	6	27.3	11	50.0	11	50.0
문화여가	생활체육	23	15	65.2	17	77.3	14	60.9

○ 복지 통합시스템, 교육 다양성, 교통정보, 귀농귀촌 등 대부분 항목의 지표값이 개선

- 복지 통합시스템의 지표값은 2016년 41.2에서 2017년 47.2로 증가하여 이행실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단순서비스 연계건수가 줄고 사례관리 실적과 서비스 연계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운영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
- 교육 다양성 지표값은 2016년 56.5%에서 2017년 82.6%로 크게 개선됨.

적성 교육을 교육 시설 및 조직으로 개편하여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 교통정보 지표값은 2016년 69.6%에서 2017년 78.3%로 개선. 홈페이지, 교통앱, 전광판 등 기본적인 교통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시·군이 증가
- 귀농귀촌 지표값은 2016년 73.9%에서 2017년 82.6%로 개선. 시·군별로 활성화 정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귀농귀촌정보센터 등 종합적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

○ 2017년 농업 일자리 정보의 지표값은 2016년과 동일하며, 생활체육의 지표값은 하락

- 2017년 농업 일자리 정보의 충족 시·군은 2016년과 차이가 있으나, 그 수는 동일하며 군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시·군 간 연계 등 정책적 고민 필요
- 생활체육의 지표값은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설문조사의 한계로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어 지표 점검방법 및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표치 설정

○ 귀농귀촌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2016년에 설정한 2019년 목표치를 유지

- 복지 통합시스템에서는 2017년 47.2의 지표값을 2019년 50까지 증대
- 교육 다양성에서는 2017년 82.6%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교통정보 항목에서는 2017년 78.3%의 지표값을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표 3-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 설정

구분	선택항목	점검결과			목표		
		'15	'16	'17	'17	'18	'19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41.2	41.2	47.2	44.1	47	50
교육	교육 다양성	65.2%	56.5%	82.6%	76.8%	88.0%	100%
정주생활기반	교통정보	47.8%	69.6%	78.3%	75.0%	82.6%	100%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69.6%	73.9%	82.6%	75.4%	90.0%	100%
	농업 일자리정보	27.3%	50.0%	50.0%	50.0%	50.0%	54.5%
문화여가	생활체육	83.6%	88.2%	77.3%	86.9%	90.2%	93.6%
		56.7%	31.5%	49.8%	60.0%	63.3%	66.7%

- 귀농귀촌에서는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2017년 82.6%의 지표값을 2018년 90.0%, 2019년 100%까지 증대하여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농업 일자리 정보에서는 2017년 50.0%의 지표값을 2019년 54.5%까지 증대하여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정
- 생활체육에서는 2017년 체육시설 77.3%, 체육교실 49.8%의 지표값을 2019년 각각 93.6%, 66.7%까지 증대하도록 목표를 설정

1. 복지 통합시스템

- 2017년 경북의 복지 통합시스템 지표값은 47.2로 기준값을 충족하지 못함.
 - 경북의 통합 사례관리 중점 대상자는 146,222명이며 사례관리 실적은 7,775건, 서비스 연계 건수는 44,222건, 단순서비스 연계 건수는 80,435건

- 2017년 경북에서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은 8개 (34.8%)가 해당
 -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군위군, 성주군, 칠곡군 등에서 지표값이 50 이상으로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 기준을 충족
 - 2016년에는 안동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성주군 등 5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최소 17.5에서 최대 83.6까지 시·군별로 지표값 차이가 큰 편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중 복지 통합시스템 항목의 이행실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6년 41.2에서 2017년 47.2로 지표값이 증가
 -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 수도 2016년 5개에서 2017년 8개로 증가

- 특히 단순서비스 연계 건수가 줄고 사례관리 실적과 서비스 연계 건수가 크게 증가
 - 단순서비스 연계 건수는 2016년 395,716건에서 2017년 80,435건으로 크게 감소
 - 반면 사례관리 실적은 2016년 2,531건에서 2017년 7,7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서비스 연계 건수도 2016년 24,263건에서 2017년 44,222건으로 크게 증가
 - 가중치가 높은 사례관리 실적과 서비스 연계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단순서비스 연계 건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지표값은 개선
 - 경북 복지 통합시스템 운영이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9년까지의 목표는 지표값 50을 달성하여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
 - 2017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볼 때 2019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연도에 따라 편차가 큰 시·군들이 있어 지속적인 달성 노력 필요
- 2016년 24.1에서 2017년 80.6으로 지표값이 크게 개선된 시·군이 있는 반면, 2016년에는 기준을 충족했으나 2017년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이 있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큰 편

〈표 3-3〉 복지 통합시스템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충족 여부	지표값						2019년 목표
		2016	2017					
				㉠ 사업관리 실적	㉡ 서비스 연계건수	㉢ 단순서비스 연계건수	㉣ 통합사례 관리중점 대상자	
경상북도	×	41.2	47.2	7,775	44,222	80,435	146,222	50.0
포항시	×	24.2	21.0	734	2,815	5,387	26,743	34.2
경주시	○	45.5	54.3	691	2,489	16,278	11,662	50.0
김천시	×	39.8	48.6	659	1,538	1,121	8,599	49.8
안동시	○	117.9	65.0	772	4,397	5,942	10,226	50.0
구미시	○	24.1	80.6	839	9,376	7,532	11,960	34.1
영주시	○	28.8	65.8	826	1,772	2,453	7,989	38.8
영천시	○	52.9	65.1	442	5,184	4,250	8,022	50.0
상주시	×	25.6	37.2	289	1,070	3,281	6,210	35.6
문경시	×	38.7	41.8	298	553	2,455	4,813	48.7
경산시	×	59.2	45.4	632	3,036	5,728	11,575	50.0
군위군	○	51.6	59.6	49	740	2,587	1,469	50.0
의성군	×	26.6	34.7	161	678	3,054	4,176	36.6
청송군	×	46.2	41.3	101	262	1,457	1,888	50.0
영양군	×	29.5	32.6	60	210	1,295	1,642	39.5
영덕군	×	28.7	48.0	229	1,002	3,146	4,084	38.7
청도군	×	30.7	17.5	53	222	1,897	3,220	40.7
고령군	×	22.7	41.4	121	383	1,783	2,355	32.7
성주군	○	53.2	54.0	200	684	1,183	2,708	50.0
칠곡군	○	40.2	83.6	180	6,610	3,392	5,433	50.0
예천군	×	31.2	34.0	152	318	2,021	3,303	41.2
봉화군	×	46.1	33.1	106	374	1,297	2,556	50.0
울진군	×	23.9	26.2	166	428	2,482	4,916	33.9
울릉군	×	27.1	23.7	16	80	413	673	37.1

주 1) 지표값 50 이상일 경우 충족으로 간주

2) 지표값 산출 공식

$$\left(\frac{(\text{㉠} \times 5.0) + (\text{㉡} \times 0.5) + (\text{㉢} \times 0.1)}{\text{㉣} \text{통합사례관리사업중점대상자}} \right) \times 100$$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8개(34.8%)

4) 2017년 10월말까지의 자료를 12개월 기준으로 보정하여 사용

2. 교육 다양성

- 2017년 경북의 교육 다양성 지표값은 82.6%로 19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5.2%(15개), 2016년 56.5%(13개)에서 2017년 82.6%(19개)으로 지표값이 크게 개선
 - 경주시,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울진군, 울릉군 등에서 새로이 기준을 충족

- 교육시설 및 조직 수가 증가하면서 지표값이 크게 개선
 - 교육시설 및 조직 수는 2016년 56개에서 2017년 70개로 증가한 반면, 적성 교육 수는 42개에서 32개로 감소
 - 적성 교육을 교육 시설 및 조직으로 개편하여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추세

- 2019년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 2017년까지의 이행실태를 볼 때 2019년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표 3-4〉 교육 다양성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 서비스 합계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경상북도	65.2%	56.5%	82.6%	70	69	32	8	29	100%
포항시	○	○	○	3	6	1	3	2	○
경주시	○	×	○	4	3	2	1	0	○
김천시	×	×	×	2	2	2	0	0	○
안동시	○	○	○	4	2	1	0	1	○
구미시	○	○	○	3	3	2	1	0	○
영주시	○	○	○	5	1	1	0	0	○
영천시	○	○	○	6	0	0	0	0	○
상주시	○	○	○	6	0	0	0	0	○
문경시	○	○	○	5	3	2	0	1	○
경산시	○	○	○	4	1	0	0	1	○
군위군	×	×	○	3	1	0	0	1	○
의성군	○	○	○	3	8	4	0	4	○
청송군	×	×	×	2	1	1	0	0	○
영양군	○	×	○	0	5	1	0	4	○
영덕군	○	○	○	2	5	3	1	1	○
청도군	×	×	×	1	0	0	0	0	○
고령군	×	×	○	3	5	2	0	3	○
성주군	○	○	○	3	0	0	0	0	○
칠곡군	○	○	○	1	7	3	0	4	○
예천군	○	×	×	2	2	1	0	1	○
봉화군	×	○	○	2	7	3	1	3	○
울진군	×	×	○	3	3	2	0	1	○
울릉군	×	×	○	3	4	1	1	2	○

주 1) 지표: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혹은 교육 서비스 5개 이상일 경우 기준 충족 시·군으로 간주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9개(82.6%)

〈표 3-5〉 시·군별 교육시설 및 서비스 현황

사군명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서비스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 집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원어민 보조강사 지원	체험 진로 교육 입시정보박람회 진로진학 아카데미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캠프) 2017 중학생 실용영어 캠프
경주시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농어촌 지역 어린이 영어 교육 청소년 특기 적성 과정	청소년 진로 체험 과정	
김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 경상북도 청소년 수련센터	학력 향상 학습프로그램 꿈나무 운동선수 육성 사업		
안동시	안동청소년수련관 안동청소년문화센터 퇴계학당 운영 지원 사업 안동 영어마을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가요제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 청소년 수련관	농촌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영주시	영주 통합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영어 체험 센터 영주 진로체험지원센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서비스 지원		
영천시	영천 영어타운 영천시 청소년 수련관 입교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영천시립도서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재양성원			
상주시	청소년수련관 영어체험센터 발명교육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예술문화체험센터			
문경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사군명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서비스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경산시	경산시립도서관 경산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 독서회(북콘서트)
군위군	군위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군위인재양성원			영어체험학습 지원
의성군	의성 청소년 센터 의성 향토인재양성원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전화 및 화상영어 지원 중학생 방과후 영어심화학습 연합동아리 특기적성활동 지원 중고등학생 무료 사이버 학습		영어 체험학습 및 영어캠프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의성 수학체험전,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영양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지원		초중학생 영어체험학습 카이스트 과학 캠프 영양군 청소년 스키캠프 찾아가는 이등 천문대
영덕군	청소년 수련관	초등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육 수도권 기숙형 학원 위탁교육 고교 방과 후 심화학습	초등학교 다중지능발달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
청도군	대가야 문화누리 (체육센터, 문화원, 청소년 문화의 집)			
고령군	성주 별고을 교육원 성주 영어체험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전화 영어 지원 사업		2017 박물관 학교 운영 영어마을 체험 학습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성주군	청소년수련관			
칠곡군	공공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어린이 방학 특별 강좌 고3 레크리에이션 자격 취득 과정 창의 체험 열린 교실		뮤지엄 스토리 꿈 꾸는 작은 학교 노래와 힐링 캠프 문화체험캠프
예천군	청소년 센터 봉화인재양성원	원어민 화상 영어		영어 캠프 참가 지원
봉화군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학교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초중학교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농어촌 전화 영어교육 지원	창의적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초중학교 영어체험학습 초중학생 중국어 체험 캠프 운영 학생승마체험지원

사군명	교육시설 및 조직	교육서비스		
		적성 교육	진로 교육	체험 교육
울진군	영어 체험 학습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원어민 강사 채용 지원 영어심화학습 지원		영어체험학습
울릉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 후 학교 지원	자유학기제 직업 현장 체험	영어체험학습 스포츠 체험 학습

3. 교통정보

- 2017년 경북의 교통정보 지표값은 78.3%로 18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47.8%(11개), 2016년 69.6%(16개)에서 2017년 78.3%(18개)으로 지표값이 개선
 - 군위군, 울릉군 등에서 새로이 기준을 충족
- 시·군별로 기본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지표값이 점차 개선
 - 홈페이지, 교통앱, 전광판 등 기본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인프라 정비 시·군 증가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를 달성하는 것
-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등 미충족 시·군은 대부분 낙후 지역으로 교통정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표 3-6〉 교통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교통정보 서비스 합계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홈페이지	교통 앱	전광판	기타		
경상북도	47.8%	69.6%	78.3%	57	14	8	12	23	100%
포항시	○	○	○	3	1	1	1	0	○
경주시	○	○	○	4	1	1	1	1	○
김천시	○	○	○	3	0	1	1	1	○
안동시	×	○	○	2	1	0	0	1	○
구미시	○	○	○	3	0	1	1	1	○
영주시	○	○	○	5	1	1	1	2	○
영천시	×	○	○	2	1	0	1	0	○
상주시	○	○	○	3	1	0	0	2	○
문경시	×	○	○	2	1	0	0	1	○
경산시	×	○	○	3	1	1	1	0	○
군위군	×	×	○	2	1	0	0	1	○
의성군	×	○	○	3	0	0	1	2	○
청송군	×	×	×		0	0	0	0	○
영양군	○	○	○	4	1	1	1	1	○
영덕군	○	○	○	3	1	0	0	2	○
청도군	×	×	×	1	0	0	0	1	○
고령군	×	×	×	1	1	0	0	0	○
성주군	×	×	×	1	0	0	0	1	○
칠곡군	○	○	○	5	1	1	1	2	○
예천군	○	○	○	3	1	0	0	2	○
봉화군	○	○	○	2	0	0	1	1	○
울진군	×	×	×		0	0	0	0	○
울릉군	×	×	○	2	0	0	1	1	○

주 1) 지표: (교통정보 제공 기준 충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일 경우 충족 시·군으로 간주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8개(78.3%)

4. 귀농·귀촌

- 2017년 경북의 귀농·귀촌 지표값은 82.6%로 19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5년 69.6%(16개), 2016년 73.9%(17개)에서 2017년 82.6%(19개)로 지표값이 개선
 - 포항시, 김천시, 청도군에서 새롭게 귀농·귀촌 서비스를 시작한 반면, 울릉군은 중단

- 귀농·귀촌 서비스 이용객 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큰 편
 - 상주시, 영천시, 봉화군 등에서는 연 이용객이 많은 반면, 청송군, 영양군 등은 적은 편
 - 다수의 시·군에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며, 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도 증가

- 2019년까지의 목표는 모든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지표값 10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 포항시, 김천시 등 일부 도농복합도시에서도 귀농·귀촌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모든 시·군에서 기준 충족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
 - 2016년에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등 귀농·귀촌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이는 도농복합시는 충족 대상에서 제외한 87.0%(20개)로 목표치 설정

〈표 3-7〉 귀농·귀촌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충족여부			시설/서비스명	연 이용객	귀농 귀촌인수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경상북도	69.6%	73.9%	82.6%	-	3,120	19,068	100%
포항시	×	×	○	귀농귀촌 심층상담 센터	300	60	○
경주시	×	×	×	-	-	170	○
김천시	×	×	○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170	340	○
안동시	○	○	○	귀농의 집, 귀농귀촌학교	8	951	○
구미시	○	○	○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34	-	○
영주시	○	○	○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40	676	○
영천시	○	○	○	귀농귀촌상담실, 귀농귀촌인의 집	500	875	○
상주시	○	○	○	귀농귀촌정보센터	1,310	505	○
문경시	×	○	○	귀농인의 집	16	471	○
경산시	○	○	○	귀농귀촌학교	89	7,727	○
군위군	×	×	×	-	-	-	○
의성군	○	○	○	귀농귀촌정보센터	337	840	○
청송군	×	○	○	귀농귀촌정보센터	80	194	○
영양군	○	○	○	귀농귀촌정보센터	76	313	○
영덕군	○	○	○	귀농귀촌정보센터	220	260	○
청도군	○	×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서비스	-	23	○
고령군	○	○	○	귀농인의 집	15	38	○
성주군	○	○	○	귀농인의 집	3	143	○
칠곡군	×	×	×	-	-	-	○
예천군	○	○	○	귀농인의 집	20	200	○
봉화군	○	○	○	귀농인의 집	400	5,860	○
울진군	○	○	○	귀농인의 집	2	98	○
울릉군	○	○	×	-	-	-	○

주 1) 지표: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100

2) 귀농·귀촌인 수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9개(82.6%)

5. 농업 일자리 정보

- 2017년 경북의 농업 일자리 정보 지표값은 50.0%로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2016년에는 2015년 27.3%(6개)에서 50.0%(11개)으로 지표값이 개선되었으나, 2017년에는 2016년과 동일한 11개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 포항시, 안동시, 고령군, 울진군에서는 농업 일자리 정보 관련 사업을 시작
 - 문경시,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에서는 농업 일자리 정보 관련 사업을 중단

- 농업 일자리 정보 서비스 실적은 지역별로 실적 차이가 큰 편
 - 포항시, 의성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에서는 실적건수가 많은 반면, 다른 시·군에서는 실적건수가 다소 적은 편

- 시·군 간 농업 일자리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정책적 고민 필요
 - 2017년에는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등 도농복합시에서 새롭게 일자리 정보 관련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경시, 군위군, 성주군, 예천군 등에서는 정책을 중단
 - 도농복합시에는 도시부의 유휴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농업 인력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군에서는 농업 인력으로 공급할 유휴 노동력이 부족
 - 농업 일자리 정보는 몇 개 시·군을 묶은 생활권 단위의 정책 설계 필요
 - 일자리 정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인근 군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도입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반영 필요

- 2019년에는 도시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시, 칠곡군)을 제외한 12개 지역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
 - 문경시는 2015년부터 일자리 정보 사업을 하고 있어 기준 충족 대상 지역에 포함

〈표 3-8〉 농업 일자리 정보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총족여부			시설/서비스명	실적건수	2019년 목표
	2015	2016	2017			
경상북도	27.3%	50.0%	50.0%	-	-	54.5%
포항시	×	×	○	농촌인력지원센터	4,093	×
경주시	×	×	×	-	-	×
김천시	×	○	○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294	×
안동시	×	×	○	농촌인력중개센터	857	×
구미시	×	×	×	-	-	×
영주시	×	×	×	-	-	×
영천시	×	×	×	-	-	×
상주시	×	○	○	농촌인력지원센터	165	×
문경시	○	○	×	-	-	○
경산시	×	×	×	-	-	×
군위군	○	○	×	-	-	○
의성군	×	○	○	농촌인력중개센터	5,971	○
청송군	×	○	○	일자리지원센터	100	○
영양군	○	○	○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7,551	○
영덕군	○	○	○	농촌인력지원센터	13,587	○
청도군	×	×	×	-	-	○
고령군	×	×	○	도시노동력 농업 현장수송지원사업	365	○
성주군	×	○	×	-	-	○
칠곡군	×	×	×	-	-	×
예천군	×	○	×	-	-	○
봉화군	○	○	○	농촌일자리창출지원사업	713	○
울진군	○	×	○	농촌인력지원단 운영 사업	3,266	○
울릉군	-	-	-	-	-	-

주 1) 지표: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2) 울릉군은 섬 지역의 특성상 지표 산출에서 제외함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1개(50.0%)

6. 생활체육³

- 2017년 경북의 생활체육 지표값은 체육시설이 77.3%, 체육교실이 49.8%
 - 체육시설 지표값은 2015년 83.6%, 2016년 88.2%에서 2017년 77.3%로 다소 하락
 - 체육교실 지표값은 2015년 56.7%, 2016년 31.5%에서 2017년 49.8%로 다소 개선

-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할 경우, 경북에서는 14개(60.9%) 시·군에서 기준을 충족

〈표 3-9〉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평가

구분	지표값(%)						읍면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총읍면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교실			
경상북도	83.6	56.7	88.2	31.5	77.3	49.8	255	197	127
포항시	84.6	15.4	84.6	15.4	100.0	42.9	14	14	6
경주시	91.7	91.7	100.0	100.0	58.3	58.3	12	7	7
김천시	100.0	86.7	100.0	0.0	100.0	22.7	22	22	5
안동시	100.0	7.1	100.0	0.0	100.0	100.0	14	14	14
구미시	100.0	37.5	100.0	37.5	100.0	37.5	8	8	3
영주시	100.0	100.0	50.0	0.0	100.0	0.0	10	10	0
영천시	81.3	81.3	68.8	31.3	81.3	12.5	16	13	2
상주시	38.9	-	38.9	-	38.9	-	18	7	-
문경시	77.8	66.7	100.0	55.6	100.0	100.0	14	14	14
경산시	100.0	87.5	100.0	100.0	100.0	100.0	8	8	8
군위군	100.0	100.0	100.0	100.0	0.0	0.0	8	0	0
의성군	100.0	55.6	100.0	55.6	100.0	38.9	18	18	7

3 설문조사의 한계로 생활체육 이행실태 점검 값들은 연도별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지표 점검방법 및 수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분	지표값(%)						읍면 수		
	2015년		2016년		2017년		총읍면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 교실	체육 시설	체육교실			
청송군	-	-	100.0	37.5	25.0	25.0	8	2	2
영양군	100.0	100.0	100.0	0.0	100.0	100.0	6	6	6
영덕군	100.0	100.0	100.0	22.2	100.0	100.0	9	9	9
청도군	22.2	66.7	88.9	0.0	22.2	77.8	9	2	7
고령군	100.0	37.5	100.0	0.0	100.0	100.0	8	8	8
성주군	60.0	60.0	60.0	20.0	60.0	60.0	10	6	6
칠곡군	87.5	100.0	100.0	100.0	87.5	100.0	8	7	8
예천군	100.0	8.3	100.0	41.7	8.3	8.3	12	1	1
봉화군	100.0	16.7	100.0	33.3	80.0	30.0	10	8	3
울진군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	10	10
울릉군	100.0	33.3	100.0	0.0	100.0	33.3	3	3	1

- 주 1) 지표: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100
 2)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3) 2017년 경상북도 시·군 중 기준 충족 시·군 수는 14개(60.9%)

제 4 장

지역 우수사례: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1. 사례 개요

■ 추진배경

- 무인화, 자동화 등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지역일자리 창출력 약화
- 도내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인구과소지역 문제 대두
- 지역 내 외지청년 유입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도모

■ 사업목적

-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마을·지역의 공동 발전과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한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17년 2개 시범사업 시행)

- 사업 규모: 총 300명
 - 시범('17년) : 청년 유턴 일자리, 청년 마을 일자리 2개 사업 추진
 - 도입('18~'20년) : 시·군 사업으로 확대, 매년 100명 지원
 - 활성화('21년~) : 국비사업으로 확대 추진 건의
- 사업 분야: 일자리 창출
- 사업 장소: 도내 공모제안 선정 지역
- 사업 대상: 전국 39세 이하 청년
- 사업비: 27,000백만 원(도비 13,500, 시·군비 13,500)

2. 사업 내용

- 사업명: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 '17년 청년 유턴 일자리 사업 + 청년 마을 일자리 사업 ⇨ '18년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로 통합
- 사업 내용 : 외지 청년의 지역 정착 및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증진
- 활동 분야 : 문화예술, 청년 창업, 역사 탐방 등 신청자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
- 지원 금액 : 1인 30백만 원/3년간(사업 활동비 및 사업화자금)

〈표 4-1〉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활동분야(예시)

분야(예시)	대상 업종
문화예술	사진, 화가, 음악가, 문화 상품 개발 등 청년 문화예술 창작 활동
청년 창업	청년 카페, 기념품 판매,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역사 탐방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관련 상품 제작 등

〈표 4-2〉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사업 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운영비 (주택 임차, 교통비 등 사업 추진 간접 경비)
사업화 자금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원재료비, 장비 임차 등 사업 추진 직접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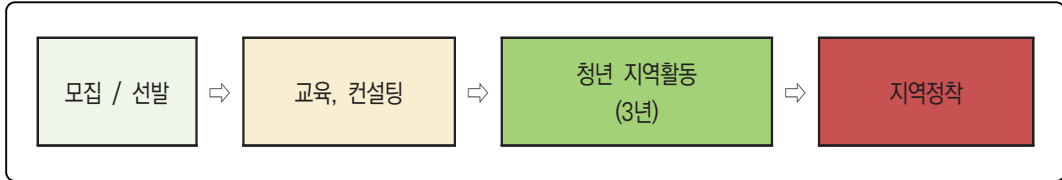
■ 추진체계

- 수행기관 : 지역협력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
- 주요기능
 - 지방 소멸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 지역 활력화 사업 연구 등
 -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이론적 연구 및 청년 유입 시책 제안

〈그림 4-1〉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체계



〈그림 4-2〉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절차



〈그림 4-3〉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추진 방법



■ 기대효과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 증진
- 청년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지역 지역공동체 복원 도모
- 다양한 창직, 창업 활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 모범 사례 제시

부록1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점검 방법	2019 목표치
보건 복지	복지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총족기준: 시·군별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 실적 지표 50 이상 	50.0
교육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서비스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시·군별 교육서비스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미만일 경우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 	100%
정주 생활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정보 제공 기준 총족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시·군별 교통정보 제공 총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정보 제공 수단 2개 이상 	100%
경제활동·일자 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가능 시·군수 / 총 시·군수) × 100 총족기준: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 1개 이상 	87.0%
	농업 일자리 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공급 가능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총족기준: 일자리 공급 서비스 1개 이상 	54.5%
문화 ·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및 체육교실 운영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체육시설, 체육교실 중 한 항목이 100%일 경우 기준 총족으로 간주 	66.7%

부록2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평가 조사표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 평가

대구경북연구원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재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 2015년부터 기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
 - 국가관리 핵심 항목은 삶의 질 계획과 매칭하여 7대 부문 17개 항목으로 개편(기존: 9개 부문, 32개 항목)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자체 기준** 마련 유도

2016년부터 삶의 질 계획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이 국가관리 핵심 항목과 지자체 관리 선택 항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6개의 선택 항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2017년 동안 6개 선택 항목의 **이행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목표 설정과 정책 사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선정한 6개 선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복지통합시스템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한 조사입니다.

〈경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구분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보건복지	복지 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교육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농업 일자리 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시 군 명:** ()시/군

■ **작성부서:** ()

1. 교육 다양성

귀하의 시·군에 설치되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시설 혹은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최대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사업, 시설명	교육 내용	비고

(응답예시)

사업, 시설명	교육 내용	비고
원어민 영어수업 지원	초등학교 영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채용 지원	
청소년 수련관	6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진로 상담 버스	연 2회 진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017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김철민 연구위원

차 례

제1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 1. 연구 필요성 351
- 2. 연구 목적 352
- 3. 연구 추진 방법 353

제2장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 1. 선택 항목 선정 355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359

표 차례

제2장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357
<표 2-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358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 인원)	360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진료실적(실 인원)	361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362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363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365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366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368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369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370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371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372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373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374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2016년 기준)	376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377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359
----------------------------------	-----

제 1 장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¹

1. 연구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년)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의 다양한 현실 반영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369~372 재작성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모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 이 연구는 경상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3년 차 연구로서 선택 항목 이행실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사업이나 정책의 실효성 평가 등 개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선택 항목의 변경, 선정된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수정, 이행실태 점검 방법의 개선 그리고 각 선택 항목별 목표치에 대한 수정 등이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격차가 큰 부분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치가 달성되고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항목으로 변경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사업시행 초기와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
 - 이행실태의 점검 방법은 처음 적용하였던 것보다 더 쉽게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함.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선택 항목을 포함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각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선택 항목 선정을 위해 ① 삶의 질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전문가 협의체(경우에 따라 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를 구성하여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② 지역주민의 수요조사 및 관련 전문가(도청 관련 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을 논의·확정함.
- 시·군의 협조를 얻어 선정된 선택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선택 항목의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년)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

3. 연구 추진 방법

■ 포괄적 의견수렴

- 담당자 인터뷰 조사 실시: 관련전문가(공무원 포함)의 인터뷰를 통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 자문회의 및 워크숍 실시: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방법 타당성 논의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논의

■ 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료 중, 공식통계를 제외한 내부 자료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자료 구득

■ 현장방문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현장 조사(필요시) 및 수범사례 지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제 2 장

경남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1. 선택 항목 선정

1.1. 선택 항목 지표 선정

■ 목적 및 원칙

- 경상남도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과 지표를 선정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삶의 질과 관련한 농어촌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상남도의 선택 항목과 지표의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음.
 - ① 경남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 ② 경남의 특색을 잘 반영하고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
 - ③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 ④ 경남의 각 시·군이 모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사업
 - ⑤ 달성률 등 정량적으로 제시가 가능한 사업

■ 선정배경

- 선택 항목 지표 선정 방법
 - 경상남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 계획 사업 분석
 - 경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 검토
 - 경남 도정 복지보건 정책 분석
 -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

- 수범사례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의 모범 사례 발굴

■ 선택 항목 선정

○ 경상남도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선정됨.

〈표 2-1〉 경상남도 지자체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부문	선택 항목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1. 보건복지	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와 출산을 돕는다.
2. 교육여건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대상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주 1회 학생 개별 방문 지도를 제공한다.
	3) 서민자녀 교육지원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3. 정주생활 기반	4) 독거노인 공동생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한다.
4. 경제활동 일자리	5)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5. 문화·여가	6) 실내수영장 설치	지역에서 수영활동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이 있고, 수영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375 인용

■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방법과 점검 수단은 다음과 같음.

〈표 2-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및 점검 수단

선택 항목	점검 방법	점검 수단	
1)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출산 건수 / 그 지역의 출산 건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통계청 출생 자료	공식통계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멘토링 지원학생 수 / 멘토링 지원대상 학생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공식통계
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예산 증감액 / 전년도 사업예산)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4)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동생활 독거노인 수 / 공동생활을 원하는 독거노인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시·군 조사	협조자료
5)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 /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통계청 출생 자료	공식통계
6) 실내수영장	(시·군별 수영장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경상남도 자료	협조자료
		시·군 조사	협조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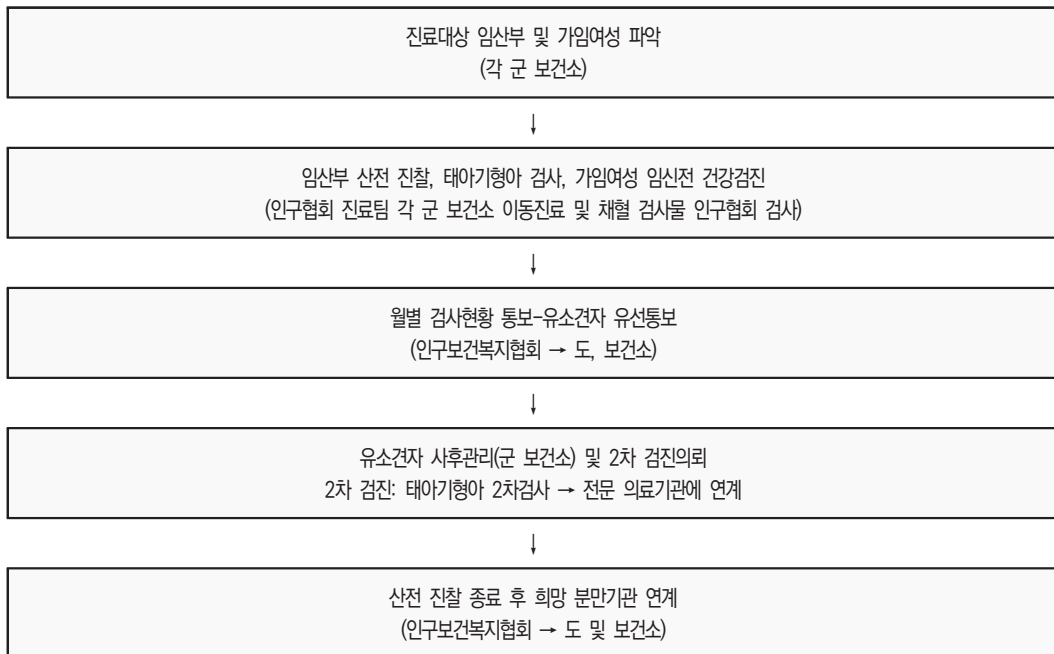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376 인용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의 주요 결과

2.1. 임신부 관리(찾아가는 산부인과)

- 도시 지역과 달리 농촌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여 임신부의 산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건강한 출산을 돕는 등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그림 2-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추진 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377 인용

- 경상남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은 당초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의 6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3년 합천에 산부인과가 개원되었고 2016년에 하동군에도 개원됨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4개 군 지역으로 축소됨.
 - 진료를 위해 차량 1대를 이용하여 월 2~4회 순회 검진을 실시함.
 - 운영인력 : 6명(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행정요원, 운전원)
- 검진 내용은 임신부 무료 산전 진찰, 가임기 및 비가임기여성 부인과 검진 등임.
 - 태아 초음파 등 산전 진찰(표준 산전 의료서비스 1인 총 13회)
 - 가임 및 비가임여성 부인과 검진 등
 - ※ 연간 평균 검진 횟수 150여 회, 검진건수 2,500여 건(일반가정 2,000여 건, 다문화 500여건)
 - ※ 이동검진차량 : 1일 기준 평균 18명 정도 검진
-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실적은 가임 여성의 수나 출산율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 다음 표와 같음.
 - 가임여성을 진료한 연 인원은 2013년 446명에서 2015년 32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6년 865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의 홍보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2-3〉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가임여성 진료실적(연 인원)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령	83	49	48	224
고성	127	34	54	209
하동	155	129	71	-
산청	81	41	80	175
함양		26	75	257
계	446	279	328	865

- 임신부를 진료한 실 인원 수는 2011년 693명이었으나 2013년 592명으로 감소하였고 5개 군 지역을 진료한 2013년에는 402명으로 감소하다 2014년 530명으로 증가하고 2015년 419명, 2016년 398명으로 감소함.

〈표 2-4〉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신부 진료실적(실 인원)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령	74	69	60	107	54	75
고성	165	172	117	131	123	108
하동	144	114	81	121	58	-
산청	59	53	43	67	93	96
함양	126	133	101	104	91	119
합천	125	51	-	-	-	-
계	693	592	402	530	419	398

-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신부가 필요한 산전 관리 서비스를 얼마나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가 될 것임.
-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신부들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근지역 또는 대도시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게 됨.
 -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 임신부의 절반인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설정함.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 임신부의 50% 이상이 ‘찾아가는 산부인과’ 혜택을 받는다.

-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행실태 점검은 산부인과가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연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신부 실 인원의 수 / 연간 출생아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표 2-5〉 경남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률

단위: 명, %

지 역	출생아 수(A)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생 수(B)		이용률(B/A)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창원시	9,526	8,574
진주시	2,687	2,624
통영시	1,233	1,059
사천시	968	871
김해시	5,182	4,700
밀양시	617	638
거제시	3,533	3,233
양산시	3,079	2,901
시 합계	26,825	24,600
의령군	141	123	54	75	38.3	61.0
함안군	510	474
창녕군	374	389
고성군	315	273	123	108	39.0	39.5
남해군	182	140
하동군	240	228	58	-	24.2	-
산청군	234	207	93	96	39.7	46.4
함양군	209	178	91	119	43.5	66.9
거창군	338	352
합천군	169	174
군 합계	2,712	2,538	419	398	15.4	51.0
경남(계)	29,537	27,138	419	398	46.5	51.0

- 산부인과가 없는 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임신부의 실 인원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연도별 군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이용함.
- 2015년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용 출생아 수는 419명이었고 2016년에는 398명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서비스기준(5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2015년에는 하나도 없었으며 2016년에는 의령군과 함양군의 2개 군이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의령군과 함양군의 진료 실적은 2016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6.9	39.5	51.0	2/5	40.0	
도농복합시	-	-	-	-	-	
전체 경남	66.9	39.5	51.0	2/5	40.0	

2.2. 교육기회(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부모의 빈곤, 저학력, 결손 등으로 성장기에 다양한 경험, 조언·조력이 부족한 실정임.
 -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활력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업 증진과 함께 건전한 사회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6학년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임.
 - 멘토 대학생의 자격은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또는 졸업생도 포함
 - 멘토 대학생과 멘티를 동성조합으로 1:1로 매칭
 - 멘토가 선정된 멘티 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1회 2시간) 개별 방문하여 지도하는데 월 1회는 문화체험을 하도록 함.
 - 멘토는 실비, 교통비,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되고 멘티는 문화체험비, 보험료, 교재비가 지급됨.

멘토링 지원 대상자의 10% 이상이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지원을 받는다.

-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멘토링 지원 학생 수 / 시·군별 기초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6 ~ 고1 학생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멘토링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멘토링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이용하여 산출함.

〈표 2-7〉 기초수급자 자녀 대학생 멘토링 지원 비율

단위: 명, %

지 역	대상 학생 수(A)		지원 멘티 수(B)		지원 비율(B/A)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창원시	3,103	2,582	139	115	4.48	4.45
진주시	1,503	1,283	0	0	0.00	0.00
통영시	626	561	7	15	1.12	2.67
사천시	492	406	20	20	4.07	4.93
김해시	1,969	1,671	80	80	4.06	4.79
밀양시	521	432	18	25	3.45	5.79
거제시	384	363	3	12	0.78	3.31
양산시	878	798	16	25	1.82	3.13
시 합계	9,476	8,096	283	292	2.99	3.61
의령군	89	71	5	3	5.62	4.23
함안군	212	176	10	10	4.72	5.68
창녕군	234	182	4	5	1.71	2.75
고성군	197	169	6	6	3.05	3.55
남해군	181	133	10	10	5.52	7.52
하동군	215	183	7	10	3.26	5.46
산청군	144	127	6	6	4.17	4.72
함양군	180	151	11	10	6.11	6.62
거창군	292	245	9	10	3.08	4.08
합천군	179	128	10	10	5.59	7.81
군 합계	1,923	1,565	78	80	4.06	5.11
경남(계)	11,399	9,661	361	372	3.17	3.85

- 2017년 경상남도 기초수급자 자녀 초6~고1 학생의 수 9,661명의 3.9%인 372명이 멘토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나누면, 군 지역은 80명이 지원을 받아 5.1%, 도농복합시는 292명이 지원을 받아 3.6%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1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대학생 멘토링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7.81	2.75	5.1	0/10	0.0	
도농복합시	5.79	0.0	3.6	0/8	0.0	
전체 경남	3.85	0.0	3.9	0/18	0.0	

2.3.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바우처 사업) 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이용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서민자녀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시·군 자율 시행으로 시·군비로 추진
 - 사업 대상은 소득하위계층 3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임.

- 당초 서민자녀 교육지원 분야는 기초학력 향상, 교육 경비 지원, 교육 여건 과 학생 안전 개선 등의 3개로 나누어 시작되었으나 2016년부터는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세 종류로 나누어짐.

- 바우처 사업은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학습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비 지원 등임.
 -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지원,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 지원, 서민자녀 특기 적성교육 지원 등으로 학기 중 수시로 실시함.
 -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은 기숙형 학사,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등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루어짐.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업의 만족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1인당 지원 액수를 증액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경상남도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6년 말 조사 결과 만족도가 98%로 높게 나타나 만족도를 서비스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나 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둘 다 사업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일정 수준까지의 사업 예산의 확대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를 서비스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 이상 증액한다.

-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사업 예산 증감액: 계획년도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전년도 사업 예산) / 전년도 사업 예산)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자료는 경상남도과 각 시·군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을 이용함.

〈표 2-9〉 시군별 서민자녀 교육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역	2016	2017	증감율(%)
창원시	7,153	6,506	-9.0
진주시	4,274	4,188	-2.0
통영시	2,536	2,020	-20.3
사천시	1,739	1,446	-16.8
김해시	6,266	7,081	13.0
밀양시	1,903	1,969	3.5
거제시	1,386	1,565	12.9
양산시	4,277	4,397	2.8
시 합계	29,534	29,172	-1.2
의령군	910	600	-34.1
함안군	886	1,424	60.7
창녕군	1,051	994	-5.4
고성군	1,017	1,022	0.5
남해군	874	812	-7.1
하동군	1,065	972	-8.7
산청군	699	668	-4.4
함양군	798	763	-4.4
거창군	1,282	1,276	-0.5
합천군	911	878	-3.6
군 합계	9,493	9,409	-0.9
경남(계)	39,027	38,581	-1.1

○ 경상남도 서민 자녀 예산지원액은 2016년 390억 원에서 2017년 386억 원으로 4.56억 원이 감소하여 감소율이 -1.1%이었음.

- 지역별로 나누면 시 지역은 3.6억 원 감소하여 -1.2%, 군 지역은 0.8억 원이 감소하여 -0.9% 감소하였음.

○ 서비스기준(사업 예산 5% 이상 증액)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8개 도농 복합 시 가운데 김해시와 거제시의 2개 시이고, 10개 군 지역 가운데 함안군 1개 군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60.7	-34.1	-0.9	1/10	10.0	
도농복합시	13.0	-20.3	-1.2	2/8	25.0	
전체 경남	60.7	-34.1	-1.1	3/18	16.7	

2.4.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은 홀로어르신의 생활편의 제공, 고독사 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 거주를 통한 홀로어르신의 소외감 극복, 정서적 안정감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 2007년 전국 최초로 의령군 의령읍 만천리 만상, 용덕면 용소리 상용소의 2개소에서 시범 실시되어 도내 전역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음.
 - 독거노인 5~10인 공동생활가정(숙식)
 - 도는 공공생활가정 시설보수비 지원 및 총괄 관리하고 시·군과 읍·면·동은 공동생활가정 시설보수 및 운영 지원과 건강관리, 생활 지원, 노노케어, 자원봉사 연계 등을 추진함.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사업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홀로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의 일정 수준 이상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홀로어르신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공동생활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실정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서비스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왜냐하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수요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임.
 -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초기에 수요가 낮게 나타날 수 있고 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단계에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서비스기준은 시·군 당 일정 수의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것으로 함.
-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생활가정을 홍보 수단으로 하여 점차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임.

〈표 2-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현황과 달성률

단위: 개소, %

지 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A)	읍·면·동 수 (B)	달성률 (A/B)
창원시	3	1	0	1	5	62	8.1
진주시	1	1	1	-	3	32	9.4
통영시	1	1	1	1	4	15	26.7
사천시	1	1	1	-	3	14	21.4
김해시	1	0	0	-	1	19	5.3
밀양시	1	1	1	1	4	16	25.0
거제시	1	0	0	-	1	19	5.3
양산시	1	0	0	2	3	13	23.1
시 합계	10	5	4	5	24	190	12.6
의령군	1	6	3	2	12	13	92.3
함안군	1	1	2	1	5	10	50.0
창녕군	1	6	6	6	19	14	135.7
고성군	1	2	2	4	9	14	64.3
남해군	1	1	1	3	6	10	60.0
하동군	1	2	2	3	8	13	61.5
산청군	1	2	5	1	9	11	81.8
함양군	1	2	1	1	5	11	45.5
거창군	1	2	3	2	8	12	66.7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A)	읍·면·동 수 (B)	달성률 (A/B)
합천군	1	2	0	1	4	17	23.5
군 합계	10	26	25	24	85	125	68.0
경상남도계	20	31	29	29	109	315	34.6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한다.

-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 / 시·군별 행정 읍·면·동 수) × 100의 식을 통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읍·면·동 수는 경상남도의 통계 자료를 이용함.
- 시·군의 읍·면·동에 평균 1개 이상 설치하는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창녕군 1개 군이며 의령군은 기준에 하나가 모자람.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공동가정 설치 필요성이 떨어져 달성률이 낮았음. 군 지역은 창녕군이 135.7%의 달성률을 보여 가장 높았으며 합천군이 23.5%로 가장 낮았음.

〈표 2-12〉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기준 이행실태(2017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35.7	23.5	68.0	1/10	10.0	
도농복합시	26.7	5.3	12.6	0/8	0.0	
전체 경남	135.7	5.3	34.6	1/18	5.5	

2.5. 농가도우미

-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과 기초적인 가사 생활 보장을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남도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자 함. 농가도우미가 출산 여성의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지원 대상은 도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업인이나 국제 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임.
 - 지원 내용은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90일 까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할 경우, 도우미 1일 기준 단가의 85%를 지원
 - 2004년까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방 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29명 까지 지원하였으나 이후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2011년 286명, 2013년 73명, 2015년 127명, 2016년에는 170명을 지원하였음.

〈표 2-13〉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

단위: 명

지 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 합계	66	63	37	36	30	48
군 합계	220	155	136	122	97	122
경상남도 합계	286	218	173	158	127	170

-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음.

〈표 2-14〉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지원 비율

단위: 명, %

지 역	출생아 수(A)		지원 인원 수(B)		지원 비율(B/A)	
	2015	2016	2015	2016	2015	2016
창원시	9,526	8,574	2	2	0.02	0.02
진주시	2,687	2,624	10	17	0.37	0.65
통영시	1,233	1,059	0	1	0.00	0.09
사천시	968	871	1	7	0.10	0.80
김해시	5,182	4,700	2	1	0.04	0.02
밀양시	617	638	15	18	2.43	2.82
거제시	3,533	3,233	0	1	0.00	0.03
양산시	3,079	2,901	0	1	0.00	0.03
시 합계	26,825	24,600	30	48	0.11	0.20
의령군	141	123	6	10	4.26	8.13
함안군	510	474	1	1	0.20	0.21
창녕군	374	389	4	10	1.07	2.57
고성군	315	273	2	4	0.63	1.47
남해군	182	140	0	1	0.00	0.71
하동군	240	228	18	23	7.50	10.09
산청군	234	207	11	10	4.70	4.83
함양군	209	178	28	26	13.40	14.61
거창군	338	352	20	20	5.92	5.68
합천군	169	174	7	17	4.14	9.77
군 합계	2,712	2,538	97	122	3.58	4.81
경남(계)	29,537	27,138	127	170	0.43	0.63

도우미가 필요한 출산 여성농업인의 20% 이상이 지원을 받는다.

- 농가도우미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농가도우미 지원 인원수는 경상남도의 자료를 이용함.
 - 시·군별 출산 여성농업인 수는 먼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서

시·군별 출생수를 가져옴.

- 다음으로 시·군별 농가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자비율을 산출함.
 - 시·군별 전체 출생 수에 여자 농가인구의 비율을 곱하여 여성농업인의 출산 건수를 추정함.
- 2016년 경상남도 군 지역 출생아 수 2,538명의 4.8%인 122명이 농가도우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도농복합시는 0.2%의 달성률을 나타냄.
- 그러나 서비스기준(2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한 곳도 없었음.

〈표 2-15〉 농가도우미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4.6	0.0	4.8	0/10	0.0	
도농복합시	2.8	0.0	0.2	0/8	0.0	
전체 경남	14.6	0.0	0.6	0/18	0.0	

2.6. 공공체육시설(수영장)의 배치

- 사업개요
-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되고, 운영·관리되는 체육시설임.
 - 체육시설은 체육활동 참가자가 적극적이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환경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포괄적으로는 ‘운동에 필요한 물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 한 시설과 용기구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음.

- 반면, 협의의 개념으로는 ‘운동학습을 위한 각종의 장소’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음.

- 여기서는 여러 공공체육시설 가운데 경상남도 시·군 수영장의 설치 개소수를 이용하여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자 함.
 - 수영장은 수도권 지역과 대구,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 불균형이 큰 체육시설의 하나임.
- 수영장은 서비스 거리 반경 5km로 분석했을 때 도시 지역의 상당수가 시설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나타나지만 농어촌 지역은 비혜택 인구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군 지역에 인구 4.5만 명당 1개소 이상의 수영장을 설치한다.

- 수영장 배치 항목 이행실태 점검은 (시·군별 수영장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의 기준을 적용해서 이루어짐.
- 시·군별 수영장 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년 말 기준)”를 이용함.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를 조사하여 수영장의 설치 수를 평가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인구 수로 대신함.

〈표 2-16〉 시군별 공공 수영장 배치 현황(2016년 기준)

단위: 개, 명, %

지 역	수영장 수(A)	4.5만 명당 인구 수 (2016년 기준, 명)(B)	배치비율(A/B)
창원시	10	23.6424	42.3
진주시	1	7.7053	13.0
통영시	2	3.0702	65.1
사천시	1	2.5536	39.2
김해시	1	11.7649	8.5
밀양시	1	2.4079	41.5
거제시	1	5.7152	17.5
양산시	0	7.0453	0.0
시 합계	17	63.9048	26.6
의령군	1	0.6247	160.1
함안군	0	1.5319	0.0
창녕군	0	1.4218	0.0
고성군	1	1.2156	82.3
남해군	2	1.0029	199.4
하동군	0	1.1027	0.0
산청군	1	0.8022	124.7
함양군	0	0.8942	0.0
거창군	0	1.4068	0.0
합천군	1	1.0672	93.7
군 합계	6	11.0702	54.2
경남(계)	23	74.97491	30.7

- 2016년 말 기준 경상남도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전체 23개로 창원시에 10개소가 있는 등 주로 시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음.
- 경남의 시 지역에서 수영장이 없는 시는 양산시 하나이고,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이 수영장이 없는 지역임.

- 수영장이 없는 시·군은 이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수영장이 없는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가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비스기준(100.0% 이상)을 달성한 지역은 전체 18개 시·군 가운데 3곳으로 주로 군 지역에 있음.

〈표 2-17〉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기준 이행실태(2016년 기준)

단위: %, 개

지역구분	최대값	최소값	달성률	서비스기준 달성 지역		비고
				달성 시·군 수	달성 시·군 비율	
군	199.4	0.0	54.2	3/10	30.0	
도농복합시	65.1	0.0	26.6	0/8	0.0	
전체 경남	199.4	0.0	30.7	3/18	16.7	

2017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 승 철 책임연구원

차 례

제1장 연구의 개요

- 1. 배경 및 필요성 385
- 2. 연구의 목적 387
- 3. 연구의 범위 388

제2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방법

-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389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395

제3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분석

-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397
-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399
-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414
-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420

제4장 수범사례 발굴

- 1. 교통 취약지 이동권 지원 사업 421

표 차례

제2장

-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390
- <표 2-2> 제주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계획상 정책 및 사업 391
- <표 2-3> 2016년도 및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 394
- <표 2-4>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394
- <표 2-5>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방법 및 목표치 395

제3장

- <표 3-1> 제주도 슬레이트 처리 실적 400
- <표 3-2> 제주도 석면 슬레이트 투자 실적 401
- <표 3-3>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계획 404
- <표 3-4> 시별 읍·면·동 마을기업 유사 단체 현황 407
- <표 3-5> 읍·면 지역 단체 현황 407
- <표 3-6>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실적 411
- <표 3-7> 2015년 제주 지역 재해보험 가입실적 412
- <표 3-8> 향후 투자 계획 415
- <표 3-9> 출산 농어가 농가 도우미 지원 실적 416
- <표 3-10> 2017년 농업인 재해보험 실적 419
- <표 3-11>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 여부 420

제4장

- <표 4-1> 교통 소외 지역 노선 수익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422

그림 차례

제3장

<그림 3-1> 제주도 농어촌 12개 읍·면 지역	398
-----------------------------------	-----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도입 배경

- 최근 정부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농어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여건 변화와 특수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채 일률적인 투자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효과의 극대성이 저하되어왔음.
- 이에 중앙정부는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대, 도·농간의 공공서비스의 격차 완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도입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농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정책임.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 강화 필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

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 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삶의 질 정책 추진 필요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중 일부 항목(여객선, 도서·벽지 응급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함.
- 농어촌 지역 간 다양한 수요 차이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지자체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기준을 세우며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필요

- 2015년 이후 각 지자체별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을 도출하여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음.
- 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에 대하여 2016년부터 지자체별로 선택 항목을 공식 확정하고,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의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자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현황에 대한 점검, 평가와 서비스 기준 관련 지자체에서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례의 발굴·공유 등 지역 단위에서 삶의 질 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점검, 평가를 위해서는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생성하는 행정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이 필요

하고, 사례 조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의 여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연구자들을 통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및 공유 필요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관련된 수범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

2. 연구의 목적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 기준 선택 항목의 선정과 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며, 수범사례를 발굴하고자 함.
 -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그동안 점검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선택 항목을 일부 포함하여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선택 항목을 선정하고 제 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기간(2015-19)동안 달성해야 할 중기목표치 제시 및 그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양호한 항목 또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지역 수범사례 발굴하여 확산함.

3. 연구의 범위

○ 공간 및 시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읍·면 지역
- 2017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 내용적 범위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분석
- 제주도 읍·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수범사례 발굴

제 2 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및 점검¹

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1.1. 선택 항목 선정 목적 및 원칙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의미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고, 동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여 나가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핵심 항목을 보완하여 농어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투입의 요구가 높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416~422 재작성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선정의 목표와 원칙을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표 2-1〉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선정 목표 및 원칙

구분		내용
지표 선정 목표		-수혜자: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 제공 -공급자: 정책 투입정도의 정확한 진단
지표 선정 원칙	부문	-전체의 부문이 아닌 핵심부문 및 항목을 선정하여 지표 설정
	영역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함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내부자료 기초
	지자체 차별성	-지자체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선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17 인용

- 첫째,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의 정책투입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 제주도가 수립한 ‘제3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15. 4. 16.)상의 세부 추진 과제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도출함.
- * 이 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 지원 사업들을 종합 체계화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되 H/W 중심이 아닌 S/W중심 지표를 선정함.
- 셋째, 점검 용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자료 기초로 획득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 넷째, 공급자의 노력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평가의 목표는 제주도 농어촌 주민 복지 사

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를 통해 농어촌 복지 체계를 확립하는 것임.
 부문별 발전 목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맞춤형·밀착형 복지 의료 서비스 구현
- 농어촌 지역사회와 함께 연대 공교육 서비스 및 인적 역량 강화
- 주민 주도의 내발적 지역 발전 및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 농어촌 소득의 다각화 및 상생경제 실현
- 풀뿌리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과 지역특성 문화 활동 활성화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환경 기반 구축 및 보전
- 지역 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통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계획 (2015~2019년)상의 부문별 정책과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2-2. 참조).

〈표 2-2〉 제주도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계획상 정책 및 사업

부문	정책	사업
보건 복지 증진	농어업인에 특성화된 사회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료 50%경감 지원 지속 -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50% 지원 - 농업인 재해공제 가입률 제고 (‘15)49.1%→(‘19)51.0%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지원 - 농작업 재해 원인규명 및 안전기술 개발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농어촌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기반구축 및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농어촌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 보육시설 전입면 시설 개보수 - 야간보육, 휴일운영 등 보육프로그램 - 보육교사에 특별근무수당 -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 출산시 영농대행 농어가도우미 지원 확대
교육 여건 개선	농어촌특성 반영 교육단계별 공교육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학교설리기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 - 유치원 방과후 과점 운영 - 초등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부문	정책	사업
	농어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확충, 지역 인 재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역량 강화 및 직업교육 선진화, 취업역량 강화 -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 및 다문화교육 내실화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15)37개교→(‘19)40개교
	농어촌 학생의 교육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고교생 교통비 지원 - 고등학생 기숙사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급식비 지원
생활권 기반	정주체계간 연계를 통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육학지원 사업 추진 - 귀농귀촌 농촌정착지원 및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주도 생활체감형 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육성 - 어촌체험관광 개발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에너지 복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 개량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 농어촌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 농어촌지역 소형 LPG 소형탱크 및 도서지역 자가발전 사업 추진 - LPG인수기지 태양광 설치 및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
	농어촌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홈(home), 공동급식시설 지원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정비
경제 활동· 일자리 창출	농어촌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15)8개 마을→(‘19)12개 마을 -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15)8개 마을→(‘19)15개 마을 - 지역 농수협외 복지사업 내실화 및 서비스확대
	농어업인 창업촉진 및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 여성농 및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농어촌 관광 고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대표 향토음식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자생식물원 조성 및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농어촌 인력 미스매치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자 취약계층 구인구직 만남 지원 - 특성화고 해외 인턴십 지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문화· 여가	생활 체험형 문화·여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 및 아트빌리지 조성 - 실버아티스트 창작문화활동 위한 지역공동체 함양
	주민참여형 문화 프로그램 및 동호회 네트워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및 소외지역 문화예술 공연 - 동호회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유무형 농어촌 문화자원 발굴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편찬 및 제주어 보존활동지원 - 향토문화 유산 정비 및 해녀문화 유산 전승
	문화전문 인력 육성 및 양질의 문화콘텐츠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부문	정책	사업
환경·경관	주민주도의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활용	- 농어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 - 생태 우수마을 보전 및 정비 - 하천 및 습지 복원을 통한 생태문화 공원 조성 - 오름 곳자왓 자연환경보전 이용
	농어촌 주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가족분뇨 통합 관리 및 악취 방제 시스템 보급 - 조건불리지역 및 경관보전 직불금 지원 - 폐농약 폐비닐 수거처리 개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생산 환경 조성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 도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1.2. 선정 절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 및 연구 책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2017년도 선택 항목을 조정·확정하였음.
 - 선택 항목의 선정은 제주 지역 자체적으로 선택 항목 선정을 위한 관련 부서 담당자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동안 점점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정주생활기반 항목 2건을 신규로 포함하였음.

1.3. 선택 항목 선정

-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부문은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4개 부문임.
 -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은 4개 부문, 6개 항목으로 최종 선정함.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 2개 항목,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 2개 항목, 문화·여가 부문에 1개 항목, 안전 부문에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항목을 보면 1) 석면 슬레이트,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3) 농가도우미, 4) 마을기업, 5) 행복바우처 카드, 6) 재해보험료 지원임(표 2-3. 참조).

〈표 2-3〉 2016년도 및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비교

2016년도		2017년도	
부문	선택 항목	부문	선택 항목
교육 여건	1) 농어업인 자녀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정주 생활 기반	1) 석면 슬레이트(신규)
경제 활동 일자리	2) 6차산업화 활성화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신규)
	3) 6차산업화 매출확대	경제 활동 일자리	3) 농가도우미(계속)
	4) 농가도우미		4) 마을기업(신규)
	5) 제주지역 귀농귀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서비스		
문화·여가	6) 행복바우처 카드	문화·여가	5) 행복바우처 카드(계속)
안전	7) 재해보험료 지원	안전	6) 재해보험료 지원(계속)

〈표 2-4〉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 내용
1. 정주 생활 기반	1) 석면 슬레이트	농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 사업을 매년 총량 대비 2% 이상 감소하도록 추진한다.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운영한다.	읍면지역 산간마을에 20% 공영버스가 100% 운행한다.
2. 경제 활동 일자리	3) 농가 도우미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의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도우미를 100% 지원한다.

부문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세부 내용
	4) 마을기업	농어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농협이외의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각 읍·면당 7개 단체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
3. 문화 여가	5) 행복바우처 카드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를 활용하는 실적을 신청가능수의 20%이상 실적을 보이도록 한다.
4. 안전	6)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	농업인 재해보험료 가입자수를 매년 3000명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 방법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표 2-5>와 같음.

<표 2-5>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점검방법 및 목표치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지표	목표치		
				17	18	19
1. 정주 생활 기반	1) 석면 슬레이트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총 슬레이트 주택 수) X 100	석면 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 총슬레이트 주택 수	2% 이상 감소	2% 이상 감소	2% 이상 감소
	2) 대중교통취약지역 지원 사업	{도전체마을 수-중산간 마을/ 전체마을 수} X 100	공영버스 운행 마을 수, 공영 버스 미운행 마을 수	100%	100%	100%
2. 경제 활동 · 일자리	3)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출산여성농업인수) X 100	농가도우미지원가구, 출산여성농업인수	100%	100%	100%
	4) 마을기업	각 유형별 단체 수/전체 읍·면 수	마을기업단체 수, 사회적기업 단체 수, 협동조합단체 수	7개 이상	9개 이상	11개 이상

부문	선택 항목	점검방법	점검지표	목표치		
				17	18	19
3. 문화· 여가	5)행복바우처 카드	(행복바우처 신청 수/여성농업인수)X100	행복바우처 신청 수, 여성농업인수	20%	25%	30%
4. 안전	6)재해보험료 지원	(재해보험 농가수/재해보험 품목 수)X100	재해보험 농가 수, 재해보험 품목 수	3,000 농가	3,000 농가	3,000 농가

제 3 장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이행실태 평가 분석

1. 선택 항목 점검 개요

1.1. 점검 방법

- 목표치를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실태 정도를 점검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를 설정하여 매년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실태 정도를 파악함.
 - 통계 조사의 경우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 내부자료 활용함.
 - 통계 조사의 경우 공식통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지자체의 노력으로 파악함.

1.2.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 구축

- 소프트웨어 특성을 지닌 지표를 많이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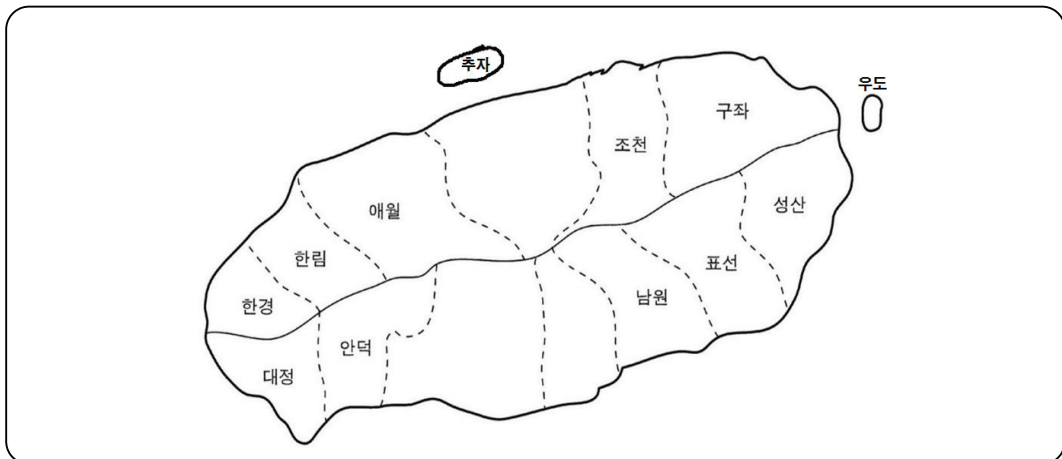
-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4개 부문 6개 항목으로 구성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지자체 행정조사 6개 자료로 구축함.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특성을 살펴보면, 하드웨어 특성에 대한 지표보다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가진 지표가 많이 구축됨.

1.3.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 범위는 읍·면 지역으로 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지역 범위는 12개 읍·면으로 구성됨.
 - 제주시 지역 구좌읍, 조천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등 4읍 3면과 서귀포지역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안덕면, 대정읍 등 3읍 2면이 있음.
 - 제주시 지역 읍·면 지역 마을 수는 7개 읍·면, 96개 리이고, 서귀포시 지역 읍·면 지역 마을 수는 5개 읍·면, 72개 리가 있음.

〈그림 3-1〉 제주도 농어촌 12개 읍·면 지역



2. 선택 항목 이행실태

2.1. 석면 슬레이트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조기 철거로 도민 건강 피해 예방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으로 철거비용 지원
- 사업 시행 근거: 석면 안전 관리법 제3조 및 제25조,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0. 12.)
-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 증대
 - * 석면으로부터 국민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처리 시급
- 처리비용 상승으로 자발적 처리에 한계
 - *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 환경 개선에 소극적, 무단 방치, 불법 폐기 등 위법 사례 증가
- 슬레이트 조속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 슬레이트 석면 피해에 대한 국민 불안 증가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처리 지원 등 촉구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기준: 농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농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호수/ 총 슬레이트 주택 수)X100

- 점검 수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 담당 부서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총 슬레이트 주택 수 파악 및 연도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을 점검 평가함.
-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공 받았으며, 총 슬레이트 주택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사 자료’를 점검 수단으로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대상 지붕 현황에 나타난 전체 총 슬레이트 주택의 수로 나눈 비율 자료를 사용
-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대상 주택의 비율인 석면 슬레이트 주택의 감소율로 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함.

○ 선택 항목 현황

- 제주도내 슬레이트 현황은 50,137동에 달함.
 - * 제주시 지역 23,543동, 서귀포시 지역 26,594동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석면 슬레이트를 50,137동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3,934동 건물을 개선하였음.
- 그동안 연도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추진 실적(표 3-1. 참조)

〈표 3-1〉 제주도 슬레이트 처리 실적

(단위: 천 원)

연도별	사업비	처리 동 수
2011년	234,148	110동
2012년	432,000	216동
2013년	1,464,736	757동
2014년	2,649,600	943동
2015년	2,627,520	976동
2016년	2,565,696	932동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1.56% 정도씩 석면 슬레이트 건물 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제주도 석면 슬레이트 투자 실적

(단위: 천 원)

재원별	합계	기 투자			
		'16년까지		'17년 최종	
		금액	사업량	금액	사업량
합계	9,867,000	7,179,000	3,934동	2,688,000	1,434동(예상)
국고보조금	4,933,500	3,589,500		1,344,000	
도비	4,933,500	3,589,500		1,344,000	

2.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제주 지역 버스업체 폐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버스를 운영
- 그동안 제주 읍·면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의 폐업 현황은 2001년에 한일여객, 2004년에 서귀포교통, 2005년에 서귀포 남국교통, 대화여객 등 모두 4개사가 폐업한 바 있음.
- 이후 2003년과 2004년 시내버스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공영버스를 운행하면서 폐업 업체 운전원 고용문제, 폐업에 따른 도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왔음.
- 공영버스 운행 노선은 제주시 북동지선 10개 노선, 제주시 북서지선 16개 노선, 서귀포시 남동지선 13개 노선, 서귀포시 남서지선 6개 선이 읍·면지역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

○ 선택 항목 서비스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기준 :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 수단을 공급한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공영버스 운행 마을 수/ 전체 마을 수) X100**

- 점검수단과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 담당 부서의 자료를 활용하여 읍·면지역 전체 마을 수에서 공영버스 운행 마을 수로 나눔.

○ 선택 항목 현황

- 공영버스 운행은 모두 45개 노선에 90대가 운행하고 있음.
- 노선별로는 제주시 북동지선에는 14개 공영버스가 145회 운행하고, 제주시 북서지선에는 30대 공영버스가 363회 운행하고, 서귀포시 남동지선에는 19대의 공영버스 214회 운행하고, 서귀포시 남서지선에는 공영버스 12대가 99회 운행함.

노선명	운행 노선	운행 계통	일일 운행 횟수
제주시 북동지선	10개 노선	14대	145회
제주시 북서지선	16개 노선	30대	363회
서귀포시 남동지선	13개 노선	19대	214회
서귀포시 남서지선	6개 노선	12대	99회

- 공영버스 운영을 위해 일반직 13명, 공무원 82명, 기간제 104명 등 모두 199명의 직원을 두고, 읍·면지역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음.

2.3. 농가 도우미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제주 지역 농어촌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함.
- 사업의 법적 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 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 11조에 규정을 두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어)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어)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도우미를 지원함.
 - * 출산 농어가의 신청에 의하여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어)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시책 추진
 - *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영농(어)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과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기준 :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농가 도우미 지원 가구 수/ 출산 여성농업인 수)

- 점검수단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해 도우미를 100%를 지원하기 위해 농가 도우미 신청서 자료를 활용함.

○ 선택 항목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농가 도우미 지원액 및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지원 단가는 1일 60천 원 (지방비 48천 원, 자부담 12천 원)
 - * 지원 일수는 45일 이내
 - *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어)을 실시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표 3-3〉 여성농업인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계획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계	2012년 이 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인 원	5,512	4,558	208	146	200	200	200
합 계	7,193	5,311	340	303	481	379	379
국 고 (분 권)	2,069	1,812	136	121	-	-	-
지방비	3,648	2,399	136	121	386	303	303
자부담	1,476	1,100	68	61	95	76	7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31 인용

- 농가 도우미 지원 기간은 사업 신청일로부터 출산(예정)후 90일까지임.
 - * (지원 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 관련 농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 (지원 내용)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농작업에 필요한 도우미 인건비 중 80%인 48,000원 지원

2.4. 마을 기업

○ 선택 항목 선정 배경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게 취업의 기회, 경제적 이익,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농어민 이익이 증대될 것이므로 마을기업 등 기업들의 활성화를 도모함.
-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마을 지역의 각종 자원들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의미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법상 회사이지만 비영리 단체인 기업임.
-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자의 계층에 있는 하청업체, 소규모 농장을 가진 농장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협력하여 만든 단체를 의미함.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 농어민 이익이 증대되고, 삶의 질 향상시키게 될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된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주민이 출자하여 설립되며,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 자원, 인적 자원, 가공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함.
- 행정자치부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해부터 최장 2년간(1+1) 사업비를 연차별로 차등 지원함(1차 년도 : 5,000만 원, 2차 년도 : 3,000만 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의 확산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체 및 육성 TF 구성 운영 등 지속 추진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 기준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 활동에 도움을 준다.
-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로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 활동에 도움을 준다.
(각 유형별 단체 수/ 전체 읍·면·동 수)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 자료 및 시별 일반현황 읍·면·동 수를 활용함.
- 점검수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 내부자료(2017년 기준)를 활용함.
- 사회적 경제조직(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비율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행정시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 분석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수의 읍·면·동 비율
-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 총 읍·면·동 수 비율

○ 선택 항목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43개 읍·면·동이 있으며, 마을기업은 31개, 사회적기업(예비 포함)은 70개, 협동조합은 184개로 각 1개 읍·면·동 당 6.62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26개 읍·면·동에 231개 단체가 활동하여 읍·면·동 당 8.88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읍·면·동에 54개가 활동하여 읍·면·동 당 3.17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4〉 시별 읍·면·동 마을기업 유사 단체 현황

(단위: 개)

	각 유형별 단체 현황				읍·면(동)수	읍·면·동 당 단체 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협동조합	계		
제주시	16	36(24)	155	231	7(19)	8.88
서귀포시	15	6(4)	29	54	5(12)	3.17
계	31	42(28)	184	285	12(31)	6.62

- 농촌 지역인 읍·면 지역 현황만 살펴보면 12개 읍·면에 103개 단체가 활동하여 읍·면 당 8.58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시의 경우 7개 읍·면에 69개 단체가 활동하여 읍·면 당 9.85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5개 읍·면에 34개가 활동하여 읍·면 당 6.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3-5〉 읍·면 지역 단체 현황

	각 유형별 단체 현황				읍·면(동)수	읍·면 당 단체 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협동조합	계		
제주시	13	14(10)	32	69	7	9.85
서귀포시	13	3(1)	17	34	5	6.80
계	26	17(11)	49	103	12	8.58

2.5. 행복바우처 카드

○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제주 읍·면 지역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지원함.
 - * 읍·면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함.
- 관련 법령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어촌 여성의 복지 증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0조(복지 향상)
- 행복바우처 제도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여성농업인에 문화, 스포츠, 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추진 방향
 - * 읍·면 지역에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여행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
 - * 대상자 적격 여부 사전 검증(선정) 및 여성농업인의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리
 - * 사업 평가 후 발전 방안 마련 후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기준 :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방법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한다.
 *(행복바우처 신청 수/ 신청가능 여성농업인 수)X100

- 점검 수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행복바우처 카드 부서의 신청 접수 자료를 활용함.
- 선택 항목 현황
 - 지원 분야는 문화·스포츠·여행 분야에 이용하는 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 대상
 - * 도내 12개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 * 도내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중 만 3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이던 것이 2017년부터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업인(1948. 10. 1.부터 ~ 1997.12.31.까지 출생인자) 완화됨.
 - 2016년도 사업량은 6,300명(제주시 3,200명, 서귀포시 3,100명)
 - * 농업경영체 등록 전업농가 14,011명×60%(읍·면 지역)×75%(30~65세)
 ≍6,300명
 - 사업비는 630백만 원(도비 80%, 자부담 20%)
 - * 1인당 사업비는 연간 10만 원(도비 8, 자부담 2)
 - 카드 발급 및 수령(여성농업인 ⇄ 읍·면사무소 ⇄ 농협 시지부)
 - * 카드 발급 방법
 -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 시 본인 확인 신분증, 자부담 2만 원 납부
 - 읍·면사무소 위탁 발급 시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자필 작성 및 자부담 2만 원 납부
 - * 카드 수령 방법
 - 본인이 직접 농협은행 시지부 방문 시 현장 발급 수령
 - 읍·면사무소 위탁 발급 시 신청서 접수일로 15일 이내 읍·면사무소

직원이 수령 후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 카드 사용

* 사용처는 문화, 스포츠, 여행분야 18개 업종이며 가맹점 수는 2017년부터 38개로 증가

- 문화의 경우,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사진관, 서점(인터넷서점 제외), 화원, 음반판매점, 문화/취미 기타(신문, 잡지 포함), 문화센터,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 스포츠의 경우 요가, 스포츠용품점,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 여행의 경우, 기타관광호텔(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펜션/민박, 기타 숙박업(모텔/여관 등)

- 이·통장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는 2017년도부터는 이·통장확인절차 생략,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현행 유지

- 제주지역에서 행복바우처 신청 가능 여성농업인 수는 읍·면 지역 전업농가 중 30~6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략 6,300명임.

2.6. 재해보험료 지원

○ 선택 항목 선정배경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업 목적임.
-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 불안이 가중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
- 지원 대상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는 농업인임.

○ 선택 항목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 서비스 기준 : 농업인 재해 보험료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한다.

서비스 기준 및 점검 방법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보장한다.**

* (재해보험 추가 품목 수/재해보험 품목 수) × 100

※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완화 여부

- 점검 수단은 업무 총괄 부서인 제주도청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담당 추진 현황 자료를 활용함.

○ 선택 항목 현황

- 2014년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음.

〈표 3-6〉 연도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ha)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농가 수	보험료	면적	농가 수	보험료	면적	농가 수	보험료	면적
계	1,555	3,481	1,447	2,808	8,019	1,475	2,390	7,044	1,114
감 굴	23	3	12	58	12	45	29	9	23
콩	745	1,120	1,144	172	434	346	50	143	50
가을감자	13	25	10	28	70	26	16	88	27
비닐하우스	759	2,307	260	2,541	7,488	1,041	2,227	6,753	918
기 타	15	26	21	9	15	17	68	51	96

- 2015년도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808건(1,475ha)로 지방비 지원 실적은 2,000백만 원에 달함(<표 3-7> 참조).

〈표 3-7〉 2015년 제주 지역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호, ha, 백만 원)

구 분	건 수	면 적	보 험 료
감 귤	58	45	12
단 감	2	1	1
떨 은 감	5	13	7
참 다 래	2	3	7
가을감자	28	26	70
원예시설	2,541	1,041	7,487.7
콩	172	346	434
합 계	2,808	1,475	8,01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36 인용

- 2016년도 재해보험 가입실적은 가입품목은 다소 증가했으나 전체 가입 농가는 2,390건에 그침.
- 보험료 지급선 : NH손해보험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사업 시행 기관)
- 보험 가입 대상 : 51개 품목
 - * (본 사업: 33개 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떨어진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밤, 대추, 포도,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농업용 시설
 - * (시범 사업: 18개 품목) 벼,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차, 표고버섯, 인삼, 오디, 느타리버섯, 복분자, 복숭아, 양배추, 밀, 오미자
- 사업추진 절차
 - ① 재해보험가입 안내 및 가입신청 접수(지역농협대행사무소) → ②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전체 보험료 중 농업인 부담보험료) → ③ 청약사항 통보(대행 취급사무소 → 농협NH보험사) → ④ 청

약사항 수합 가입현황서 작성(농협NH보험사) → ⑤ 보험료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농협NH보험사 → 제주특별자치도) → ⑥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⑦ 보험료 정산(농협NH보험사) → ⑧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농협NH보험사) → ⑨ 보조사업 정산검사(제주특별자치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가입현황서, 사업자 통장사본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 * (제출서류)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서
- 2017년도 재해보험료 확대 지원을 위한 시책은 다음과 같음.
 - * 보험료의 10% 지원 확대(보험료지원 75% → 85%) 지원
 - 지원 비율 :2016년 지원 75%(국비 50%, 도비 25%), 농가 부담 25% 이던 것을 지원 85%(국비 50%, 도비 35%), 농가 부담을 15%로 하향
 - * 원예 시설(비닐하우스) 보험 상품 확대 지원
 - 보험금 지급 기준 확대 : ('16년) 1동 단위 ⇒ ('17년) 단지 단위
 - 부대시설 범위 확대 : ('16년) 관수, 양액, 보온, 난방 시설 ⇒ ('17년) 모든 부대시설
 - 피복재(비닐) 보장 기준 개선 : ('16년) 파손 부분만 인정 ⇒ ('17년) 전손 인정(전체 교체 필요 시)
 - * 노지감귤 보험 상품 확대 지원
 - 재해 범위 확대 : ('16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17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동해
 - 피해 범위 확대 : ('16년) 풍상과 ⇒ ('17년) 풍상과, 일소과, 부피과, 부패과
 - 피해 인정 기간 연장 : ('16년) 11월 말까지 ⇒ ('17년) 2월 말까지
 - 자기부담 비율 확대 : ('16년) 30%, 40% ⇒ ('17년) 10%, 20%, 30%, 40%

3. 이행실태 평가 분석

3.1. 석면 슬레이트

○ 목표 : 감소율 매년 2% 이상 감소 달성

-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정비 사업을 매년 총량 대비 2% 이상 감소되도록 추진한다는 목표치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에 26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80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음.
- 2017년 10월 말 현재 추진 실적은 이미 목표치를 초과한 911동을 철거하였으나, 예산 소진은 63%에 머물고 있음.
- 2017년 지원 사업 신청자가 1,434동에 달하여 연말까지 목표치 800동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행 목표치와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학교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매년 총량 대비 2%이상 감소되도록 추진한다.
(석면 슬레이트 개선 사업 호수/ 총 슬레이트 주택 수)X100**

○ 평가 결과

- 따라서 2017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신청 동 전체인 2.8%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이행 목표치 2% 이상 감소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에도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부 슬레이트 종합 대책에 따라 2021년까지 철거 지원 사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표 3-8〉 향후 투자 계획

재원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2,688,000	10,752,000
국고보조금	1,344,000	5,376,000
도비	1,344,000	5,376,000

3.2. 대중교통취약지역 지원 사업

- 목표 : 읍·면 지역 산간마을 공영버스 100% 운행
 - 마을 구성이 산재해 있는 읍·면 지역 산간 마을에 공영버스가 100% 운행하여 주민들의 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함.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읍면지역 산간 마을에는 공영버스가 100% 운행한다.
(공영버스 운행 마을 수/전체 마을 수X100)

- 평가 결과
 - 공영버스 90대가 운행하는 45개 노선에는 읍·면 지역 산간 마을이 전부 경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도내 총 읍·면 지역 마을에 공영버스가 100%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일 운행 횟수도 45개 노선 가운데 가장 작은 노선이 일일 4회이고, 가장 많은 노선은 일일 24회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3.3 농가 도우미

- 목표 : 출산 농어가에 100% 농가 도우미 지원
 - 출산 농가에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을 대신하도록 하는 복지 시책임.
 - *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생산적 복지 시책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있음.
 - * 2014년까지는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 부담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비를 전액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음.

〈표 3-9〉 출산 농어가 농가 도우미 지원 실적

년도	지원 가구 수	지원 금액
2015년	139명	282백만 원
2016년	95명	189백만 원

- 2017년도 지원 실적을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가구 수와 지원액은 모두 77가구에 139백만 원에 달함.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100% 도우미를 지원한다.
(농가 도우미 지원 가구 수/ 출산 여성농업인 수)
※ 지원 일수 확대 개선 점검**

- 평가 결과
 - 2016년과 같이 농가 도우미 신청 가구에는 100% 농가도우미를 지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지원 인원은 낮아 예산을 모두 집행하는데 차질을 빚음.
 - * 전년대비 예산 집행 실적이 18.9% 감소

- 2017년에는 지원 일수를 45일 이내에서 50일까지 확대하여 출산 여성 농업어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모두를 적용하였음.

3.4. 마을기업

- 목표 : 각 읍·면 지역별 마을기업 등 7개 이상 운영
 - 각 읍·면 지역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이 7개 이상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 이행 목표치와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방법

**농협 이외의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각 읍·면·당 7개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
(각 유형별 단체 수/ 전체 읍·면·동 수)**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현황만 살펴보면 12개 읍·면에 10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음.
 - * 제주시의 경우 7개 읍·면에 69개 단체가 활동하여 읍·면 당 9.85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5개 읍면에 34개가 활동하여 읍·면 당 6.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가 결과
 - 경제활동·일자리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업 현황을 보면 읍·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총 마을기업은 103개 단체이며, 이를 12개 읍·면을 나누면 읍·면 당 8.58개임. 목표치 7개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마을기업의 활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됨.

3.5.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 목표 : 행복바우처 카드 이용 가능 여성농업인의 20% 이용
 -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 활용 실적을 획기적으로 늘려 신청 가능자의 20% 달성을 목표로 함.
 - * 2016년에는 550명이 신청하여 행복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8.7% 실적을 보였음.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

행복바우처 신청 가능 여성농업인의 20%가 이용하도록 한다.
 (행복바우처 신청 수/ 신청 가능 여성농업인 수)X100

- 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도에 504백만 원을 확보하여 제주지역 12개 읍면 전업농가 여성농업인 1,827명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였음.
 - 따라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실적을 (행복바우처 신청 수/ 신청 가능 여성농업인 수)×100에 의해 계산하면 29%를 기록하여 목표치 20%를 추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3.6. 재해보험료 지원

- 목표 : 농업인 재해보험 3,000 농가 가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2015년에는 감귤, 단감, 뽕은감, 참다래, 가을감자, 원예시설, 콩 등 7개 품목에 2,808건에 1,475ha가 가입하였음.
 -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2,390농가 수에 면적은

1,114ha에 달함.

- 2016년에 신규로 재해보험 추가 품목 수는 양배추, 마늘 2품목인데 마늘은 농작물 수입 보장 보험으로 추가되었음.
- 2017년에 8,000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확보하여 2,800여 건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는 것은 기후 변화 등에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보장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2017년도에는 3,000농가가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음

이행 목표치 및 점검 방법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3,000농가 이상이 되도록 적극 홍보 지원한다.

* (재해보험 추가품목수/재해보험 품목수) × 100

※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 완화 여부

○ 평가 결과

- 2017년 10월 말 현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가 7,217농가를 달성하여 목표치인 3,000농가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은 25%에서 15%로 낮추고 지방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이행함.

〈표 3-10〉 2017년 농업인 재해보험 실적

(단위: 백만원, ha)

구 분	2017년(10. 31일 현재)		
	농가 수	보험료	면적
계	7,217	19,503	2,898
감 굴	1,563	344	747
콩	33	84	76
가을감자	-	-	-
비닐하우스	5,367	18,205	1,814
기 타	254	870	261

4. 이행실태 평가 분석 종합

○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분석 종합하면, 목표치는 달성하는 선택 항목 5개 항목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집행 실적이 18.9% 감소하여 보다 출산 농어가 위주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1〉 2017년도 제주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달성 여부

부문	선택 항목	점검 방법	목표치(%)	달성률 /달성 여부
1.정주 생활 기반	1) 석면 슬레이트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 호수/총 슬레이트 주택 수)X 100	2% 이상 감소	2.8% 감소 목표치 달성
	2)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 사업	{도 전체 마을 수-중산간 마을/전체마을 수}X100	100%	100% 목표치 달성
2.경제 활동 일자리	3) 농가도우미	(농가도우미 지원 가구 수/출산여성농업인수)X100	100%	100% 목표치 달성 집행실적은 18.9%감소
	4) 마을기업	각 유형별 단체수/전체 읍면수	7개 이상	8.58개 목표치 초과 달성
3.문화 여가	5) 행복바우처 카드	(행복바우처 신청수/여성농업인수)X100	20% 이상	29% 목표치 초과 달성
4.안전	6) 재해보험료 지원	(재해보험 농가 수/재해보험 품목 수)X100	3,000 농가	7,217농가 가입 목표치 두 배 이상 달성

제 4 장

수범사례 발굴

1. 교통 취약지 이동권 지원 사업

1.1. 사례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 소외 지역(시외, 읍·면)의 대중교통 운영 상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
 -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지방비로 충당하던 것을 복권기금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교통 취약지(시외, 읍·면 지역)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없이는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움.
 - 적자노선 등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민간 운수업체는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 열악한 교통 시설 환경 및 비수익 노선 지역으로 대중교통 업체가 참여를 꺼리는 열악한 환경으로 손실 보상 지원 없이는 대중교통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손실 보상 지원 : ('13년)81억 원, ('14년)83억 원, ('15년)73억 원, ('16년)88억 원
- 시외, 읍·면 지역 및 시내 외곽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이면서 노인들을 비롯한 교통 약자들이 많이 거주함.
- 따라서, 교통 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손실 보상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상황임.
 - 제주 지역 시외버스 32개 노선 중 24개 노선이 비수익 노선(75% 이상)임.
 - 비수익 노선·구간요금·무료 환승·학생 할인에 대한 손실 보전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것임.
- 교통 취약지 노선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여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교통 취약 지역의 노선 배차 간격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임.

〈표 4-1〉 교통 소외 지역 노선 수익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 현황

연도별	계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			
		비수익 노선 등	구간 요금	무료 환승	학생 할인
2011	11,249	4,628	2,582	2,729	1,310
2012	12,262	5,310	2,810	2,808	1,334
2013	12,682	5,383	2,922	3,040	1,337
2014	11,746	5,171	2,230	3,166	1,179
2015	11,841	5,020	2,345	3,428	1,048
2016	10,981	4,476	2,117	3,294	1,094

-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이용객 증대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실행 용역”을 추진하여 2017년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실시하였음.
 -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합리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2017년 8월부터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따라 확대되는 도전역 시내버스화, 마을버스 운행 확대 등으로 운행 버스 증차가 불가피함에 따라 제주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중
- 읍·면 지역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교통 취약지 거주자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2.1. 성과

- 본 사업 시행으로 교통 취약지(시외, 읍·면) 비수익 노선 이용객 수 전년 대비 5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31만 명이 증가함.
 - 2015년 교통 취약지 노선 이용객 수가 5,638만 2천 명에서 2016년에는 5,669만 2천 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소외 지역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필요함.
 - 버스회사들의 손실 부분은 100% 지원해야 준공영버스 운영 지침에 부합하는 것이나 예산의 제약, 복권기금에 의한 지원 등의 상황에 부합하기 위해 60%수준에서 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